

#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23. 9.



2023. 9.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23. 9.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 충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최승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2023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 요 약

## 1.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동 제도의 일몰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판단하고, 일몰을 연장할 경우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본 조세특례는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임
    - 다만, 세액감면액은 200만원을 한도로 함
  - 동 제도는 고용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2. 제도 현황

-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표본자료를 중심으로 동 조세특례 신청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
  
- 본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에 대한 순조세지출 규모는 약 3,866억원임
  - 순조세지출 규모는 동 제도를 신청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정세액 차이를 이용해 계산한 조세지출 규모임
  - 한편,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국세청 표본자료를 이용해 동 제도로 인한 세액감면액을 단순 합산하여 계산한 2021년 총조세지출 규모는 7,147억원임
  - 하지만 동 조세특례를 신청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총조세지출 규모는 실제 조세지출 규모를 과대 계상함

- 2021년 기준 순조세지출 규모는 총조세지출 규모의 약 54.09%로, 총조세지출 규모는 실제 조세지출을 3,281억원가량 과대 계상함

<표 1>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조세지출 규모(근로소득자)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조세지출(A)	2,045	5,861	6,922	6,576	7,147
순조세지출(B)	1,057	2,978	3,582	3,375	3,866
격차(A-B)	988	2,883	3,339	3,201	3,281
비중(B/A)	51.70	50.81	51.75	51.32	54.09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국세청,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 에 대한 통계자료
2. 국세청,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에 대한 표본자료

동 조세특례 신청자의 대부분은 청년임

- 2021년 기준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중 청년이 94.6%임
- 나머지는 고령자가 5%, 장애인이 0.3%, 경력단절여성이 0.1%를 차지함

<표 2> 취업자 유형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근로소득자)

(단위: 명, %)

구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청 인원	전체	389,379	719,901	799,215	782,467	802,309
	청년	376,292	696,941	770,200	747,815	758,807
	고령자	11,398	20,265	26,159	31,428	39,848
	장애인	1,650	2,529	2,588	2,580	2,584
	경력단절여성	39	166	268	644	1,070
전체 신청 인원 대비 비중	청년	96.6390	96.8107	96.3696	95.5714	94.5779
	고령자	2.9272	2.8150	3.2731	4.0165	4.9667
	장애인	0.4238	0.3513	0.3238	0.3297	0.3221
	경력단절여성	0.0100	0.0231	0.0335	0.0823	0.1334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 에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1년 동 조세특례로 인한 평균 순세액감면액은 48만 2천원이고 순세액감면율은 28.5%이며, 이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폭은 약 1.27%p임

- 순세액감면액은 총급여액과 함께 증가하는데, 세액감면 제도의 특성상 세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세제혜택의 절대 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임
- 한편, 동 제도로 인한 순세액감면율과 실효세율 감소폭은 총급여액 4천만~5천만원 구간을 정점으로 이 구간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모습임
  - 청년의 경우 총급여액 4천만~5천만원 구간의 순세액감면율이 42.0%로 가장 높으며, 해당 구간의 실효세율 감소폭 또한 2.33%p로 가장 큼
  - 이는 저소득층은 동 제도가 없더라도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세액감면율도 낮아지며, 고소득층은 세액감면액에 한도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이나 총급여 대비 순세액감면액의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임

<표 3> 취업자 유형 및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 세제혜택(근로소득자)

(단위: 만원, %, %p)

구분		순세액감면액	순세액감면율	실효세율 감소폭
전체		48.18	28.4525	1.2699
청년	청년 전체	48.32	28.6882	1.2760
	1천만원 이하	0.00	0.0000	0.0000
	1천만~2천만원 이하	2.20	4.9311	0.1212
	2천만~3천만원 이하	19.92	24.1128	0.7515
	3천만~4천만원 이하	62.16	39.0556	1.7781
	4천만~5천만원 이하	102.42	42.0045	2.3279
	5천만~6천만원 이하	118.03	33.5925	2.1843
	6천만~7천만원 이하	124.96	26.3222	1.9511
	7천만~8천만원 이하	135.07	20.9923	1.8201
	8천만~9천만원 이하	139.12	16.3731	1.6490
	9천만~1억원 이하	141.16	12.9756	1.4894
	1억원 초과	145.14	8.1231	1.1481
청년 외	청년 외 전체	45.69	24.3412	1.1636
	1천만원 이하	0.00	0.0000	0.0000
	1천만~2천만원 이하	3.86	8.1498	0.2143
	2천만~3천만원 이하	20.56	23.4974	0.8056
	3천만~4천만원 이하	57.81	33.3565	1.6489
	4천만~5천만원 이하	97.22	37.0701	2.1992
	5천만~6천만원 이하	112.77	29.4991	2.0694
	6천만~7천만원 이하	119.23	23.3376	1.8523
	7천만~8천만원 이하	127.27	18.5539	1.7242
	8천만~9천만원 이하	135.00	14.4611	1.5761
	9천만~1억원 이하	133.61	11.8492	1.4195
1억원 초과	141.00	7.6378	1.1236	

주: 1. 소득 귀속연도 기준

2. 세액감면율은 산출세액 대비 순세액감면액 비율

3. 실효세율은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

2.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표본자료

### 3. 타당성 분석

- 노동시장에서 동 제도를 통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시에 일부 제도 개선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개입의 타당성)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심각한 인력불일치(mismatch)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이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노동공급자인 청년은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상황임
    - 25~29세 실업률은 2017년 9.5%로 가장 높았다가 2022년에는 6.0%로 낮아졌지만, 2022년 50~54세 실업률인 1.5%보다 4.5%p 높은 상황임
  - 동시에 노동수요자인 중소기업은 지속해서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 5~299인 사업체의 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인원의 비율은 2022년 하반기에 18.79%에 이르렀음
    - 주목할 만한 특징은 2022년 하반기 기준 5~299인 사업체의 미충원인원 중 대부분인 82.63%가 전문대졸 이하의 낮은 수준의 직능에 대한 인력이라는 점임
  - 중소기업은 저임금의 낮은 직능수준의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청년은 비교적 고임금의 높은 직능수준의 일자리를 찾고 있어, 임금과 직능수준에서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 간 구조적인 불일치가 존재함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노동시장의 인력불일치 문제는 시장 기능으로는 짧은 기간 내 해결하기 어려워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이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제도가 인력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으며,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
    - 하지만, 개선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 제도와 같이 현존하는 문제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의 적절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요건은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 노동공급의 외적한계(extensive margin)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 동 조세특례의 정책대상인 근로취약계층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거나 실업률이 높은 집단으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함
  - (청년 연령) 청년 중 2018년부터 새롭게 정책대상에 포함된 30~34세의 경우 다른 근로취약계층과 비교해 실업률이 상당히 낮거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는데, 청년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동 제도의 청년 연령에 30~34세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경력단절여성 업종 요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보았을 때 동 제도의 동종 업종 재취업 요건은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스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으로 경력단절여성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하여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일정 기간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던 많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시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의 판매직이나 서비스직과 같은 낮은 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여성 성별 요건) 결혼,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도 정책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육아 및 가사의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남성도 존재하며, 정책대상이 소수일지라도 성별을 이유로 정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임
    -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에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 법과 제도에서 성역할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비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임
- (지원방법의 적절성) 본 조세특례의 세액감면율, 세액감면액 한도, 세액감면 기간에 대해서는 현 수준에서 확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액감면율) 현행 세액감면율인 70~90%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세액감면율을 100%로 설정하여 특정 조세특례의 하나로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음
  - 세액감면율이 50%일 때 동 제도를 신청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감소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계층이 발생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함
  - 한편, 동 제도는 청년을 우대하는데, 다른 집단과 비교해 연령이 낮은 청년은 은퇴까지의 잔여 근로연수가 길어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취업 시 기회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 (세액감면 한도) 동 제도는 세액감면액에 200만원의 한도를 두는데, 이는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함
- (세액감면 기간) 중소기업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대기업 등으로 이직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와 같이 최소한 3년간은 세제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 취업자가 계속해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에서 3년간 근무하면 그 이후에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70%보다 높아지며, 청년의 경우에는 이 비중이 75%를 넘어감
- (다른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동 제도는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 중 노동공급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조세특례로 다른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조세특례 중 ‘근로장려세제’는 동 제도와 유사하게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지원하지 못하는 최저소득층을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 청년 기준 2021년 귀속소득에 대한 동 제도 신청자의 순세액감면액은 총급여액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0원, 1천만~2천만원 구간에서 평균 2만 2천원, 2천만~3천만원 구간에서 평균 19만 9천원으로 낮은 수준임
    -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 최대 165만원(총급여액 등이 400만~900만원인 경우)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로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계층을 비교적 실효성 있게 지원함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도는 중소·벤처기업 청년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등 제도와는 정책목표에 차이가 있음
- 그 외 다른 고용지원 조세특례들은 노동수요자(기업)를 지원하는 조세특례로 노동공급자(취업자)를 지원하는 등 제도와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음
- 재정지출사업에도 고용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지출사업의 특성상 지원대상이 협소하게 정의되거나 조세지출사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단계를 지원하여 동 제도와 유사중복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4.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 (분석 개요) 2018년 청년의 연령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정책 변화를 이용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를 분석함
  - (분석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 (분석 기간) 2015~2022년 월별 또는 분기별 자료
  - (분석 표본) 군 복무기간을 보정한 연령 기준 32~37세에 해당되는 대상
    -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만 연령에서 2세를 차감하여 분석함
  - (분석 방법) 이중차분법과 이벤트스터디 분석을 수행함
    - 종속변수는 중소기업 취업 여부로 중소기업 취업자일 때 1의 값을 가지고, 중소기업 미취업자일 때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
    - 처치집단은 32~34세, 통제집단은 35~37세
    - 제도 변화 시점은 2018년 6월(이중차분법) 또는 2018년 3분기(이벤트스터디) 기준
- (분석 결과: 이중차분법) 2018년 본 조세특례의 확대 개편이 32~34세 중소기업 취업에 미친 효과는 남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견됨
  - 32~34세 남성의 경우 동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률이 약 1.6%p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지만,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로 유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소상공인 사업체의 취업률이 2.8%p 증가하였지만, 소기업의 취업률에는 변화가

없었고, 중기업의 취업률은 오히려 1.4%p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더라도 상용직의 취업률에는 변화가 없었고, 임시직 취업률만 1.7%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민감도 분석 결과 이러한 취업 유도 효과가 강건하게 나타나지는 않음
- 여성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취업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표 4>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구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상용직	임시직	
	(1)	(2)	(3)	(4)	(5)	(6)	
남성	32~34세 × 2018년	0.016*	0.028***	0.001	-0.014**	-0.001	0.017***
	6월 이후	(0.009)	(0.005)	(0.007)	(0.006)	(0.008)	(0.004)
	관측치수	246,040	246,040	246,040	246,040	246,040	246,040
	제도 변화 이전 평균	0.42	0.09	0.21	0.12	0.36	0.06
여성	32~34세 × 2018년	-0.005	0.004	0.002	-0.012***	-0.002	-0.004
	6월 이후	(0.007)	(0.004)	(0.005)	(0.004)	(0.006)	(0.004)
	관측치수	242,134	242,134	242,134	242,134	242,134	242,134
	제도 변화 이전 평균	0.19	0.06	0.08	0.05	0.12	0.06

- 주: 1. 종속변수는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 여부  
 2. 처치집단은 32~34세이며 통제집단은 35~37세  
 3. 강건표준오차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중치 사용  
 4. 연령, 연월, 교육수준 고정효과와 연령별 선형추세 통제  
 5. \*\*\*은 1%, \*\*은 5%, \*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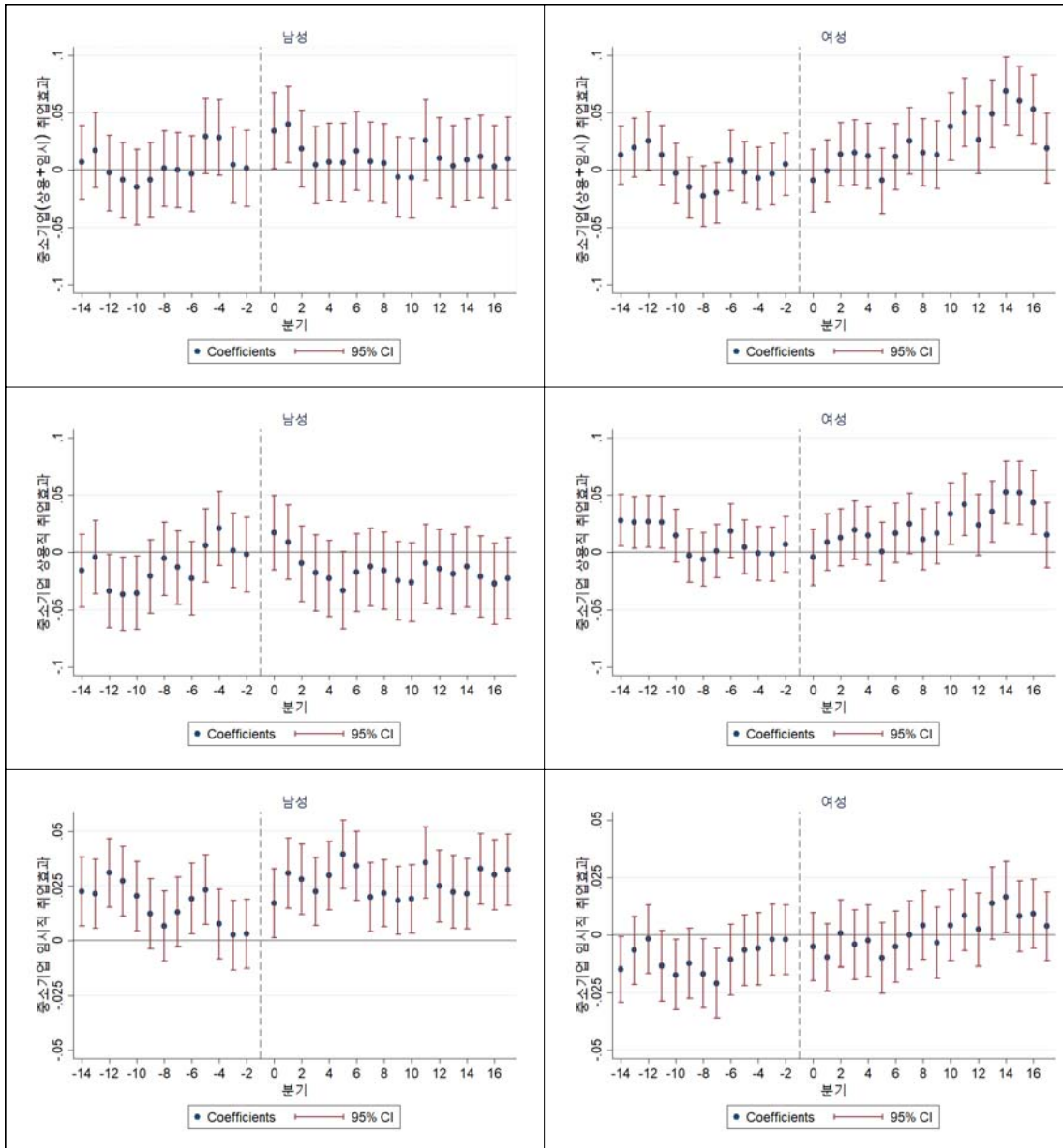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분석 결과: 이벤트스터디) 이벤트스터디 분석 결과도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와 유사함

- 남성의 결과를 보면, 2018년 제도 변화 이후 초기에 32~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률은 유의하게 증가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이는 제도 변화를 기점으로 32~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임시직 취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반면에 32~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상용직 취업에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취업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 여성의 경우 제도 변화 이후 초기에는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 효과가 발견되지 않으나 2021년부터( $d \geq 10$ ) 중소기업 취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양(+)의 취업 효과가 제도 변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발생하였기에 이것이 본 제도의 효과인지 다른 여성 관련 일자리 정책으로 인한 효과인지는 불명확함

[그림 1] 이벤트스터디 분석 결과



주: 1. 세로축은 이벤트스터디 추정계수, 가로축은 정책대상 연령 확대(2018년 3분기) 이전 또는 이후 몇 분기가 지났는지를 의미하며, -1은 2018년 2분기이자 기준 시점  
 2. 종속변수는 중소기업 취업 여부  
 3. 연령고정효과, 연·반기고정효과, 교육수준 고정효과 통제  
 4. 강건표준오차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중치 사용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한계점) 다만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처치집단 및 통제집단의 범위에 따라 추정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석에 다소 주의가 필요함
    - 특히 남성의 경우 군 복무 연령 2세를 일괄 차감하기 때문에 처치집단 및 통제집단이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함
  - 둘째, 본 연구는 2018년 제도 변화로 인해 새롭게 정책대상에 포함된 32~34세 청년에 대한 분석으로 전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 셋째, 본 분석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조세특례의 수혜대상인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음
  - 넷째, 해당 조세특례가 취업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정책이므로 이로 인해 고용자(사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의 임금을 인하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임금에 관한 분석을 후속 연구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5.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인력난 개선 효과

- (분석 개요) 2018년 제도 확대 등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개선에 미친 효과를 분석함
  - (분석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
  - (분석 기간) 2017년(7차년도 조사)과 2019년(8차년도 조사) 자료
  - (분석 방법) 이중차분법 분석을 수행함
    - 종속변수는 두 가지로 ①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빈 일자리(공석) 수 비율인 공석 비율과 ② 비경력직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 미달 여부로 미달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변수
    - 처치집단은 중소기업, 통제집단은 나머지 기업
-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2018년 제도 확대가 중소기업의 공석 비율과 지원자 미달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8년 감면 확대가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의 공석 비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다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 등) 일자리의 공석 비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일부 발견되었으나, 그 결과가 강건하지 않았음
  - 일부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긴 하였으나, 효과의 크기가 공석 비율의 평균치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부분이 있으며, 이는 표본수가 작은 상황에서 공석 비율이 크게 달라진 소수 기업들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
- (한계점) 본 연구에서 발견한 효과를 오직 본 제도의 영향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본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기에 다른 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더 크거나 작은 영향을 준 거시경제 상황 또는 다른 지원정책 등이 동시에 존재했을 수도 있음

## 6.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 동 제도의 효과성은 제한적으로만 관찰되지만 노동시장의 인력불일치 문제로 인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 제도의 일몰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가 인력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은 아님
  - 인력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고급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 다만, 양질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동 제도는 그 이행과정에서 현재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고용취약 계층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한편 효과성 분석 결과는 동 제도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취업유도 효과 없이 조세지출만 발생시키는 사중손실임을 의미함
- 일몰 연장 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정책제안 1)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사중손실일 가능성이 크므로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요건으로 소득요건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 요건으로 총급여액 상한을 도입하고,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200만원인 세액감면액 한도에 점감구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정책제안 2) 타당성 분석에서 논의하였듯이 경력단절여성의 요건 중 동종 업종 재취업 요건 삭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안 3) 역시 타당성 분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결혼, 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여성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남성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요건은 동 제도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을 지원하는 다른 조세특례들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의 개정은 타 제도에 대한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요건 개정은 동 제도뿐만 아니라 ‘통합고용세액 공제’ 제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I. 서론 .....	21
II. 조세특례 제도 현황 .....	25
1. 제도 개요 .....	27
2. 제도 연혁 .....	29
3. 제도 현황: 『조세지출예산서』 .....	31
4. 제도 현황: 국세청 제공 자료 .....	33
가. 근로소득자 표본자료에 대한 가중치 .....	34
나. 근로소득자 신청 인원 현황 .....	36
다. 근로소득자 세액감면액 현황 .....	43
라. 종합소득자 현황 .....	53
III. 타당성 분석 .....	61
1. 정부개입의 타당성 .....	63
2. 정책대상의 적절성 .....	75
가. 고용취약계층의 지원 .....	75
나. 청년의 연령 요건 .....	77
다. 경력단절여성의 요건 .....	78
3. 지원방법의 적절성 .....	84
가. 세액감면을 .....	84
나. 세액감면액 한도 .....	86
다. 세액감면 기간 .....	88
4. 다른 제도와 유사중복성 .....	91
IV.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	95
1. 분석 개요 .....	97

2.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	101
가. 분석 방법 .....	101
나. 분석 자료 .....	106
3. 분석 결과 .....	106
가. 중소기업 취업률 추이 .....	106
나. 이벤트스터디 분석 결과 .....	109
다.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	112
라. 민감도 분석 결과 .....	117
4. 소결 .....	120
<b>V.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인력난 개선 효과 .....</b>	<b>123</b>
1. 분석 개요 .....	125
2. 분석 방법 .....	125
가. 제도 변화 .....	126
나. 중소기업 범위 .....	127
3. 분석 자료 .....	129
4. 분석 결과 .....	130
가. 분석방법론 .....	130
나. 기초 통계 .....	132
다.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	135
5. 소결 .....	142
<b>VI.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b>	<b>145</b>
1. 종합평가 .....	147
2. 제도 개선방안 .....	148
<b>참고문헌 .....</b>	<b>152</b>
<b>부록 I: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규모: 2013년 이후 .....</b>	<b>157</b>

부록 II: 『국세통계연보』의 조세지출 규모 .....	158
부록 III: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 통계 .....	165
부록 IV: 중소기업 인력난 개선 효과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비교 .....	168
1. 제조업 .....	168
2. 비제조업 .....	171
3. 소결 .....	173
부록 V: 과거 제도 변화로 인한 인력난 개선 효과 분석 .....	175
1. 2012년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	175
2. 2014년 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	176
3. 2016~2017년 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	177

## 표 목 차

<표 II-1> 제도 연혁 .....	30
<표 II-2>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 .....	31
<표 II-3> 『조세지출예산서』의 타 조세지출과의 비교 .....	32
<표 II-4> 표본 가중치 .....	36
<표 II-5> 취업자 유형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근로소득자) .....	37
<표 II-6>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추이 .....	38
<표 II-7>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전체 근로소득자) .....	40
<표 II-8>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청년 근로소득자) .....	41
<표 II-9>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청년 외 근로소득자) .....	42
<표 II-10>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조세지출 규모(근로소득자) .....	46
<표 II-11> 취업자 유형 및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조세지출 규모 (근로소득자) .....	48
<표 II-12> 취업자 유형 및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세액감면액 (근로소득자) .....	50
<표 II-13> 취업자 유형 및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세액감면율 (근로소득자) .....	51
<표 II-14> 취업자 유형 및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폭 (근로소득자) .....	52
<표 II-15> 본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종합소득자) .....	54
<표 II-16>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종합소득자) .....	56
<표 II-17>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조세지출 규모(종합소득자) ..	57
<표 II-18>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세제혜택(종합소득자) .....	59
<표 III-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이 .....	65
<표 III-2> 사업체규모별 인력 부족 현황 .....	67
<표 III-3> 사업체규모별 미충원인원 현황 .....	69
<표 III-4> 사업체규모 및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 현황 .....	71

<표 III-5> 사업체규모별 임금 현황 .....	73
<표 III-6> 사업체규모별 미충원 사유 .....	74
<표 III-7> 직능수준별 미충원 사유 .....	74
<표 III-8>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	77
<표 III-9>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업종 변화 .....	81
<표 III-10>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직종 변화 .....	81
<표 III-11>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 변화 .....	82
<표 III-12>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84
<표 III-13> 세액감면 한도 증가에 따른 세제혜택 변화(근로소득자) .....	88
<표 III-14> 중소기업 근무 기간에 따른 직장 이동 경로(2013~2017년 취업자) .....	90
<표 IV-1>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 변화 ...	99
<표 IV-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추가공제액 한도 변화 .....	100
<표 IV-3> 산업별 종사자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분류 기준 .....	105
<표 IV-4>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 유도 효과 ...	112
<표 IV-5>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사자 규모 및 종사상 지위별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	115
<표 IV-6> 민감도 분석 결과: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 유도 효과 .....	119
<표 V-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	127
<표 V-2>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초통계 .....	134
<표 V-3> 고용형태별 공식 비율 기초통계 .....	135
<표 V-4> 2018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	136
<표 V-5> 2018년 제도 개정이 지원자 미달 여부에 미친 영향 .....	137
<표 V-6> 2018년 제도 개정이 정규직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	138
<표 V-7> 2018년 제도 개정이 비정규직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	139
<표 V-8> 2018년 제도 개정이 무기계약직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	140
<표 V-9> 2018년 제도 개정이 기간제(계약직 등)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	141
<표 V-10> 2018년 제도 개정이 파트타임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	142
<표 VI-1> 소득요건 도입에 대한 취업자 유형 및 소득수준별 세제혜택 모의실험 결과 ...	149

<부록 표 I-1>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 .....	157
<부록 표 I-2> 『조세지출예산서』의 타 조세지출과의 비교 .....	157
<부록 표 II-1>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인원(근로소득자) .....	158
<부록 표 II-2>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근로소득자) .....	160
<부록 표 II-3> 총급여액 및 산출세액 대비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 비중 (근로소득자) .....	162
<부록 표 II-4> 세액공제감면액 대비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 비중 (근로소득자) .....	163
<부록 표 II-5>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 및 인원(종합소득자) .....	164
<부록 표 II-6> 주요 신고금액 대비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 비중 (종합소득자) .....	164
<부록 표 III-1> 총급여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고령자 근로소득자) .....	165
<부록 표 III-2> 총급여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장애인 근로소득자) .....	166
<부록 표 III-3> 총급여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경력단절여성 근로소득자) ...	167
<부록 표 IV-1> 2018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제조업) .....	168
<부록 표 IV-2> 2018년 제도 개정이 고용형태별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제조업) ..	169
<부록 표 IV-3> 2018년 제도 개정이 지원자 미달 여부에 미친 영향(제조업) .....	170
<부록 표 IV-4> 2018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비제조업) .....	171
<부록 표 IV-5> 2018년 제도 개정이 고용형태별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비제조업) .....	172
<부록 표 IV-6> 2018년 제도 개정이 지원자 미달 여부에 미친 영향(비제조업) ...	173
<부록 표 V-1> 2012년 제도 도입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	175
<부록 표 V-2> 2014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	177
<부록 표 V-3> 2016~2017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	178
<부록 표 V-4> 2016~2017년 제도 개정이 지원자 미달 여부에 미친 영향 .....	179

## 그림 목 차

[그림 II-1] 총세액감면액과 순세액감면액 비교(근로소득자) .....	44
[그림 II-2] 총세액감면액과 순세액감면액 비교(종합소득자) .....	53
[그림 III-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이 .....	64
[그림 III-2] 사업체규모별 인력 부족률 현황 .....	66
[그림 III-3] 사업체규모별 인력 미충원율 현황 .....	68
[그림 III-4] OECD 국가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	70
[그림 III-5] 성별·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	76
[그림 IV-1] 이중차분법의 처치효과 추정 방법 .....	102
[그림 IV-2] 중소기업 취업률 추이 .....	108
[그림 IV-3] 이벤트스터디 분석 결과: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	111
[그림 IV-4]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산업별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	116
[그림 V-1] 빈 일자리(공석)의 수 문항(1~5차년도) .....	130
[그림 V-2] 빈 일자리(공석)의 수 문항(6차년도 이후) .....	130
[그림 V-3]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 수 문항(6차년도 이후) .....	130
[그림 V-4] 공석 비율 변화(1~5차년도) .....	133
[그림 V-5] 공석 비율 변화(6차년도 이후) .....	133
[그림 V-6] 지원자 미달 확률 .....	134



# I. 서론





# I. 서론

-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중기 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임
  - 본 조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여 2023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음
  -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대한민국정부, 2022)에 따르면 동 제도로 인한 2021년 조세지출 규모는 8,397억원으로 의무심층평가 기준인 300억원보다 높음
  
- 본 조세특례는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노동시장의 인력불일치(mismatch) 문제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 도입됨
  - 노동시장의 인력불일치 문제는 노동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있음에도 노동공급자인 청년 등의 실업률 또한 높은 상황을 일컫음
  -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로 인한 취업자의 대기업 선호 현상 때문으로 파악되는데, 동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임
  - 즉, 동 조세특례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효임금을 높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청년 등의 실업률도 낮추기 위한 제도임
  
- 본 연구는 「조세지출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동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몰 연장 여부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타당성 분석은 동 제도를 통한 정부 역할의 적절성, 수행방법의 적절성,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검토함
    -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여 정부 개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정책대상의 설정 및 조세지원 규모의 적절성, 그리고 고용지원 조세지출사업 및 재정지출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함

- 효과성 분석은 동 제도의 목적인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추정함
  - 그 간 동 제도에 대한 세 번의 심층평가(오종현·신상화·강성훈, 2015; 최승문·강성훈, 2018; 권성준·강성훈·조희평, 2021)가 있었는데,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는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효과도 분석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음

□ 본 보고서는 이하에서 다음의 순서로 논의함

- 제Ⅱ장에서는 동 조세특례 제도의 현황을 파악함
- 제Ⅲ장에서는 동 제도의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
- 제Ⅳ장에서는 동 제도로 인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유도 효과를 분석함
- 제Ⅴ장에서는 동 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효과를 추정함
- 제Ⅵ장에서는 동 제도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Ⅱ. 조세특례 제도 현황





## II. 조세특례 제도 현황

### 1. 제도 개요

-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는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임
  - 청년의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함
  - 청년과 고령자의 연령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임
  - 경력단절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기업과 동일한 중소기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적용함
    - 경력단절 기간은 2~15년이어야 함
  
- (목적)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고용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임
  
- (근거규정)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동 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함
  -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동 법 시행령 제3조를 적용함
  - 경력단절여성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과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3을 적용함
  -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동 법 시행령 제2조 등을 적용함
  
- (업종 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196개 세세분류 중 1,034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본 조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다음과 같음
  - 세세분류 기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대분류 기준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한 모든 업종(세세분류 기준 32개 업종)
  - 법무, 회계, 세무, 컨설팅 등 중분류 기준 대부분의 전문 서비스업(세세분류 기준 12개 업종)
    - 전문 서비스업 중 광고업과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 학교, 학원, 교육시설 등 대분류 기준 교육 서비스업에 속한 대부분의 업종(세세분류 기준 31개 업종)
    - 운전학원,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은 지원대상에 포함
  - 병원, 의원 등 중분류 기준 보건업에 속한 모든 업종(세세분류 기준 13개 업종)
  - 소분류 기준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모든 업종(세세분류 기준 13개 업종)
    - 유원지, 테마파크, 게임장, 노래연습장, 낚시장, 무도장, 복권 발행 및 판매, 체육 공원, 기원 등이 이에 속함
  - 중분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한 모든 업종(세세분류 기준 18개 업종)
    -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신체관리 서비스, 세탁, 장례식장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예식장 및 결혼 관련 서비스, 개인 간병, 점술 등이 이에 속함
  - 중분류 기준 협회 및 단체에 속한 모든 업종(세세분류 기준 12개 업종)
    - 산업 단체,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종교 단체, 정치 단체, 환경운동 단체, 시민 운동 단체 등이 이에 속함
  - 그밖에도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는 공공 및 행정기관(세세분류 기준 25개 업종), 국제 및 외국기관(세세분류 기준 2개 업종), 가구 내 활동(세세분류 기준 3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취업일 요건) 2012년 1월 1일(고령자,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동 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됨
- 본 제도에 의한 세액감면액은 다음의 식과 같이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정됨
- $TaxExmp = TaxCal \times \left( \frac{LabInc}{GrsInc} \right) \times \left( \frac{SMEEarn}{GrsEarn} \right) \times ExmpRate$ 
    - $TaxExmp$ : 본 조세특례로 인한 세액감면액
    - $TaxCal$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LabInc*: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GrsInc*: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 *SMEEarn*: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 *GrsEarn*: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ExmpRate*: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감면율

□ 본 제도에 의한 세액감면액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식과 같  
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본 제도의 세액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액됨

$$○ \text{TaxCrFinal} = \text{TaxCrBase} \times \left[ 1 - \frac{\text{TaxExmp}}{\left( \text{TaxCal} \times \frac{\text{LabInc}}{\text{GrsInc}} \right)} \right]$$

- *TaxCrFinal*: 본 조세특례 적용 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TaxCrBase*: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본 조세특례 적용 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TaxExmp*: 본 조세특례로 인한 세액감면액
- *TaxCal*: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LabInc*: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GrsInc*: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 따라서 동 제도에 따른 순세제혜택은 동 제도로 인한 소득세 세액감면액뿐만 아  
니라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감액분도 함께 고려해야 함

## 2. 제도 연혁

- 본 제도는 2012년 도입된 이래 일몰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지원도 확대
  - 2014년에는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그리고 2015년에는 감면액에 150만원의  
    한도를 설정하여 제도가 축소된 경우도 존재하나, 그 외는 모두 지원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됨

<표 II -1> 제도 연혁

개정일	주요 변경사항
2011.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li> <li>- 조문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li> <li>- 정책대상: 청년(15~29세)</li> <li>- 감면율: 100%</li> <li>- 감면기간: 3년</li> <li>- 적용기간: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자</li> </ul>
201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문명 변경: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li> <li>○ 정책대상자 확대: 청년 → 청년,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li> <li>○ 감면율 인하: 100% → 50%</li> <li>○ 적용기한 연장: 2013년 12월 31일 → 2015년 12월 31일</li> <li>- 고령자, 장애인 적용시점은 2014년 1월 1일부터</li> </ul>
2015. 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율 인상: 50% → 70%</li> <li>○ 감면액 한도 설정: 150만원</li> <li>○ 적용기한 연장: 2015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li> </ul>
2016.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대상자 확대: 경력단절여성 추가</li> <li>- 취업 요건: 퇴직한 중소기업에 재취업</li> <li>- 퇴직 사유: 임신, 출산, 육아</li> <li>- 경력단절 기간: 3년 이상 10년 미만</li> </ul>
2018.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에 대한 감면 확대(2018과세연도분부터 적용)</li> <li>- 연령 기준: 15~29세 → 15~34세(2018. 8. 28. 시행령 개정)</li> <li>- 감면율: 70% → 90%</li> <li>- 감면기간: 3년 → 5년</li> <li>- 적용기한: 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li> </ul>
2018.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연장: 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li> <li>-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li> </ul>
2019.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li> <li>- 취업 요건: 퇴직한 기업 → 퇴직한 기업 또는 퇴직한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li> <li>- 퇴직 사유: 임신, 출산, 육아 → 결혼, 임신, 출산, 육아</li> <li>- 경력단절 기간: 3년 이상 10년 미만 → 3년 이상 15년 미만</li> </ul>
2020. 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업종 확대(2020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분부터 적용)</li> <li>-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9개 세세분류 업종)</li> <li>-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7개 세세분류 업종)</li> <li>- 스포츠 서비스업(14개 세세분류 업종)</li> </ul>
2021.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li> <li>- 경력단절 기간: 3년 이상 15년 미만 → 2년 이상 15년 미만</li> <li>○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li> </ul>
2022.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액 한도 인상: 150만원 → 200만원</li> </ul>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조세특례제한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4. 6.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조세특례제한법%20시행령>, 검색일자: 2023. 4. 6.

### 3. 제도 현황: 『조세지출예산서』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본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 급격히 증가하였음<sup>1)</sup>
  - 2019년 조세지출 규모는 6,068억원으로 전년 대비 4,133억원(213.59%) 증가하였음
    - 이는 2018년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율과 연령 기준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2020년 조세지출 규모 또한 7,7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41% 증가하여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이는 2018년 청년에 대한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된 것이 2020년의 조세지출 증가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21년 이후에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표 II -2>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

조세지출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조세지출 규모	1,935	6,068	7,792	8,397	9,672	10,388
전년 대비 증가액	-	4,133	1,724	605	1,275	716
전년 대비 증가율	-	213.59	28.41	7.76	15.18	7.40

주: 2022년과 2023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2019~2022)의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동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전체 조세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9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음
  - 2018년에는 이 비중이 0.44%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1.22%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이후에는 1.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개인을 지원하는 조세지출 규모에서 동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2.4% 내외 수준임

1)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동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부터 파악 가능하나, 2017년 이전 자료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문에서는 2018년 이후 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하며, 그 이전 자료는 <부록 I>을 참고하기 바람

- 또한 소득세 조세지출 규모에서 동 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5% 내외 수준임

<표 II -3> 『조세지출예산서』의 타 조세지출과의 비교

(단위: 억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A)	1,935	6,068	7,792	8,397	9,672	10,388
	전체 조세지출(B)	439,533	495,700	529,357	570,248	635,776	693,155
	개인지원 조세지출(C)	253,427	315,589	343,056	362,793	399,296	433,303
	소득세 조세지출(D)	246,817	303,540	319,488	345,618	372,715	403,988
	고용지원 조세지출(F)	5,218	16,185	24,385	30,609	39,771	43,025
비중	전체 조세지출 대비(A/B)	0.4402	1.2241	1.4720	1.4725	1.5213	1.4987
	개인지원 조세지출 대비(A/C)	0.7635	1.9228	2.2713	2.3145	2.4223	2.3974
	소득세 조세지출 대비(A/D)	0.7840	1.9991	2.4389	2.4296	2.5950	2.5714
	고용지원 조세지출 대비(A/F)	37.0832	37.4915	31.9541	27.4331	24.3192	24.1441

주: 1. 2022년과 2023년은 전망치

2. 개인은 근로소득자,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료: 대한민국정부(2019~2022)의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한편, 고용을 지원하는 조세지출 중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고용을 지원하는 조세지출 중 동 제도의 비중은 약 37.08%였음
  - 하지만 2021년에는 이 비중이 27.43%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24.14%로 그 비중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동 제도뿐만 아니라 고용을 지원하는 다른 조세특례 또한 동시에 확대되었기 때문임
    - 특히, 2018년에는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 관련 제도와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음
    -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는 노동의 공급 측면을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노동의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제도임

- 즉, 2018년에는 조세특례의 고용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였음

#### 4. 제도 현황: 국세청 제공 자료

- 이 절에서는 국세청이 제공한 다음의 세 가지 자료를 통해 동 조세특례의 현황을 정리함
  - 2017~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 모집단에 대한 통계자료
    - 취업자 유형 및 총급여액 구간별 신청 인원 현황
    - 취업자 유형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으로 구분
    - 총급여액은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1천만원씩 10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1천만원 초과 구간은 하나의 구간으로 처리
  - 2017~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본 조세특례 신청자에 대한 표본자료
    - 표본의 크기는 연도별 동 조세특례 전체 신청자의 약 25%
    -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
    - 각 관측치에 대한 취업자 유형, 총급여액,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중소기업취업자세액감면액, 결정세액 등의 정보 존재
  - 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동 조세특례 신고자에 대한 전수자료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중소기업취업자세액감면액, 결정세액 등의 정보 포함
- 한편, 미시 원자료에서 이상치로 판단되는 관측치는 제거하거나 조정하는 정제과정을 거쳤음
  - 예를 들어, 본 조세특례의 세액감면액이 한도인 150만원을 넘는 관측치는 150만원으로 조정하였음
    - 현행 한도는 200만원이나 2022년까지는 150만원이었음
  - 종합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금액, 또는 산출세액이 0원인 관측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가. 근로소득자 표본자료에 대한 가중치

-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동 조세특례로 인한 평균 세액감면액 등의 기초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세부 집단에 가중치를 부여함
  - 무작위 추출 시 애초에 모집단을 층화하여 추출한 것이 아닌 전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표본이 여러 집단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가중치를 통해 보정하지 않을 경우 기초통계량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취업자 유형과 총급여 구간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총 22개(2×11개)의 세부 집단으로 구분함
  - 동 조세특례는 공제율과 감면기간 등에서 청년을 우대하기 때문에 청년과 다른 집단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한도 적용 등으로 총급여액에 따라 동 제도의 실질적인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층화의 기준으로 삼음
  - 취업자 유형은 ‘청년’과 ‘청년 외’로 총 2개 집단으로 구분함
    - ‘청년 외’는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하는데, 뒤에서 살펴보듯이 전체 신고자 중 청년 이외의 신고자 비중이 매우 작음
    - ‘청년 외’ 집단의 경우 제도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이를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오히려 가중치로 인해 기초통계량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하나의 집단으로 처리함
  - 총급여 구간은 1억원 이하 구간은 1천만원 단위로 구분하고 1억원 초과 구간은 하나의 구간으로 설정하여 총 11개 구간으로 구분함
    - 이 또한 뒤에서 살펴보듯이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신고자의 비중이 매우 낮음
    - 따라서 1억원 초과 구간을 더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음
  
- 집단별 가중치는 다음의 식과 같이 해당 집단의 모집단 인원을 추출된 표본의 인원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치를 부여함
  - $$Wgt_{ijt} = \frac{PopObs_{ijt}}{SmpObs_{ijt}}$$

- 여기서,  $Wgt_{ijt}$ 는  $t$ 연도의 취업자 유형  $i$ 와 총급여 구간  $j$ 에 대한 가중치이며,  $PopObs_{ijt}$ 는 해당 모집단의 동 조세특례 신고 인원 수,  $SmpObs_{ijt}$ 는 추출된 표본 중 해당 집단의 관측치를 의미함

□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집단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는 <표 II-4>와 같으며,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 약 25%이기 때문에 가중치는 대체로 4에 가까움

○ 집단별 가중치는 해당 집단에 속한 표본 관측치가 모집단에서 몇 명의 신고자를 대표하는지를 의미함

- 예를 들어, 2017년 청년 신고자 중 총급여액이 1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관측치의 가중치가 3.7118인데, 이는 해당 계층의 표본 관측치 1개가 모집단에서 3.7118명의 신고자를 대표한다는 의미임

- 즉, 해당 모집단에서 3.7118명 중 1명이 표본으로 추출되었다는 의미임

○ 다만, 집단마다 가중치에 차이가 있는데, 가중치가 4보다 큰 집단은 표본 추출 개수가 모집단의 25%보다 적게 추출되어 표본에서 해당 집단 1개의 관측치가 모집단에서 4명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임

- 예를 들어, 2017년 청년 신고자 중 총급여액이 8천만~9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관측치의 가중치가 4.969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음

- 이는 해당 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은 4.9697명 중 1명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표본이 적게 추출되었다는 의미임

- 따라서 표본을 이용한 기초통계량 계산 시 해당 집단의 대표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단의 관측치에 높은 가중치를 주어 보정해야 함

○ 반면, 가중치가 4보다 작은 집단은 모집단 대비 표본의 개수가 25%보다 커 각 관측치가 대표해야 하는 모집단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임

- 예를 들어, 2017년 청년 외 신고자 중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속한 관측치의 가중치가 2.521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음

- 이는 해당 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은 2.5217명 중의 1명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표본이 많이 추출되었다는 의미임

- 따라서 표본을 이용한 기초통계량 계산 시 해당 집단의 대표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단의 관측치에 낮은 가중치를 주어 보정해야 함

〈표 II -4〉 표본 가중치

취업자 유형	총급여 구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	1천만원 이하	3.7118	3.4934	3.7968	3.9546	3.9339
	1천만~2천만원 이하	3.8743	3.6807	3.8650	3.9251	3.9243
	2천만~3천만원 이하	4.0491	4.1458	3.9803	3.9778	3.9687
	3천만~4천만원 이하	4.1571	4.1134	4.1276	4.0514	4.0381
	4천만~5천만원 이하	4.1068	3.9464	4.0532	4.0406	4.0674
	5천만~6천만원 이하	4.1051	3.8606	3.9136	3.9825	4.0078
	6천만~7천만원 이하	4.1245	3.8374	3.9017	4.0244	4.0767
	7천만~8천만원 이하	3.8614	3.8723	3.8907	3.9036	4.2526
	8천만~9천만원 이하	4.9697	4.0737	3.5609	4.0463	4.2185
	9천만~1억원 이하	4.2500	3.7604	3.9104	4.3313	4.1047
	1억원 초과	3.8182	3.9667	4.0493	4.2411	3.8477
청년 외	1천만원 이하	2.7697	3.2778	3.5918	3.9392	3.6399
	1천만~2천만원 이하	3.2077	3.4341	3.6925	4.0279	3.9620
	2천만~3천만원 이하	3.2343	3.5801	3.7497	3.9367	3.9926
	3천만~4천만원 이하	3.4329	3.7187	3.8909	3.8816	4.0339
	4천만~5천만원 이하	3.1273	3.6173	3.7664	4.0044	3.8536
	5천만~6천만원 이하	3.4011	3.7273	3.9115	3.9425	3.8277
	6천만~7천만원 이하	3.1957	3.4526	3.9863	3.7404	3.9504
	7천만~8천만원 이하	3.0976	2.9643	3.5000	4.2418	4.0472
	8천만~9천만원 이하	3.2400	3.4643	3.4000	4.5000	4.6167
	9천만~1억원 이하	3.1818	4.6667	3.6111	3.8333	4.3333
	1억원 초과	2.5217	2.8750	3.3947	4.7576	4.2424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
2.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표본자료

#### 나. 근로소득자 신청 인원 현황

□ 2017~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인원<sup>2)</sup>에 대한 현황을 살펴봄)

2) 동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로 『국세통계연보』의 수치와 다를 수 있으며,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본 조세특례 현황은 <부록 II>를 참고하기 바람

-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동 제도가 확대된 2018년(소득 귀속연도 기준)에 전년 대비 약 85% 증가한 것으로 관찰됨
  - 2017년 약 39만명이던 신청 인원이 2018년 약 72만명으로 약 33만명 증가함
  - 2019년에도 신청 인원이 약 8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8만명(11%) 증가함
  - 이후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약 80만명 내외 수준을 유지함

<표 II -5> 취업자 유형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근로소득자)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청 인원	전체	389,379	719,901	799,215	782,467	802,309
	청년	376,292	696,941	770,200	747,815	758,807
	고령자	11,398	20,265	26,159	31,428	39,848
	장애인	1,650	2,529	2,588	2,580	2,584
	경력단절여성	39	166	268	644	1,070
전체 신청 인원 대비 비중	청년	96.6390	96.8107	96.3696	95.5714	94.5779
	고령자	2.9272	2.8150	3.2731	4.0165	4.9667
	장애인	0.4238	0.3513	0.3238	0.3297	0.3221
	경력단절여성	0.0100	0.0231	0.0335	0.0823	0.1334
전년 대비 증감 인원	전체	-	330,522	79,314	-16,748	19,842
	청년	-	320,649	73,259	-22,385	10,992
	고령자	-	8,867	5,894	5,269	8,420
	장애인	-	879	59	-8	4
	경력단절여성	-	127	102	376	426
전년 대비 인원 증가율	전체	-	84.8844	11.0173	-2.0956	2.5358
	청년	-	85.2128	10.5115	-2.9064	1.4699
	고령자	-	77.7943	29.0846	20.1422	26.7914
	장애인	-	53.2727	2.3329	-0.3091	0.1550
	경력단절여성	-	325.6410	61.4458	140.2985	66.1491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내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소득 귀속연도 기준 2017~2021년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거의 대부분이 청년임
  - 지난 5년간 동 조세특례 신청자 중 청년의 비중이 94.6~96.8%를 차지함

- 고령자의 비중은 2017년 약 3%에서 2021년 약 5%로 증가함
-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
  - 2021년 기준 전체 신고자 중 장애인은 0.3%, 경력단절여성은 0.1%를 차지함

□ <표 II-7>~<표 II-9>는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소득분포를 대략적으로 보여줌

- 해당 표에서 원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급여액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총급여액 분포를 의미함
- 반면 임금상승 효과를 제거한 소득분포는 <표 II-6>의 임금지수를 이용하여 2017~2020년의 총급여액을 2021년의 임금수준으로 조정한 총급여액 분포를 의미함
  - 따라서 2021년의 경우 임금상승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원자료를 이용한 총급여액 분포와 동일함

<표 II -6>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추이

(단위: 원/월, %, 2021년=100)

연도	전체임금총액	임금상승률	임금지수
2017년	3,175,883	4.2100	87.2827
2018년	3,311,743	4.2779	91.0166
2019년	3,442,120	3.9368	94.5997
2020년	3,490,268	1.3988	95.9230
2021년	3,638,615	4.2503	100.0000

주: 5~299인 사업체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hmp/index.do>, 검색일자: 2023. 5. 29.

-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전체 근로소득자의 원자료 기준 총급여액 분포를 살펴보면, 1천만~5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신청자가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이는 임금상승 효과를 제거해도 마찬가지임
  - 특히, 총급여액이 2천만~4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신청자가 전체 신청자 중 60% 중후반대로 집중되어 있음
  - 동 제도가 중소기업 취업자이면서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소득 근로자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 원자료를 통해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분포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위 소득구간의 비중은 작아지고 상위 소득구간의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 관찰됨
  - <표 II-7>의 원자료 부분에서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구간의 비중은 대체로 매년 감소하고, 3천만원 초과 구간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함
  - <표 II-8>의 청년 근로소득자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됨
  - <표 II-9>의 청년 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구간의 비중이 감소하고 2천만원 초과 구간의 비중은 증가함
  
- 상위 소득구간의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임
  -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새로운 집단이 동 제도를 신청하였기 때문임
  
- 총급여액 분포 변화의 대부분이 전반적인 임금상승으로 인한 효과인 것으로 판단됨
  - 총급여액 분포의 변화 중 전반적인 임금상승 효과를 제거하면 지난 5년간 각 총급여액 구간별 신고자의 비중에 큰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음
  
- 다만, 임금상승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이후 총급여액 5천만원 초과 구간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모습이 관찰됨
  -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와 청년 근로소득자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데, 2018년부터 30~34세 근로자가 청년에 포함되면서 해당 연령의 임금이 기존의 청년들보다 소폭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반면, 청년 외 근로자의 경우 임금상승 효과를 제거할 경우 오히려 총급여액 5천만원 초과 구간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자료를 기준으로 동 조세특례 신청자 중 청년과 청년 외의 총급여액 분포를 비교해 보면 청년의 총급여액이 그 외 집단보다 낮은 소득구간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에 청년 중 98.3%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데, 청년 외 신고자 중에서는 90.6%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임
  -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소 좁혀지는 모습인데, 2021년에는 청년의 93.5%, 청년 외의 89.2%가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함

<표 II -7>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전체 근로소득자)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원자료	전체	389,379	719,901	799,215	782,467	802,309	
	1천만원 이하	14,110	16,366	20,980	22,545	20,452	
	1천만~2천만원 이하	74,147	99,969	98,763	91,213	96,214	
	2천만~3천만원 이하	167,830	286,926	307,960	292,795	272,710	
	3천만~4천만원 이하	98,748	208,440	243,928	243,978	257,242	
	4천만~5천만원 이하	26,924	74,351	89,251	90,506	100,868	
	5천만~6천만원 이하	5,283	23,471	25,586	26,426	33,313	
	6천만~7천만원 이하	1,288	6,348	7,172	8,034	10,996	
	7천만~8천만원 이하	517	2,069	2,707	3,341	4,622	
	8천만~9천만원 이하	245	871	1,247	1,455	2,285	
	9천만~1억원 이하	103	403	589	821	1,280	
	1억원 초과	184	687	1,032	1,353	2,327	
	전체 신청 인원 대비 비중	1천만원 이하	3.6237	2.2734	2.6251	2.8813	2.5491
		1천만~2천만원 이하	19.0424	13.8865	12.3575	11.6571	11.9921
		2천만~3천만원 이하	43.1020	39.8563	38.5328	37.4195	33.9906
		3천만~4천만원 이하	25.3604	28.9540	30.5209	31.1806	32.0627
		4천만~5천만원 이하	6.9146	10.3279	11.1673	11.5667	12.5722
		5천만~6천만원 이하	1.3568	3.2603	3.2014	3.3773	4.1521
		6천만~7천만원 이하	0.3308	0.8818	0.8974	1.0268	1.3705
7천만~8천만원 이하		0.1328	0.2874	0.3387	0.4270	0.5761	
8천만~9천만원 이하		0.0629	0.1210	0.1560	0.1860	0.2848	
9천만~1억원 이하		0.0265	0.0560	0.0737	0.1049	0.1595	
1억원 초과		0.0473	0.0954	0.1291	0.1729	0.2900	
임금 상승 효과 제거 (기준년: 2021년)	전체	389,379	719,901	799,215	782,467	802,309	
	1천만원 이하	9,221	11,677	17,510	19,864	20,452	
	1천만~2천만원 이하	51,143	75,086	86,838	83,527	96,214	
	2천만~3천만원 이하	130,542	233,453	268,150	260,506	272,710	
	3천만~4천만원 이하	127,449	236,225	263,195	260,209	257,242	
	4천만~5천만원 이하	51,313	105,050	109,703	105,685	100,868	
	5천만~6천만원 이하	14,206	38,518	36,082	33,636	33,313	
	6천만~7천만원 이하	3,428	12,888	10,246	10,577	10,996	
	7천만~8천만원 이하	1,013	3,718	3,735	4,051	4,622	
	8천만~9천만원 이하	497	1,539	1,611	1,818	2,285	
	9천만~1억원 이하	234	703	821	955	1,280	
	1억원 초과	333	1,044	1,324	1,639	2,327	
	전체 신청 인원 대비 비중	1천만원 이하	2.3682	1.6220	2.1909	2.5387	2.5491
		1천만~2천만원 이하	13.1345	10.4300	10.8654	10.6748	11.9921
		2천만~3천만원 이하	33.5257	32.4285	33.5517	33.2930	33.9906
		3천만~4천만원 이하	32.7314	32.8136	32.9317	33.2550	32.0627
		4천만~5천만원 이하	13.1781	14.5922	13.7264	13.5066	12.5722
		5천만~6천만원 이하	3.6483	5.3505	4.5147	4.2987	4.1521
		6천만~7천만원 이하	0.8804	1.7902	1.2820	1.3517	1.3705
7천만~8천만원 이하		0.2602	0.5165	0.4673	0.5177	0.5761	
8천만~9천만원 이하		0.1276	0.2137	0.2016	0.2323	0.2848	
9천만~1억원 이하		0.0601	0.0977	0.1027	0.1220	0.1595	
1억원 초과		0.0855	0.1450	0.1656	0.2094	0.2900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전체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
2.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표본자료
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hmp/index.do>, 검색일자: 2023. 5. 29.

<표 II -8>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청년 근로소득자)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원자료	전체	376,292	696,941	770,200	747,815	758,807	
	1천만원 이하	13,689	15,717	20,100	21,509	19,229	
	1천만~2천만원 이하	70,811	94,866	93,575	85,441	89,328	
	2천만~3천만원 이하	163,564	279,082	297,086	279,607	257,119	
	3천만~4천만원 이하	96,266	203,773	237,652	236,308	247,355	
	4천만~5천만원 이하	25,573	71,837	86,155	86,882	95,658	
	5천만~6천만원 이하	4,647	22,241	24,084	24,644	30,936	
	6천만~7천만원 이하	994	5,875	6,590	7,256	9,882	
	7천만~8천만원 이하	390	1,820	2,420	2,955	4,108	
	8천만~9천만원 이하	164	774	1,111	1,311	2,008	
	9천만~1억원 이하	68	361	524	706	1,137	
	1억원 초과	126	595	903	1,196	2,047	
	전체 신청 인원 대비 비중	1천만원 이하	3.6379	2.2551	2.6097	2.8762	2.5341
		1천만~2천만원 이하	18.8181	13.6118	12.1494	11.4254	11.7722
		2천만~3천만원 이하	43.4673	40.0438	38.5726	37.3899	33.8846
		3천만~4천만원 이하	25.5828	29.2382	30.8559	31.5998	32.5979
		4천만~5천만원 이하	6.7961	10.3075	11.1861	11.6181	12.6064
		5천만~6천만원 이하	1.2349	3.1912	3.1270	3.2955	4.0769
		6천만~7천만원 이하	0.2642	0.8430	0.8556	0.9703	1.3023
7천만~8천만원 이하		0.1036	0.2611	0.3142	0.3952	0.5414	
8천만~9천만원 이하		0.0436	0.1111	0.1442	0.1753	0.2646	
9천만~1억원 이하		0.0181	0.0518	0.0680	0.0944	0.1498	
1억원 초과	0.0335	0.0854	0.1172	0.1599	0.2698		
임금 상승 효과 제거 (기준년: 2021년)	전체	376,292	696,941	770,200	747,815	758,807	
	1천만원 이하	8,908	11,228	16,770	18,962	19,229	
	1천만~2천만원 이하	49,072	71,555	82,562	78,415	89,328	
	2천만~3천만원 이하	126,213	225,616	257,548	247,970	257,119	
	3천만~4천만원 이하	124,776	231,248	256,618	252,007	247,355	
	4천만~5천만원 이하	49,615	101,996	106,292	101,609	95,658	
	5천만~6천만원 이하	13,240	36,862	34,213	31,697	30,936	
	6천만~7천만원 이하	2,944	12,188	9,491	9,664	9,882	
	7천만~8천만원 이하	767	3,356	3,378	3,615	4,108	
	8천만~9천만원 이하	379	1,341	1,445	1,582	2,008	
	9천만~1억원 이하	163	636	706	847	1,137	
	1억원 초과	214	915	1,177	1,447	2,047	
	전체 신청 인원 대비 비중	1천만원 이하	2.3674	1.6110	2.1774	2.5357	2.5341
		1천만~2천만원 이하	13.0409	10.2670	10.7195	10.4858	11.7722
		2천만~3천만원 이하	33.5412	32.3724	33.4390	33.1592	33.8846
		3천만~4천만원 이하	33.1595	33.1804	33.3184	33.6991	32.5979
		4천만~5천만원 이하	13.1852	14.6349	13.8006	13.5875	12.6064
		5천만~6천만원 이하	3.5184	5.2891	4.4421	4.2386	4.0769
		6천만~7천만원 이하	0.7825	1.7488	1.2323	1.2922	1.3023
7천만~8천만원 이하		0.2039	0.4815	0.4386	0.4835	0.5414	
8천만~9천만원 이하		0.1007	0.1924	0.1876	0.2116	0.2646	
9천만~1억원 이하		0.0434	0.0913	0.0917	0.1133	0.1498	
1억원 초과	0.0568	0.1312	0.1528	0.1935	0.2698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청년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
2.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표본자료
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hmp/index.do>, 검색일자: 2023. 5. 29.

<표 II -9>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청년 외 근로소득자)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원자료	신청 인원	전체	13,087	22,960	29,015	34,652	43,502
		1천만원 이하	421	649	880	1,036	1,223
		1천만~2천만원 이하	3,336	5,103	5,188	5,772	6,886
		2천만~3천만원 이하	4,266	7,844	10,874	13,188	15,591
		3천만~4천만원 이하	2,482	4,667	6,276	7,670	9,887
		4천만~5천만원 이하	1,351	2,514	3,096	3,624	5,210
		5천만~6천만원 이하	636	1,230	1,502	1,782	2,377
		6천만~7천만원 이하	294	473	582	778	1,114
		7천만~8천만원 이하	127	249	287	386	514
		8천만~9천만원 이하	81	97	136	144	277
	9천만~1억원 이하	35	42	65	115	143	
	1억원 초과	58	92	129	157	280	
	전체 신청 인원 대비 비중	1천만원 이하	3.2169	2.8267	3.0329	2.9897	2.8114
		1천만~2천만원 이하	25.4909	22.2256	17.8804	16.6570	15.8292
		2천만~3천만원 이하	32.5972	34.1638	37.4772	38.0584	35.8397
		3천만~4천만원 이하	18.9654	20.3267	21.6302	22.1344	22.7277
		4천만~5천만원 이하	10.3232	10.9495	10.6703	10.4583	11.9765
		5천만~6천만원 이하	4.8598	5.3571	5.1766	5.1426	5.4641
		6천만~7천만원 이하	2.2465	2.0601	2.0059	2.2452	2.5608
7천만~8천만원 이하		0.9704	1.0845	0.9891	1.1139	1.1816	
8천만~9천만원 이하		0.6189	0.4225	0.4687	0.4156	0.6368	
9천만~1억원 이하		0.2674	0.1829	0.2240	0.3319	0.3287	
1억원 초과	0.4432	0.4007	0.4446	0.4531	0.6436		
임금 상승 효과 제거 (기준년: 2021년)	신청 인원	전체	13,087	22,960	29,015	34,652	43,502
		1천만원 이하	313	449	740	902	1,223
		1천만~2천만원 이하	2,071	3,531	4,276	5,112	6,886
		2천만~3천만원 이하	4,329	7,837	10,603	12,537	15,591
		3천만~4천만원 이하	2,673	4,977	6,576	8,203	9,887
		4천만~5천만원 이하	1,698	3,053	3,411	4,076	5,210
		5천만~6천만원 이하	966	1,656	1,870	1,939	2,377
		6천만~7천만원 이하	484	700	755	913	1,114
		7천만~8천만원 이하	246	362	356	436	514
		8천만~9천만원 이하	118	198	166	236	277
	9천만~1억원 이하	71	67	115	108	143	
	1억원 초과	119	129	147	192	280	
	전체 신청 인원 대비 비중	1천만원 이하	2.3915	1.9558	2.5501	2.6032	2.8114
		1천만~2천만원 이하	15.8258	15.3788	14.7362	14.7536	15.8292
		2천만~3천만원 이하	33.0787	34.1318	36.5423	36.1789	35.8397
		3천만~4천만원 이하	20.4229	21.6786	22.6653	23.6714	22.7277
		4천만~5천만원 이하	12.9723	13.2982	11.7567	11.7617	11.9765
		5천만~6천만원 이하	7.3837	7.2145	6.4442	5.5955	5.4641
		6천만~7천만원 이하	3.6959	3.0487	2.6017	2.6355	2.5608
7천만~8천만원 이하		1.8802	1.5774	1.2284	1.2569	1.1816	
8천만~9천만원 이하		0.9009	0.8610	0.5721	0.6804	0.6368	
9천만~1억원 이하		0.5392	0.2919	0.3962	0.3102	0.3287	
1억원 초과	0.9087	0.5633	0.5068	0.5526	0.6436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내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
2.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표본자료
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hmp/index.do>, 검색일자: 2023. 5. 29.

#### 다. 근로소득자 세액감면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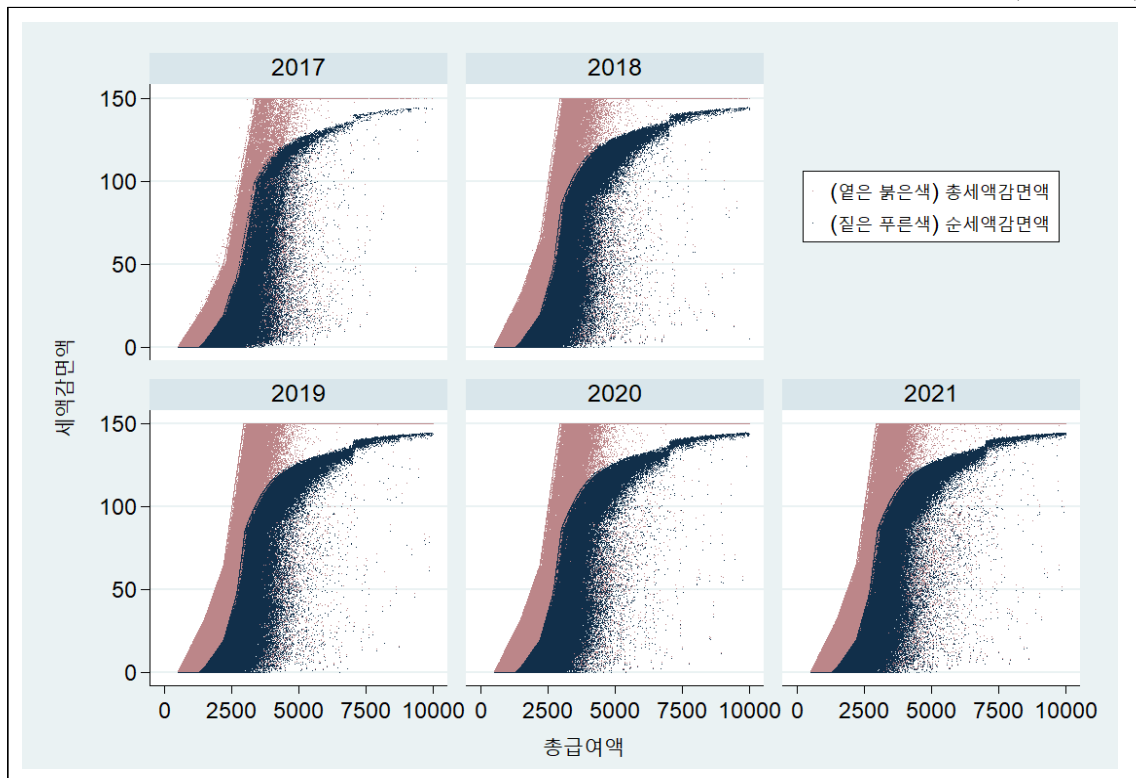
-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동 조세특례를 신청할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감소한다는 점임
  -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과대 계상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소분을 반영한 동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소분을 반영하지 않은 원자료의 조세지출 규모를 총조세지출 규모라 칭함
  -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소분을 반영하는 등 동 제도의 수혜 유무에 따른 결정세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추정한 조세지출 규모를 순조세지출 규모라 칭함
  
- 동 조세특례로 인한 순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선 국세청이 제공한 표본자료를 이용해 동 조세특례로 인한 개별 근로소득자의 순세액감면액을 추정함
  - 동 제도로 인한 순세액감면액은 동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실제 자료상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함
  - 동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과 기타 세액공제감면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함
    - 기타 세액공제감면액은 표본자료의 산출세액에서 자료상 근로소득세액공제액과 동 제도로 인한 세액감면액, 그리고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정하며, 이는 동 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기타 세액공제감면액이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액인 13만원보다 작으면 기타 세액공제감면액은 13만원으로 가정함
  - 이렇게 추정된 금액은 동 제도로 인한 순세액감면액으로, 그리고 자료상 동 제도로 인한 세액감면액은 총세액감면액으로 가정함

□ [그림 II-1]은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된 총세액감면액과 순세액감면액을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비교하는데,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두 세액감면액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총급여액이 높아지면 동 조세특례에 한도가 적용되어 동 조세특례의 실질적인 감면율이 낮아져 동 제도의 신청으로 인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소율도 작아지기 때문임
- 한편,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자체 또한 작아지는 점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한 왜곡을 감소시키는 요인임
- 동 조세특례 신청자의 총급여액은 낮은 소득구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소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동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의 과대 계상 정도가 커질 수 있음

[그림 II -1] 총세액감면액과 순세액감면액 비교(근로소득자)

(단위: 만원)



주: 1. 소득 귀속연도 기준이며, 총급여액 1억원까지만 보고

2. 상대적으로 높은(열은 붉은색) 금액이 총세액감면액이고 낮은(짙은 푸른색) 금액이 순세액감면액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
2.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표본자료

- 동 조세특례로 인한 총조세지출 규모와 순조세지출 규모는 동 제도로 인한 각 근로소득자의 총세액감면액과 순세액감면액에 표본 가중치를 적용해 합산한 값으로 추정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동 제도의 순조세지출 규모는 총조세지출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됨
  - 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에 대한 총조세지출 규모는 7,147억원이며, 순조세지출 규모는 이의 54.09%인 3,866억원임
    - 즉, 근로소득자에 대한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소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조세지출 규모를 2배가량 과대 계상할 수 있음
  - 한편, 표본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총조세지출 규모는 『국세통계연보』의 조세지출 규모보다 다소 작게 추정되었음<sup>3)</sup>
  -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자를 포함한 소득세 전체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로 다른 자료와 비교해 조세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자료 간 조세지출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나타난 동 조세 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순조세지출 규모가 아닌 총조세지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됨
  - 즉, 총조세지출 규모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소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를 과대 계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본 연구의 표본자료를 이용한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은 전수자료에 바탕을 둔 『국세통계연보』와 다를 수밖에 없음. 다만, 본 연구의 표본자료와 『국세통계연보』 모두 근로소득세 확정자료가 아닌 신고자료에 대한 통계인데, 신고자료의 정제 정도 또한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임. 본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자료의 경우 일부 관측치에서 동 제도의 한도를 초과해 신청한 경우가 관측됨. 이러한 경우 본 연구는 해당 관측치에 한도를 적용하여 가공한 뒤 추정하였음

<표 II -10>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조세지출 규모(근로소득자)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	1,935	6,068	7,792	8,397	9,672	
국세통계연보	1,934	6,001	7,715	7,839	8,744	
국세청 표본자료	총조세지출(A)	2,045	5,861	6,922	6,576	7,147
	순조세지출(B)	1,057	2,978	3,582	3,375	3,866
	격차(A-B)	988	2,883	3,339	3,201	3,281
	비중(B/A)	51.70	50.81	51.75	51.32	54.09

주: 1. 소득 귀속연도 기준

2. 『조세지출예산서』는 종합소득자가 포함된 전체 소득세 기준이며, 귀속연도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1년 뒤 조세지출 규모 기준으로 작성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9~2022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과세대상근로소득)[2014~],”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1N\\_A42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1N_A424&conn_path=I3), 검색일자: 2023. 3. 13.

3. 국세청,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에 대한 통계자료

4. 국세청,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본자료

이하에서는 동 조세특례로 인한 순세액감면액 또는 순조세지출을 기준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임금상승 효과를 제거하지 않은 원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봄

앞에서 살펴본 인원 현황과 마찬가지로 전체 조세지출 규모에서 청년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95% 내외로 대부분임

○ 전체 대비 청년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은 2018년 96.77%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에는 94.86%로 분석대상 기간 중 가장 낮았음

취업자 유형과 총급여액 구간을 함께 고려하면, 대체로 총급여액이 2천만~5천만원 구간에 있는 청년에 대한 조세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함

○ 다만, 전체 대비 해당 집단의 조세지출 비중은 2017년 87.11%에서 2021년 78.37%로 감소하였음

-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청년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계층의 조세지출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3천만원 초과 계층의 조세지출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이 또한 2018년부터 30~34세가 청년에 새로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고소득자라 할 수 있는 총급여액 1억원 초과 계층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특징임
  - 청년과 청년 외 집단을 포함한 해당 계층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2.5억원에서 2020년 19.5억원, 그리고 2021년 33.6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2020년 대비 2021년 증가폭이 크다는 점도 특징임
  - 전체 대비 해당 계층의 조세지출 비중은 2017년 0.24%에서 2020년 0.58%, 2021년 0.87%로 증가하였음
  - 물론 여기에도 임금상승 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표 II -11〉 취업자 유형 및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조세지출 규모(근로소득자)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057.1	비중	2,978.1	비중	3,582.4	비중	3,375.2	비중	3,865.6	비중
순조세지출 전체	1,006.9	95.25	2,881.8	96.77	3,457.6	96.52	3,230.7	95.72	3,666.8	94.86
청년 전체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1천만원 이하	17.6	1.67	23.0	0.77	24.2	0.68	18.2	0.54	19.7	0.51
2천만원~3천만원 이하	272.8	25.81	522.2	17.53	609.6	17.02	510.2	15.12	512.1	13.25
3천만원~4천만원 이하	432.5	40.92	1,226.0	41.17	1,504.2	41.99	1,364.7	40.43	1,537.6	39.78
4천만원~5천만원 이하	215.4	20.38	726.2	24.38	884.1	24.68	872.3	25.85	979.7	25.34
5천만원~6천만원 이하	47.8	4.52	262.0	8.80	283.6	7.92	289.0	8.56	365.2	9.45
6천만원~7천만원 이하	10.9	1.04	73.8	2.48	83.2	2.32	90.8	2.69	123.5	3.19
7천만원~8천만원 이하	5.0	0.47	24.4	0.82	32.7	0.91	40.1	1.19	55.5	1.44
8천만원~9천만원 이하	2.3	0.21	10.6	0.36	15.6	0.43	18.2	0.54	27.9	0.72
9천만원~1억원 이하	0.9	0.09	5.0	0.17	7.3	0.21	10.1	0.30	16.1	0.42
1억원 초과	1.7	0.16	8.6	0.29	13.1	0.36	17.3	0.51	29.7	0.77
청년 외 전체	50.2	4.75	96.3	3.23	124.7	3.48	144.5	4.28	198.8	5.14
1천만원 이하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1천만원~2천만원 이하	1.5	0.14	2.4	0.08	2.4	0.07	2.3	0.07	2.7	0.07
2천만원~3천만원 이하	7.8	0.74	15.5	0.52	22.3	0.62	25.5	0.76	32.1	0.83
3천만원~4천만원 이하	13.4	1.27	27.8	0.93	37.1	1.04	42.5	1.26	57.2	1.48
4천만원~5천만원 이하	12.7	1.20	24.5	0.82	30.5	0.85	34.0	1.01	50.7	1.31
5천만원~6천만원 이하	7.1	0.67	13.9	0.47	17.2	0.48	20.2	0.60	26.8	0.69
6천만원~7천만원 이하	3.6	0.34	5.8	0.20	7.0	0.20	9.3	0.27	13.3	0.34
7천만원~8천만원 이하	1.6	0.16	3.3	0.11	3.9	0.11	5.2	0.15	6.5	0.17
8천만원~9천만원 이하	1.1	0.11	1.3	0.04	1.7	0.05	1.7	0.05	3.7	0.10
9천만원~1억원 이하	0.5	0.05	0.5	0.02	0.9	0.02	1.5	0.05	1.9	0.05
1억원 초과	0.8	0.08	1.3	0.04	1.8	0.05	2.2	0.07	3.9	0.10
청년 외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에 대한 국제청 제공 통계자료
2.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제청 제공 표본자료

- 동 조세특례로 인한 평균적인 순세액감면액은 2021년 기준 약 48만원임
  - 2017년 평균 약 27만원이던 순세액감면액은 2018년 약 41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2019년 약 45만원, 2021년 약 48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2020년은 약 43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청년에 대한 감면율은 90%로 그 외 집단에 대한 감면율인 70%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간 평균적인 순세액감면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음
  - 2021년 기준 청년의 평균 순세액감면액은 약 48만원인데, 그 외 집단의 평균 순세액감면액 또한 약 46만원으로 유사함
  - 두 집단 간 감면율이 70%로 같았던 2017년에는 청년의 평균 순세액감면액이 약 27만원으로 청년 외의 평균 순세액감면액인 약 38만원보다 약 11만원 작았음
  - 다만,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집단 간 총급여액 분포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청년의 총급여액이 청년 외보다 낮은 소득구간에 더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이러한 현상은 2017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됨
  
-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동 제도로 인한 순세액감면액도 증가함
  - 이는 동 제도가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산출세액도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임
  - 총급여액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동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세액감면액이 없음
    - 동 제도가 아니더라도 해당 계층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동 제도로 인한 실질적인 세액감면 혜택이 없음

〈표 II -12〉 취업자 유형 및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세액감면액  
(근로소득자)

(단위: 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27.15	41.37	44.82	43.14	48.18
청년 전체	26.76	41.35	44.89	43.20	48.32
1천만원 이하	0.00	0.00	0.00	0.00	0.00
1천만~2천만원 이하	2.49	2.42	2.59	2.13	2.20
2천만~3천만원 이하	16.68	18.71	20.52	18.25	19.92
3천만~4천만원 이하	44.93	60.16	63.29	57.75	62.16
4천만~5천만원 이하	84.22	101.09	102.62	100.40	102.42
5천만~6천만원 이하	102.83	117.82	117.75	117.26	118.03
6천만~7천만원 이하	110.07	125.66	126.27	125.13	124.96
7천만~8천만원 이하	127.20	134.08	135.15	135.70	135.07
8천만~9천만원 이하	137.96	137.17	140.19	138.89	139.12
9천만~1억원 이하	136.72	138.53	140.20	142.39	141.16
1억원 초과	133.40	144.08	144.58	144.30	145.14
청년 외 전체	38.34	41.93	42.98	41.69	45.69
1천만원 이하	0.00	0.00	0.00	0.00	0.00
1천만~2천만원 이하	4.37	4.76	4.58	4.04	3.86
2천만~3천만원 이하	18.35	19.74	20.50	19.34	20.56
3천만~4천만원 이하	54.10	59.50	59.13	55.35	57.81
4천만~5천만원 이하	93.91	97.51	98.41	93.84	97.22
5천만~6천만원 이하	111.16	112.61	114.62	113.46	112.77
6천만~7천만원 이하	121.48	123.01	120.22	118.94	119.23
7천만~8천만원 이하	129.44	132.61	135.67	134.86	127.27
8천만~9천만원 이하	141.64	132.42	127.08	116.96	135.00
9천만~1억원 이하	140.93	126.00	132.90	134.03	133.61
1억원 초과	145.08	141.45	136.68	143.24	141.00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
2.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표본자료

□ 동 제도로 인한 평균 순세액감면율(산출세액 대비 순세액감면액)은 2017년 20.34%에서 2021년 28.45%로 증가하였음

○ 특히, 제도가 크게 확대된 2018년의 평균 세액감면율은 27.03%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순세액감면율이 가장 높은 총급여액 구간은 4천만~5천만원으로 2021년 기준 청년의 경우 42.00%, 청년 외의 경우 37.07%임

- 중소기업 계층에서 순세액감면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저소득 계층에서는 동 제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작아 실질적인 세액감면율이 낮아지고, 고소득 계층에서는 한도 적용으로 납부할 세액 대비 세액감면액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임

<표 II -13> 취업자 유형 및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세액감면율  
(근로소득자)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20.3392	27.0342	28.3585	27.5124	28.4525
청년	청년 전체	20.2989	27.1550	28.5125	27.6840	28.6882
	1천만원 이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천만~2천만원 이하	5.6752	5.4839	5.7846	4.6851	4.9311
	2천만~3천만원 이하	21.5646	23.6529	24.7375	23.1064	24.1128
	3천만~4천만원 이하	28.0947	38.3787	39.3368	37.9650	39.0556
	4천만~5천만원 이하	33.0012	41.9434	42.2269	42.8305	42.0045
	5천만~6천만원 이하	27.5748	33.8394	34.2921	34.5125	33.5925
	6천만~7천만원 이하	21.4350	26.9194	26.4501	26.9606	26.3222
	7천만~8천만원 이하	18.2430	20.9326	21.0313	21.1886	20.9923
	8천만~9천만원 이하	15.1218	15.9491	16.3382	16.2685	16.3731
	9천만~1억원 이하	12.1176	12.6054	13.4481	13.1966	12.9756
1억원 초과	6.9297	7.8992	7.7518	7.9188	8.1231	
청년 외	청년 외 전체	21.4988	23.3670	24.2706	23.8076	24.3412
	1천만원 이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천만~2천만원 이하	9.2927	9.8480	9.4643	8.3791	8.1498
	2천만~3천만원 이하	22.1392	23.0952	23.9230	22.9091	23.4974
	3천만~4천만원 이하	31.4137	33.6829	33.8684	33.2556	33.3565
	4천만~5천만원 이하	35.1801	36.7246	36.5923	37.0249	37.0701
	5천만~6천만원 이하	29.5348	29.9688	30.3644	30.5788	29.4991
	6천만~7천만원 이하	23.5252	24.1880	23.9721	24.0596	23.3376
	7천만~8천만원 이하	19.5551	18.6235	19.7918	19.4716	18.5539
	8천만~9천만원 이하	15.2844	14.9224	15.0573	12.7126	14.4611
	9천만~1억원 이하	12.8902	10.8840	11.8555	12.2134	11.8492
1억원 초과	9.2712	7.8742	8.2650	8.1572	7.6378	

주: 1. 소득 귀속연도 기준

2. 개인의 실효세율 감소분에 대한 가중평균(<표 II-4>의 가중치 적용)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
2.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표본자료

□ 동 제도로 인한 평균 실효세율(총급여액 대비 순세액감면액) 감소폭은 2017년 0.81%p에서 2021년 1.27%p로 증가하였음

○ 실효세율 감소폭 또한 제도가 크게 확대된 2018년 1.14%p로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었음

□ 순세액감면율처럼 동 제도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폭도 총급여액 4천만~5천만원 구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동 제도로 인한 해당 소득 계층의 실효세율 감소폭은 청년의 경우 2.33%p, 청년 외의 경우 2.20%p임

<표 II -14> 취업자 유형 및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폭 (근로소득자)

(단위: %p)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0.8068	1.1384	1.2325	1.1602	1.2699
청년	청년 전체	0.8005	1.1398	1.2362	1.1638	1.2760
	1천만원 이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천만~2천만원 이하	0.1358	0.1314	0.1422	0.1174	0.1212
	2천만~3천만원 이하	0.6459	0.7155	0.7820	0.6912	0.7515
	3천만~4천만원 이하	1.2982	1.7268	1.8186	1.6554	1.7781
	4천만~5천만원 이하	1.9221	2.2900	2.3275	2.2794	2.3279
	5천만~6천만원 이하	1.9209	2.1822	2.1898	2.1760	2.1843
	6천만~7천만원 이하	1.7293	1.9698	1.9709	1.9543	1.9511
	7천만~8천만원 이하	1.7225	1.8024	1.8218	1.8268	1.8201
	8천만~9천만원 이하	1.6493	1.6270	1.6623	1.6449	1.6490
	9천만~1억원 이하	1.4575	1.4677	1.4785	1.5057	1.4894
1억원 초과	1.0464	1.1427	1.1175	1.1266	1.1481	
청년 외	청년 외 전체	0.9892	1.0942	1.1335	1.0843	1.1636
	1천만원 이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천만~2천만원 이하	0.2433	0.2604	0.2519	0.2234	0.2143
	2천만~3천만원 이하	0.7310	0.7840	0.8158	0.7616	0.8056
	3천만~4천만원 이하	1.5463	1.6953	1.6937	1.5834	1.6489
	4천만~5천만원 이하	2.1067	2.1930	2.2087	2.1182	2.1992
	5천만~6천만원 이하	2.0456	2.0815	2.1170	2.0928	2.0694
	6천만~7천만원 이하	1.8748	1.9056	1.8788	1.8527	1.8523
	7천만~8천만원 이하	1.7558	1.7761	1.8221	1.8157	1.7242
	8천만~9천만원 이하	1.6576	1.5811	1.4937	1.3895	1.5761
	9천만~1억원 이하	1.5280	1.3226	1.4251	1.4223	1.4195
1억원 초과	1.1775	1.1662	1.1606	1.1670	1.1236	

주: 1. 소득 귀속연도 기준

2. 개인의 실효세율 감소분에 대한 가중평균(<표 II-4>의 가중치 적용)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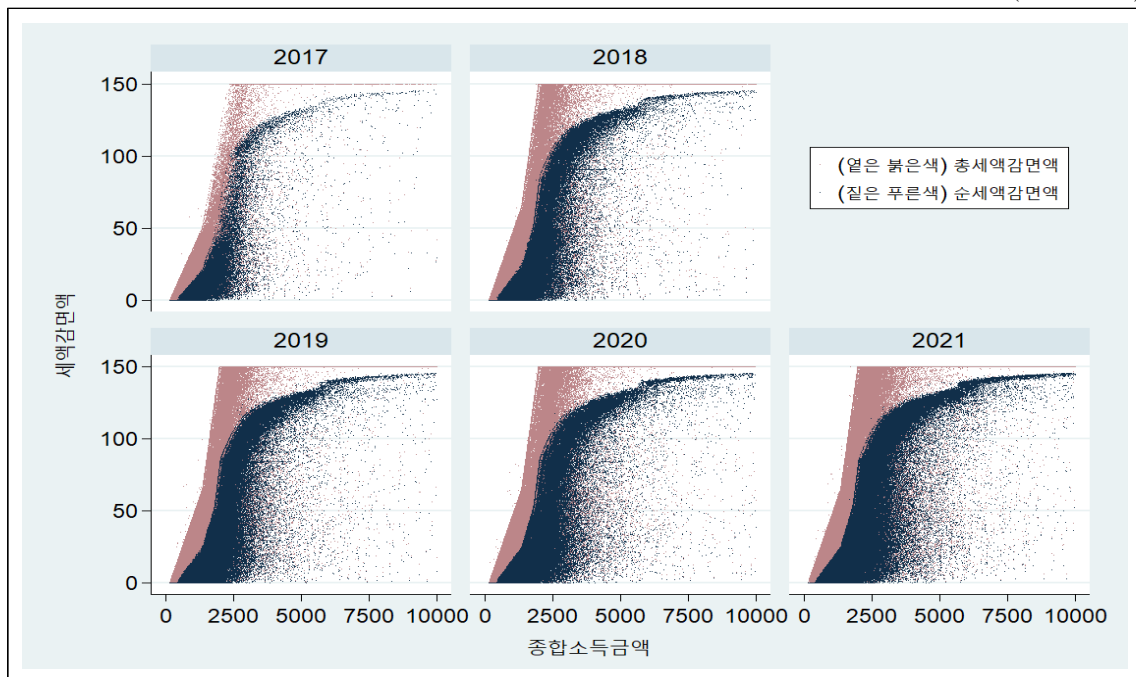
2.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표본자료

## 라. 종합소득자 현황

-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나타난 동 제도의 조세지출 현황도 살펴보고자 함
  - 다만, 근로소득자와 달리 종합소득자의 경우 본 연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취업자 유형에 대한 정보가 없음
  - 또한 종합소득자 중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근로소득 자료와 중복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보도 존재하지 않아 국세청 제공 자료로는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먼저 종합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동 조세특례로 인한 순세액감면액을 계산함
  - 순세액감면액은 앞의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함
  - [그림 II-2]는 동 제도를 신청한 종합소득자의 총세액감면액과 순세액감면액을 비교하는데, 근로소득자에 대한 그림인 [그림 II-1]과 유사한 모습임

[그림 II -2] 총세액감면액과 순세액감면액 비교(종합소득자)

(단위: 만원)



주: 1. 소득 귀속연도 기준이며, 종합소득금액 1억원까지만 보고

2. 상대적으로 높은(열은 붉은색) 금액이 총세액감면액이고 낮은(짙은 푸른색) 금액이 순세액감면액  
 자료: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종합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지난 5년간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종합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였음
  - 총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30.5억원에서 2021년 1,133.7억원으로 약 8.7배 증가하였음
  - 순조세지출 규모 또한 2017년 66.8억원에서 2021년 644.5억원으로 약 9.6배 증가하였음
  
- 2021년 기준 종합소득자에 대한 순조세지출 규모는 총조세지출 규모의 약 43.15% 수준으로 분석됨
  - 2021년 순조세지출 규모는 644.5억원으로 총조세지출 규모인 1,133.7억원보다 489.2억원 낮음
  - 즉, 종합소득자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 추정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감소분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조세지출 규모가 2배 이상 과대 계상됨

<표 II -15> 본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종합소득자)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조세지출(A)	130.5	504.8	729.8	775.0	1,133.7
순조세지출(B)	66.8	268.4	386.2	408.8	644.5
격차(A-B)	63.7	236.4	343.5	366.2	489.2
비중(B/A)	48.80	46.83	47.07	47.26	43.15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종합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인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종합소득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임
  - 2017년 약 2만 9천명이던 신청자가 2021년에는 약 14만 6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지난 5년간 2020년을 제외한 다른 해의 신청 인원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모습임
  
- 동 조세특례 신청 인원의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동 제도의 신청자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됨

- 2021년 기준 동 제도 신청자의 50.9%가 종합소득금액 1천만~2천만원 구간에 속함
  - 같은 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신청자가 78.2%이며, 5천만원 이하인 신청자는 95.1%임
  - 즉, 동 조세특례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용취약계층의 특성상 동 제도의 신청자는 주로 저소득층임
- 근로소득자와 유사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비중은 감소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층의 비중은 증가함
-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 다만, 임금 상승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긴 하지만 사라지는 않음
    - 이는 앞에서 살펴본 근로소득세 신고자와는 다른 특징임
    - 분석대상 자료에 포함된 종합소득자들은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약 90%로 대체로 근로소득자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임금 상승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종합소득금액의 실질화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하였음
  - 따라서 동 제도를 신청한 종합소득자의 경우 평균으로 실질 소득이 상승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주로 저소득층이 동 조세특례를 신청하기 때문에 조세지출 또한 주로 저소득층에 귀착됨
- 2021년 순조세지출 규모인 644.5억원 중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계층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325.4억원으로 50.5%를 차지함
  - 5천만원 이하 계층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도 558.1억원으로 86.6%를 차지함

<표 II -16>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종합소득자)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원자료	전체	28,608	74,639	101,938	110,098	146,388	
	1천만원 이하	7,180	14,424	18,176	17,975	20,177	
	1천만~2천만원 이하	12,927	29,749	40,524	42,354	50,858	
	2천만~3천만원 이하	5,926	18,827	26,988	30,802	43,505	
	3천만~4천만원 이하	1,486	6,990	9,531	10,601	17,600	
	4천만~5천만원 이하	473	2,429	3,434	4,127	7,099	
	5천만~6천만원 이하	219	976	1,449	1,787	3,318	
	6천만~7천만원 이하	115	460	672	840	1,531	
	7천만~8천만원 이하	80	246	356	434	737	
	8천만~9천만원 이하	50	145	225	263	458	
	9천만~1억원 이하	33	83	122	174	245	
	1억원 초과	119	310	461	741	860	
	전체 신청 인원 대비 비중	1천만원 이하	25.0979	19.3250	17.8304	16.3264	13.7832
		1천만~2천만원 이하	45.1867	39.8572	39.7536	38.4694	34.7419
		2천만~3천만원 이하	20.7145	25.2241	26.4749	27.9769	29.7190
		3천만~4천만원 이하	5.1944	9.3651	9.3498	9.6287	12.0228
		4천만~5천만원 이하	1.6534	3.2543	3.3687	3.7485	4.8494
		5천만~6천만원 이하	0.7655	1.3076	1.4215	1.6231	2.2666
		6천만~7천만원 이하	0.4020	0.6163	0.6592	0.7630	1.0459
		7천만~8천만원 이하	0.2796	0.3296	0.3492	0.3942	0.5035
8천만~9천만원 이하		0.1748	0.1943	0.2207	0.2389	0.3129	
9천만~1억원 이하		0.1154	0.1112	0.1197	0.1580	0.1674	
1억원 초과	0.4160	0.4153	0.4522	0.6730	0.5875		
임금 상승 효과 제거 (기준년: 2021년)	전체	28,608	74,639	101,938	110,098	146,388	
	1천만원 이하	5,636	12,187	16,511	16,775	20,177	
	1천만~2천만원 이하	11,536	26,905	37,823	39,896	50,858	
	2천만~3천만원 이하	7,326	20,424	28,577	32,189	43,505	
	3천만~4천만원 이하	2,523	8,732	11,021	11,776	17,600	
	4천만~5천만원 이하	704	3,386	4,052	4,600	7,099	
	5천만~6천만원 이하	342	1,344	1,759	2,117	3,318	
	6천만~7천만원 이하	163	600	838	942	1,531	
	7천만~8천만원 이하	94	350	432	508	737	
	8천만~9천만원 이하	71	207	246	309	458	
	9천만~1억원 이하	54	124	158	178	245	
	1억원 초과	159	380	521	808	860	
	전체 신청 인원 대비 비중	1천만원 이하	19.7008	16.3279	16.1971	15.2364	13.7832
		1천만~2천만원 이하	40.3244	36.0468	37.1039	36.2368	34.7419
		2천만~3천만원 이하	25.6082	27.3637	28.0337	29.2367	29.7190
		3천만~4천만원 이하	8.8192	11.6990	10.8115	10.6959	12.0228
		4천만~5천만원 이하	2.4609	4.5365	3.9750	4.1781	4.8494
		5천만~6천만원 이하	1.1955	1.8007	1.7256	1.9228	2.2666
		6천만~7천만원 이하	0.5698	0.8039	0.8221	0.8556	1.0459
		7천만~8천만원 이하	0.3286	0.4689	0.4238	0.4614	0.5035
8천만~9천만원 이하		0.2482	0.2773	0.2413	0.2807	0.3129	
9천만~1억원 이하		0.1888	0.1661	0.1550	0.1617	0.1674	
1억원 초과	0.5558	0.5091	0.5111	0.7339	0.5875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종합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hmp/index.do>, 검색일자: 2023. 5. 29.

<표 II -17>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조세지출 규모(종합소득자)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268.4	비중	386.2	비중	408.8	비중	644.5	비중	
순조세지출 전체	66.8									
1천만원 이하	1.2	2.4	0.88	3.2	0.82	3.0	0.74	4.0	0.62	
1천만~2천만원 이하	17.4	48.1	17.92	70.1	18.15	67.3	16.47	87.8	13.62	
2천만~3천만원 이하	24.9	102.5	38.20	150.2	38.89	155.0	37.91	233.7	36.26	
3천만~4천만원 이하	11.9	63.2	23.53	87.5	22.67	91.7	22.43	157.5	24.43	
4천만~5천만원 이하	4.6	25.9	9.67	36.7	9.50	42.8	10.47	75.2	11.67	
5천만~6천만원 이하	2.3	11.1	4.14	16.4	4.24	19.8	4.84	37.8	5.87	
6천만~7천만원 이하	1.3	5.6	2.07	8.0	2.08	9.9	2.41	18.8	2.92	
7천만~8천만원 이하	0.9	3.0	1.10	4.2	1.10	5.3	1.30	9.3	1.44	
8천만~9천만원 이하	0.6	1.8	0.67	2.7	0.71	3.3	0.80	5.9	0.91	
9천만~1억원 이하	0.4	1.1	0.40	1.5	0.38	2.0	0.50	3.2	0.49	
1억원 초과	1.4	3.9	1.44	5.7	1.47	8.7	2.12	11.4	1.76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종합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종합소득자의 경우 동 조세특례 신청자의 평균 순세액감면액은 2021년 기준 약 44만원으로 나타남
  - 종합소득자 전체 평균 순세액감면액은 2017년 23만원이었으나, 2018년에 36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는 2018년부터 청년의 감면율이 70%에서 90%로 인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전체 평균 순세액감면율 또한 2017년 17.3%에서 2018년 22.5%로, 2021년 24.6%로 증가하였음
  - 이로 인해 동 조세특례 신청자의 전체 평균 실효세율 감소폭도 2017년 0.99%p에서 2018년 1.38%p, 2021년 1.57%p로 확대되었음
  
- 종합소득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세액감면제도의 특성상 순세액감면액도 증가하는 모습임
  - 2021년 기준 순세액감면액은 종합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 구간은 2만원, 1억원 초과 구간은 132만원임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의 순세액감면금액이 0원이었는데, 종합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 구간은 그렇지 않음
  - 이는 총급여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순세액감면율은 종합소득금액 3천만~4천만원 구간을 정점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이 구간에서 멀어질수록 순세액감면율은 감소하며, 실효세율 감소폭도 동일한 모습을 보임
  - 2021년 기준 해당 구간의 평균 순세액감면율은 34.0%이며, 이로 인해 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2.6%p 감소함
  -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소득이 낮으면 실질적인 세부담이 적어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도 적어지고, 소득이 높으면 세액감면액에 대한 한도로 인해 세부담 대비 세액감면액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임

<표 II -18>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세제혜택(종합소득자)

(단위: 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순 세액 감면액	전체	23.35	35.96	37.89	37.13	44.03
	1천만원 이하	1.62	1.63	1.74	1.69	1.99
	1천만~2천만원 이하	13.48	16.16	17.30	15.89	17.26
	2천만~3천만원 이하	41.98	54.46	55.66	50.32	53.71
	3천만~4천만원 이하	80.15	90.36	91.86	86.51	89.47
	4천만~5천만원 이하	98.02	106.81	106.84	103.74	105.96
	5천만~6천만원 이하	103.32	113.78	113.05	110.64	114.07
	6천만~7천만원 이하	111.16	120.69	119.28	117.49	122.99
	7천만~8천만원 이하	112.73	120.21	119.30	122.27	125.63
	8천만~9천만원 이하	118.07	123.35	121.27	124.99	127.96
	9천만~1억원 이하	116.31	128.15	121.60	117.05	129.80
1억원 초과	115.09	124.58	122.83	116.90	132.15	
순 세액 감면율	전체	17.3079	22.5133	23.6284	23.1271	24.6143
	1천만원 이하	4.3591	4.5094	4.7330	4.5661	5.3502
	1천만~2천만원 이하	19.3065	21.7048	22.6980	21.6013	22.3013
	2천만~3천만원 이하	25.7860	33.5352	34.3976	33.0308	33.4174
	3천만~4천만원 이하	28.6489	33.9521	34.6055	33.7518	34.0290
	4천만~5천만원 이하	23.4767	27.2409	27.1839	26.7685	26.9099
	5천만~6천만원 이하	18.3750	21.1674	21.0960	20.9382	21.2045
	6천만~7천만원 이하	14.6847	16.1759	16.1857	16.0304	17.0526
	7천만~8천만원 이하	11.0424	12.5160	12.5217	12.6663	13.2670
	8천만~9천만원 이하	9.5521	10.1544	10.2290	10.6795	10.7168
	9천만~1억원 이하	7.9388	9.1126	8.4727	8.4415	9.0505
1억원 초과	3.7825	4.3998	4.4599	3.9489	4.5958	
실효 세율 감소폭	전체	0.9854	1.3806	1.4564	1.3786	1.5661
	1천만원 이하	0.1910	0.1923	0.2055	0.2021	0.2369
	1천만~2천만원 이하	0.8691	1.0192	1.0813	0.9822	1.0636
	2천만~3천만원 이하	1.7023	2.2113	2.2665	2.0437	2.1649
	3천만~4천만원 이하	2.3639	2.6517	2.6992	2.5324	2.6291
	4천만~5천만원 이하	2.2109	2.4243	2.4184	2.3478	2.3952
	5천만~6천만원 이하	1.9084	2.1010	2.0830	2.0397	2.1024
	6천만~7천만원 이하	1.7296	1.8670	1.8523	1.8247	1.9170
	7천만~8천만원 이하	1.5037	1.6168	1.6084	1.6416	1.6849
	8천만~9천만원 이하	1.4051	1.4571	1.4359	1.4851	1.5157
	9천만~1억원 이하	1.2436	1.3614	1.2851	1.2379	1.3715
1억원 초과	0.7583	0.8521	0.8539	0.7624	0.8702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종합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Ⅲ. 타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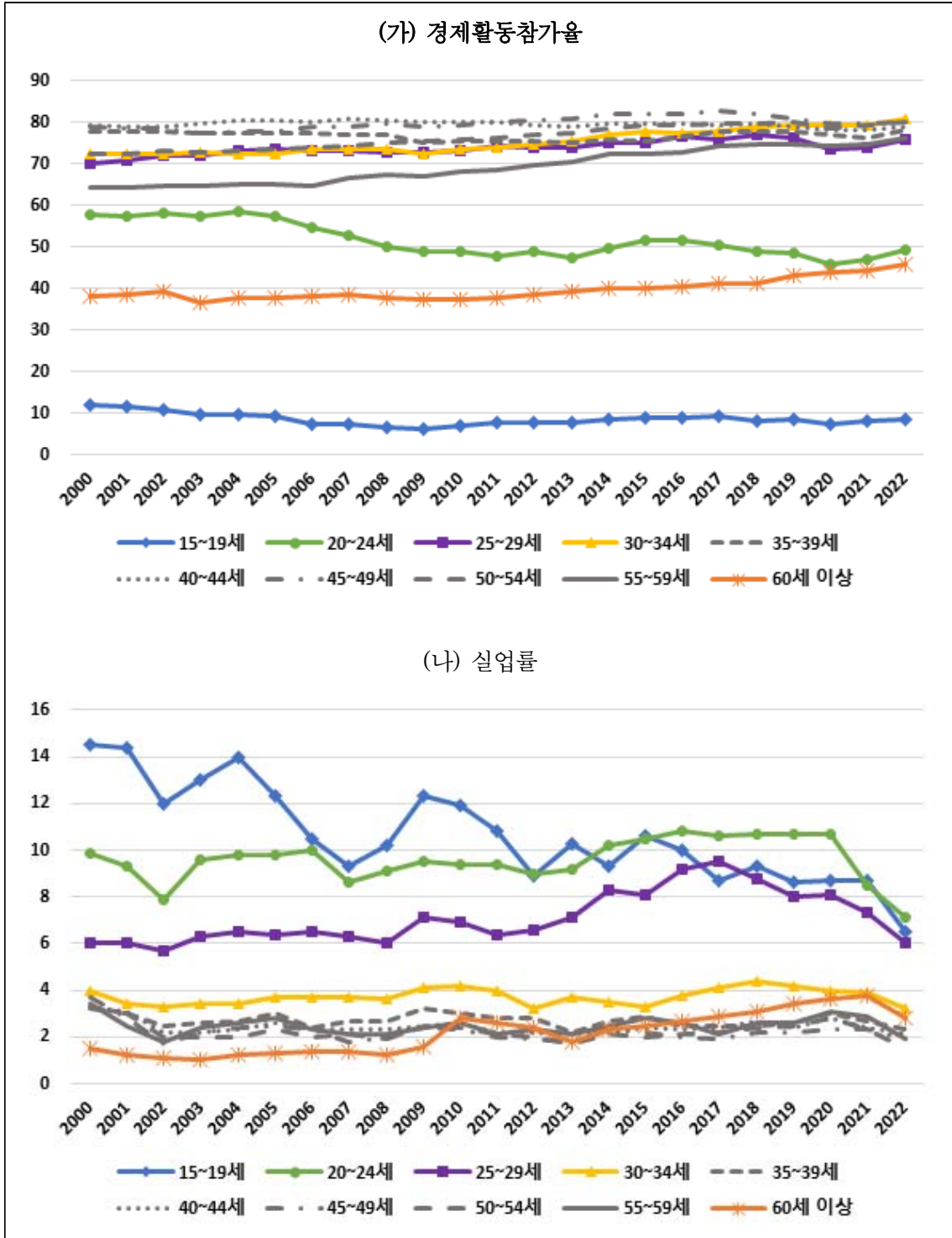
### Ⅲ. 타당성 분석

#### 1. 정부개입의 타당성

- 본 조세특례는 고용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하여 임금을 보조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노동시장의 임금 체계에 개입함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심각한 인력불일치(mismatch) 문제를 겪고 있음
  - 노동공급자인 청년은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상황임
  - 이와 동시에 노동수요자인 중소기업은 지속해서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 이러한 노동시장의 인력불일치는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이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오종현·신상화·강성훈(2015), 최승문·강성훈(2018), 권성준·강성훈·조희평(2021) 등의 선행연구 또한 동일한 이유로 동 제도를 통한 정부개입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음
  
- 먼저 연령대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다른 계층에 비해 청년 계층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15~29세의 실업률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30세 이상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 25~29세 실업률은 2017년 9.5%로 가장 높았다가 2022년에는 6.0%로 낮아졌지만, 2022년 50~54세 실업률인 1.5%보다 4.5%p 높은 상황임
  - 경제활동참가율은 학령기(고등교육 포함)에 있는 24세 이하 계층과 은퇴기에 가깝거나 은퇴기에 접어든 60세 이상 계층에서 낮은 모습임

[그림 III-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 검색일자: 2023. 4. 5.

〈표 III-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5~19세	12.0	11.7	10.6	9.8	9.8	9.1	7.5	7.2	6.5	6.2	7.0	7.6	7.7	7.7	8.5	8.8	8.8	9.2	8.2	8.3	7.2	8.1	8.5
20~24세	57.9	57.5	58.3	57.5	58.5	57.3	54.7	52.8	50.1	49.1	48.9	47.9	49.0	47.6	49.9	51.6	51.6	50.6	48.9	48.7	46.0	47.1	49.5
25~29세	70.3	71.0	71.9	72.1	73.4	73.8	73.4	73.1	73.0	72.7	73.2	74.4	74.1	74.1	75.3	75.0	76.6	75.9	76.9	76.5	73.5	73.9	75.9
30~34세	72.6	72.3	72.6	72.7	72.6	72.3	73.5	73.6	73.5	72.6	73.8	73.9	74.7	75.7	76.9	77.8	77.6	77.9	78.9	79.4	79.3	79.4	80.8
35~39세	77.9	77.9	78.0	77.3	77.5	77.4	77.5	77.0	76.9	75.3	75.5	75.4	75.5	75.3	76.0	75.6	76.6	77.8	77.8	78.0	76.9	76.4	78.2
40~44세	79.4	79.2	79.2	79.7	80.4	80.4	80.3	80.9	80.6	80.0	80.1	80.2	79.5	79.2	79.8	79.9	79.9	79.4	79.6	79.2	78.2	78.3	79.1
45~49세	79.0	78.8	78.8	77.4	77.8	77.9	78.9	79.1	79.6	79.2	79.5	80.1	80.5	80.9	82.0	82.1	82.0	82.7	82.2	81.1	79.9	79.9	80.3
50~54세	72.5	72.6	73.4	72.8	73.1	73.8	74.1	74.5	75.3	75.4	75.8	76.3	77.0	77.6	78.8	79.4	79.3	79.8	79.7	80.1	78.6	79.3	80.3
55~59세	64.4	64.2	64.9	64.7	65.3	65.1	64.9	66.6	67.3	67.2	68.3	68.8	69.7	70.7	72.6	72.6	72.8	74.2	74.7	74.8	74.5	74.8	76.4
60세 이상	38.2	38.4	39.2	36.6	37.8	37.6	38.0	38.6	37.8	37.5	37.2	37.7	38.6	39.2	40.0	40.1	40.5	41.1	41.4	43.0	44.0	44.5	45.8
15~19세	14.5	14.4	12.0	13.0	14.0	12.3	10.5	9.3	10.2	12.3	11.9	10.8	8.9	10.3	9.3	10.6	10.0	8.7	9.3	8.6	8.7	8.7	6.5
20~24세	9.9	9.3	7.9	9.6	9.8	9.8	10.0	8.6	9.1	9.5	9.4	9.4	9.0	9.2	10.2	10.5	10.8	10.6	10.7	10.7	10.7	8.5	7.1
25~29세	6.0	6.0	5.7	6.3	6.5	6.4	6.5	6.3	6.0	7.1	6.9	6.4	6.6	7.1	8.3	8.1	9.2	9.5	8.8	8.0	8.1	7.3	6.0
30~34세	4.0	3.4	3.3	3.4	3.4	3.7	3.7	3.7	3.6	4.1	4.2	4.0	3.2	3.7	3.5	3.3	3.8	4.1	4.4	4.2	4.0	3.9	3.2
35~39세	3.3	3.0	2.5	2.6	2.7	3.0	2.4	2.7	2.7	3.2	3.0	2.8	2.8	2.2	2.7	2.9	2.5	2.5	2.5	2.6	3.0	2.7	2.3
40~44세	3.3	3.1	2.2	2.2	2.3	2.6	2.3	2.3	2.3	2.5	2.6	2.2	2.2	2.1	2.2	2.4	2.3	2.4	2.7	2.4	2.8	2.4	2.1
45~49세	3.7	2.8	1.7	2.2	2.4	2.5	2.3	1.8	2.0	2.4	2.3	2.0	1.9	1.8	2.3	2.2	2.0	1.9	2.2	2.2	2.3	2.3	1.9
50~54세	3.2	3.0	2.0	2.0	2.0	2.3	2.0	2.1	1.9	2.5	2.4	2.1	2.0	1.7	2.1	2.0	2.1	2.2	2.4	2.5	2.8	2.3	1.5
55~59세	3.4	2.5	1.8	2.4	2.6	2.8	2.3	2.1	2.1	2.4	2.6	2.1	2.3	2.1	2.5	2.8	2.6	2.1	2.6	2.6	3.1	2.9	1.9
60세 이상	1.5	1.2	1.1	1.0	1.2	1.3	1.4	1.4	1.2	1.6	2.8	2.6	2.4	1.8	2.3	2.5	2.7	2.9	3.1	3.4	3.6	3.8	2.8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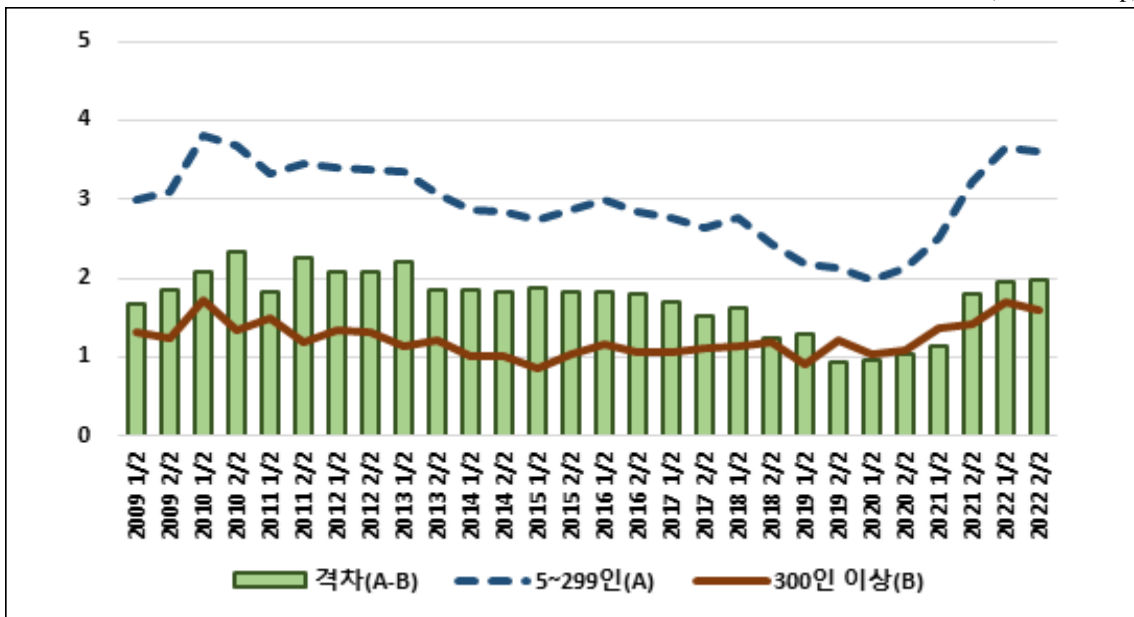
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 검색일자: 2023. 4. 5.

- 한편 우리나라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5~299인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이 300인 이상 사업체보다 높은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2020년경까지 점차 완화되다가 최근 다시 심화되는 모습임
  - 2022년 하반기 기준 5~299인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3.59%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1.60%보다 1.99%p 높았음
    - 300인 사업체와 비교해 5~299인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0년 하반기로 그 격차는 2.34%p였음
  - 5~299인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2010년 상반기에 3.82%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0년 상반기에 1.97%를 기록할 때까지 10여년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다시 급격히 증가한 모습임

[그림 III-2] 사업체규모별 인력 부족률 현황

(단위: %, %p)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hmp/index.do>, 검색 일자: 2023. 4. 5.

<표 III-2> 사업체규모별 인력 부족 현황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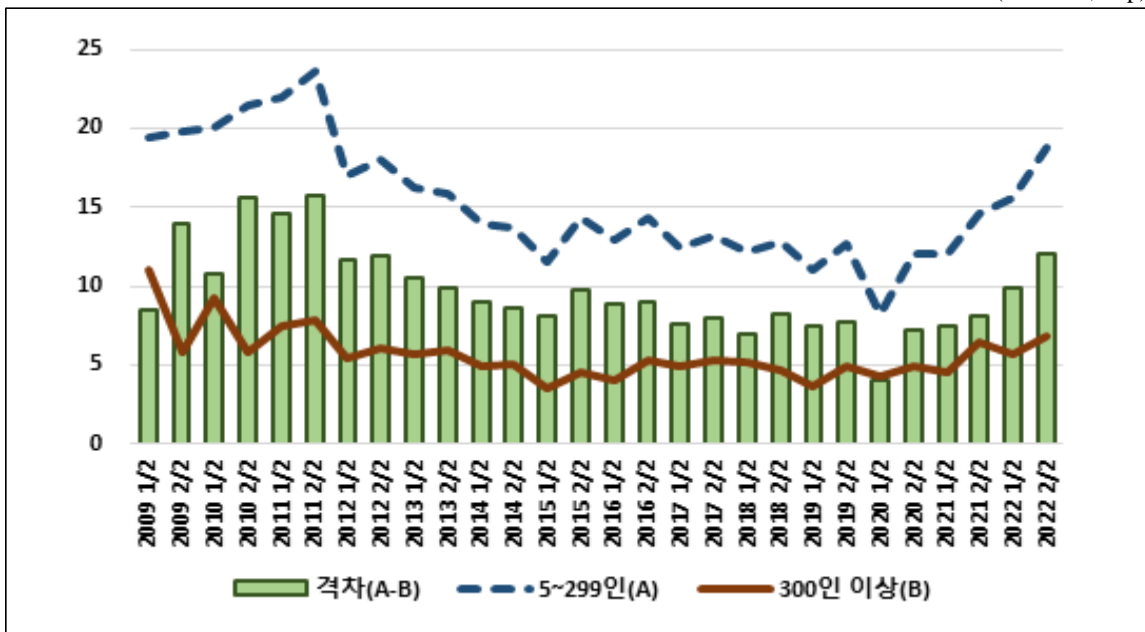
시점	5~299인			300인 이상			부족률 격차 (C-F)
	현원 (A)	부족인원 (B)	부족률 (C=B/ (A+B))	현원 (D)	부족인원 (E)	부족률 (F=E/ (D+E))	
2009년 상반기	6,384,053	196,464	2.99	1,664,150	22,110	1.31	1.67
2009년 하반기	6,571,448	210,049	3.10	1,557,068	19,680	1.25	1.85
2010년 상반기	7,105,539	281,854	3.82	1,825,831	32,088	1.73	2.09
2010년 하반기	7,370,534	281,590	3.68	1,825,500	24,856	1.34	2.34
2011년 상반기	7,613,806	261,581	3.32	1,890,010	28,656	1.49	1.83
2011년 하반기	7,809,120	279,228	3.45	1,906,517	22,981	1.19	2.26
2012년 상반기	7,850,734	277,076	3.41	1,954,416	26,323	1.33	2.08
2012년 하반기	7,959,508	277,644	3.37	1,924,947	25,420	1.30	2.07
2013년 상반기	8,094,126	279,518	3.34	1,956,514	22,438	1.13	2.20
2013년 하반기	8,243,477	260,778	3.07	2,012,870	24,633	1.21	1.86
2014년 상반기	8,371,253	247,324	2.87	2,061,011	21,172	1.02	1.85
2014년 하반기	8,591,648	251,685	2.85	2,086,776	21,378	1.01	1.83
2015년 상반기	8,841,463	249,275	2.74	2,125,683	18,473	0.86	1.88
2015년 하반기	9,122,582	269,764	2.87	2,204,364	23,286	1.05	1.83
2016년 상반기	9,229,159	285,447	3.00	2,252,168	26,618	1.17	1.83
2016년 하반기	9,375,975	274,604	2.85	2,282,018	24,357	1.06	1.79
2017년 상반기	9,371,887	265,422	2.75	2,312,585	24,839	1.06	1.69
2017년 하반기	9,441,791	256,239	2.64	2,362,073	26,675	1.12	1.53
2018년 상반기	9,567,274	271,190	2.76	2,417,716	27,993	1.14	1.61
2018년 하반기	9,732,299	243,793	2.44	2,460,581	29,785	1.20	1.25
2019년 상반기	9,762,276	217,423	2.18	2,484,941	22,478	0.90	1.28
2019년 하반기	9,927,370	216,101	2.13	2,502,388	30,404	1.20	0.93
2020년 상반기	9,927,667	199,949	1.97	2,524,746	26,218	1.03	0.95
2020년 하반기	9,941,748	216,260	2.13	2,573,833	28,429	1.09	1.04
2021년 상반기	9,881,448	254,210	2.51	2,606,115	36,044	1.36	1.14
2021년 하반기	10,007,681	332,495	3.22	2,638,691	37,853	1.41	1.80
2022년 상반기	10,089,987	381,842	3.65	2,669,156	46,159	1.70	1.95
2022년 하반기	10,233,823	381,189	3.59	2,719,378	44,327	1.60	1.9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hmp/index.do>, 검색 일자: 2023. 4. 5.

-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상황은 인력 미충원율에 더 잘 나타나는데, 5~299인 사업체의 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인원의 비율인 미충원율은 2022년 하반기에 18.79%에 이르렀음
-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사업체의 미충원율은 6.80%로 그 격차는 11.99%p임
  - 5~299인과 300인 이상 사업체의 미충원율 격차는 2011년 하반기에 15.72%p로 가장 컸음
- 5~299인 사업체의 미충원율도 2011년 하반기에 23.55%를 기록한 이후 2020년 상반기에 8.27%를 기록할 때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임

[그림 III-3] 사업체규모별 인력 미충원율 현황

(단위: %, %p)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hmp/index.do>, 검색 일자: 2023. 4. 5.

<표 III-3> 사업체규모별 미충원인원 현황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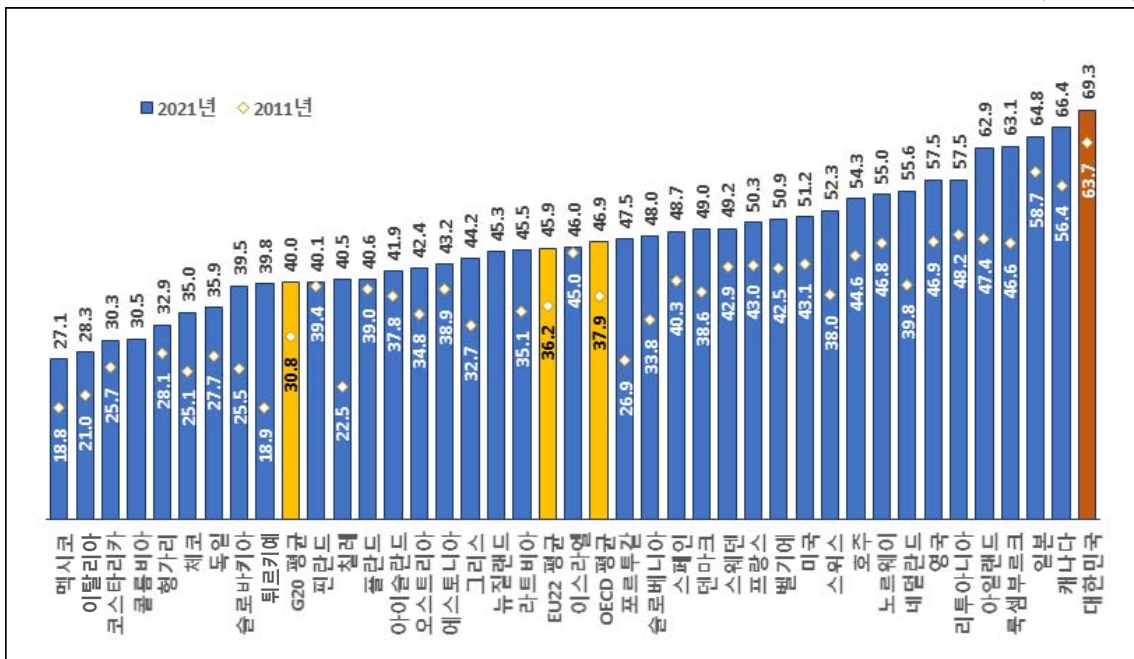
시점	5~299인			300인 이상			미충원을 격차 (C-F)
	구인인원 (A)	미충원 인원 (B)	미충원율 (C=B/A)	구인인원 (D)	미충원 인원 (E)	미충원율 (F=E/D)	
2009년 상반기	352,645	68,584	19.45	72,252	7,927	10.97	8.48
2009년 하반기	391,931	77,724	19.83	73,316	4,294	5.86	13.97
2010년 상반기	547,678	109,889	20.06	114,488	10,639	9.29	10.77
2010년 하반기	513,121	109,737	21.39	97,095	5,651	5.82	15.57
2011년 상반기	528,126	116,154	21.99	107,876	8,043	7.46	14.54
2011년 하반기	544,973	128,329	23.55	104,978	8,220	7.83	15.72
2012년 상반기	524,211	89,108	17.00	102,474	5,516	5.38	11.62
2012년 하반기	549,201	98,876	18.00	111,019	6,719	6.05	11.95
2013년 상반기	565,550	91,505	16.18	123,691	7,018	5.67	10.51
2013년 하반기	557,292	88,372	15.86	107,045	6,338	5.92	9.94
2014년 상반기	620,267	86,571	13.96	134,718	6,688	4.96	8.99
2014년 하반기	591,795	80,938	13.68	106,946	5,408	5.06	8.62
2015년 상반기	644,114	74,496	11.57	141,203	4,879	3.46	8.11
2015년 하반기	596,135	85,113	14.28	118,984	5,467	4.59	9.68
2016년 상반기	703,987	90,567	12.86	150,779	6,134	4.07	8.80
2016년 하반기	617,240	88,651	14.36	123,882	6,631	5.35	9.01
2017년 상반기	688,165	85,671	12.45	167,597	8,205	4.90	7.55
2017년 하반기	590,322	78,001	13.21	134,642	7,051	5.24	7.98
2018년 상반기	668,633	81,024	12.12	177,142	9,178	5.18	6.94
2018년 하반기	596,652	76,486	12.82	159,478	7,425	4.66	8.16
2019년 상반기	643,743	71,009	11.03	166,744	5,999	3.60	7.43
2019년 하반기	546,570	69,023	12.63	141,154	6,886	4.88	7.75
2020년 상반기	648,299	53,590	8.27	149,872	6,405	4.27	3.99
2020년 하반기	506,406	61,060	12.06	125,071	6,129	4.90	7.16
2021년 상반기	653,877	78,530	12.01	158,183	7,208	4.56	7.45
2021년 하반기	686,729	100,081	14.57	150,664	9,724	6.45	8.12
2022년 상반기	791,309	123,551	15.61	195,286	11,100	5.68	9.93
2022년 하반기	730,070	137,164	18.79	170,747	11,615	6.80	11.9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hmp/index.do>, 검색 일자: 2023. 4. 5.

-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은 5~299인 사업체의 미충원인원 중 대부분(2022년 하반기 기준 82.63%)이 전문대졸 이하 수준의 직능을 의미하는 직능 1~2수준에 대한 인력이라는 점임
  -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해당 직능의 미충원인원 비중은 62.19%로 5~299인 사업체보다 낮음
  
-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직능수준의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청년은 비교적 높은 직능수준의 일자리를 찾고 있어, 직능수준에서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 간 구조적인 불일치가 존재함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2021년 같은 연령대의 OECD 회원국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은 37.9%로 우리나라와는 31.4%p의 차이가 존재함
  - 같은 기준의 G20 국가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은 30.8%로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침

[그림 III-4] OECD 국가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단위: %)



자료: OECD(2022), p. 46, Table A1.2, <https://stat.link/zke5wq>, 검색일자: 2023. 6. 6.

<표 III-4> 사업체규모 및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 현황

(단위: 명, %)

시점	5~299인					300인 이상				
	총 미충원 인원	직능 1~2수준		직능 3~4수준		총 미충원 인원	직능 1~2수준		직능 3~4수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09년 상반기	65,901	51,911	78.77	13,990	21.23	7,872	6,281	79.79	1,591	20.21
2009년 하반기	75,274	62,128	82.54	13,146	17.46	4,248	2,785	65.56	1,463	34.44
2010년 상반기	104,554	85,039	81.34	19,515	18.66	10,630	8,214	77.27	2,416	22.73
2010년 하반기	105,130	88,125	83.82	17,005	16.18	5,638	3,543	62.84	2,095	37.16
2011년 상반기	108,958	88,099	80.86	20,859	19.14	8,014	4,746	59.22	3,268	40.78
2011년 하반기	121,010	100,202	82.80	20,808	17.20	8,177	5,623	68.77	2,554	31.23
2012년 상반기	85,219	70,919	83.22	14,300	16.78	5,456	3,345	61.31	2,111	38.69
2012년 하반기	94,379	80,945	85.77	13,434	14.23	6,695	4,883	72.94	1,812	27.06
2013년 상반기	86,584	73,783	85.22	12,801	14.78	6,724	4,299	63.94	2,425	36.06
2013년 하반기	84,809	71,182	83.93	13,627	16.07	6,260	4,823	77.04	1,437	22.96
2014년 상반기	83,351	68,115	81.72	15,236	18.28	6,666	4,756	71.35	1,910	28.65
2014년 하반기	78,678	65,856	83.70	12,822	16.30	5,384	4,213	78.25	1,171	21.75
2015년 상반기	72,001	61,237	85.05	10,764	14.95	4,875	3,661	75.10	1,214	24.90
2015년 하반기	82,213	71,082	86.46	11,131	13.54	5,399	4,112	76.16	1,287	23.84
2016년 상반기	87,448	71,968	82.30	15,480	17.70	6,106	4,553	74.57	1,553	25.43
2016년 하반기	85,527	73,624	86.08	11,903	13.92	6,435	4,752	73.85	1,683	26.15
2017년 상반기	79,751	68,097	85.39	11,654	14.61	8,017	5,745	71.66	2,272	28.34
2017년 하반기	73,876	62,269	84.29	11,607	15.71	6,927	5,454	78.74	1,473	21.26
2018년 상반기	77,177	63,151	81.83	14,026	18.17	9,039	6,789	75.11	2,250	24.89
2018년 하반기	72,757	60,991	83.83	11,766	16.17	7,352	5,191	70.61	2,161	29.39
2019년 상반기	68,803	53,254	77.40	15,549	22.60	5,883	3,549	60.33	2,334	39.67
2019년 하반기	67,921	53,636	78.97	14,285	21.03	6,869	4,208	61.26	2,661	38.74
2020년 상반기	51,841	39,938	77.04	11,903	22.96	6,353	3,613	56.87	2,740	43.13
2020년 하반기	58,141	46,716	80.35	11,425	19.65	6,046	3,750	62.02	2,296	37.98
2021년 상반기	74,688	61,097	81.80	13,591	18.20	7,098	4,032	56.80	3,066	43.20
2021년 하반기	95,313	77,481	81.29	17,832	18.71	9,671	6,068	62.74	3,603	37.26
2022년 상반기	117,197	96,504	82.34	20,693	17.66	10,667	6,192	58.05	4,475	41.95
2022년 하반기	130,469	107,804	82.63	22,665	17.37	11,578	7,200	62.19	4,378	37.81

- 주: 1.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에는 외국인근로자 제외  
 2. 직능 1~2수준은 전문대졸 이하 수준의 업무로 2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자격기술자격법」상의 산업기사 수준 이하의 직능을 의미  
 3. 직능 3~4수준은 대졸 이상 수준의 업무로 2년 이상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자격기술자격법」상의 기사 수준 이상의 직능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hmp/index.do>, 검색 일자: 2023. 4. 5.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 또한 고등교육 이수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게 해 노동시장의 인력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 최근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5~299인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 비중은 60% 초반 수준으로 나타남
  - 이 비중은 2010년 58.00%에서 2020년 66.66%까지 상승했으나 2022년 63.96%로 다시 소폭 하락하였음
  
-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능수준의 저임금 근로자를 원하지만 청년의 학력 수준은 많은 경우 중소기업 직무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고 이에 따라 원하는 임금 수준도 높아 노동시장에서는 구조적인 인력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2022)의 「2022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나타난 300인 미만 사업체와 직능수준별 미충원 사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업체가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설문 결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인력불일치 문제와 일맥상통함
  
- 노동시장의 인력불일치 문제는 시장 기능으로 짧은 기간 내 해결하기 어려워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이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바람직한 모습은 고급 인력이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어 고등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임
  -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노동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당 기간 청년 등의 고용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은 노동시장의 인력불일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지만, 개선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 제도와 같이 현존하는 문제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표 III -5〉 사업체규모별 임금 현황

(단위: 시간, 원, %)

연도	5~299인			300인 이상			임금격차		임금비중	
	월 근로시간 (A)	월 임금총액 (B)	시간당 임금 (C=B/A)	월 근로시간 (E)	월 임금총액 (F)	시간당 임금 (G=F/E)	월 임금총액 (B-F)	시간당 임금 (C-G)	월 임금총액 (B/F)	시간당 임금 (C/G)
2008년	177.4	2,270,858	12,801	173.8	3,786,252	21,785	1,515,394	8,984	59.98	58.76
2009년	176.7	2,338,036	13,232	173.7	3,809,193	21,930	1,471,157	8,698	61.38	60.34
2010년	177.8	2,479,364	13,945	172.2	4,140,084	24,042	1,660,720	10,098	59.89	58.00
2011년	176.9	2,511,717	14,199	174.0	4,154,150	23,874	1,642,433	9,676	60.46	59.47
2012년	175.2	2,663,861	15,205	171.0	4,289,856	25,087	1,625,995	9,882	62.10	60.61
2013년	173.3	2,764,054	15,950	169.9	4,446,866	26,173	1,682,812	10,224	62.16	60.94
2014년	172.0	2,835,501	16,485	168.9	4,678,408	27,699	1,842,907	11,214	60.61	59.52
2015년	173.2	2,938,306	16,965	169.7	4,849,460	28,577	1,911,154	11,612	60.59	59.37
2016년	172.0	3,047,579	17,718	166.9	4,959,343	29,714	1,911,764	11,996	61.45	59.63
2017년	168.6	3,175,883	18,837	164.4	4,983,104	30,311	1,807,221	11,474	63.73	62.15
2018년	166.0	3,311,743	19,950	163.3	5,305,185	32,487	1,993,442	12,537	62.42	61.41
2019년	165.0	3,442,120	20,861	164.1	5,356,454	32,641	1,914,334	11,780	64.26	63.91
2020년	162.6	3,490,268	21,465	162.8	5,242,487	32,202	1,752,219	10,737	66.58	66.66
2021년	162.8	3,638,615	22,350	162.3	5,581,667	34,391	1,943,052	12,041	65.19	64.99
2022년	160.7	3,795,312	23,617	160.4	5,922,421	36,923	2,127,109	13,305	64.08	63.9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hmp/index.do>, 검색일자: 2023. 4. 19.

<표 III-6> 사업체규모별 미충원 사유

(단위: 건, %)

구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전체	7,480	100	1,544	100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 하였기 때문	371	4.96	41	2.66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경쟁 때문	654	8.74	205	13.28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	1,130	15.11	95	6.15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 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2,144	28.66	394	25.5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1,139	15.23	319	20.66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1,227	16.40	330	21.37
통근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	346	4.63	33	2.14
기타	469	6.27	127	8.23

자료: 고용노동부(2022), p. 12

<표 III-7> 직능수준별 미충원 사유

(단위: 건, %)

구분	직능 1~2수준		직능 3~4수준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전체	6,574	100	2,450	100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 하였기 때문	355	5.40	57	2.33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경쟁 때문	605	9.20	254	10.37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	1,189	18.09	36	1.47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 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2,035	30.96	503	20.53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791	12.03	667	27.2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825	12.55	732	29.88
통근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	342	5.20	37	1.51
기타	432	6.57	164	6.69

자료: 고용노동부(2022, p. 1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정책대상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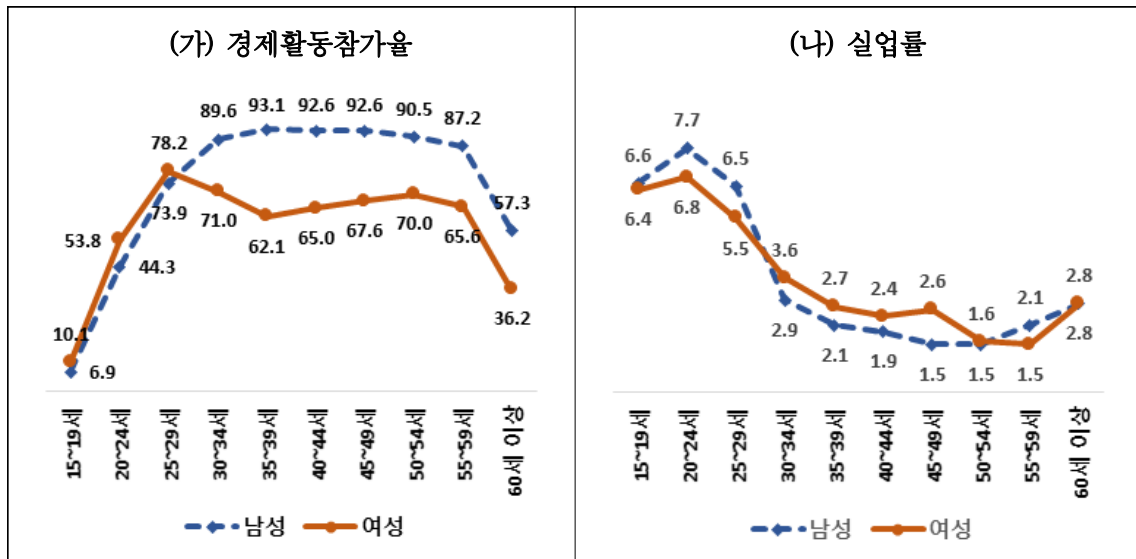
### 가. 고용취약계층의 지원

- 동 조세특례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큰 틀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집단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거나 실업률이 높은 집단으로 중소기업 노동공급의 외적한계(extensive margin)를 확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노동공급은 외적한계 또는 내적한계(intensive margin)를 확장하여 증가시킬 수 있는데, 외적한계를 넓힌다는 것은 현재 고용되지 않은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고용하여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함
    - 내적한계를 높인다는 것은 이미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늘려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함
  - 동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 노동공급의 외적한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 정책대상 설정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함
    - 앞에서 논의한 노동공급의 인력불일치 문제는 청년 실업률과 관련되나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경우에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동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22년 실업률을 성별과 5세 단위의 연령대로 구분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의 실업률이 다른 집단보다 높음
  - 남성과 여성 모두 15~29세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
    - 특히, 20~24세 남성의 실업률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청년에 속하는 30~34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함
  - 이는 35세 이상 남성과 여성 모두 실업률이 3%보다 낮은 모습과는 대조적임
  
- 성별·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5~59세와 비교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임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59세에 87.2%였던 것이 60세 이상이 되면 57.3%로 급격히 낮아짐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55~59세에 65.6%였던 것이 60세 이상이 되면 36.2%로 크게 떨어짐

[그림 III-5] 성별·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단위: %)



주: 2022년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conn_path=I2), 검색일자: 2023. 4. 5.

-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으로 30대에 낮아지다가 40대에 다시 증가하는데, 이는 출산·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임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5~29세에는 남성보다 높았지만, 30세 이상이 되면 남성보다 낮아진 뒤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출산·육아가 지난 이후에도 그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으면서도 동시에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이며, 경증 장애인에 한정하더라도 43.3%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임
  - 장애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많아 실업률 또한 전체 장애인은 7.1%, 경증 장애인은 6.8%로 높은 모습임

<표 III-8>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단위: %)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전체	중증	경증	전체	중증	경증
2013년	38.3	21.5	46.0	5.9	10.8	4.8
2014년	39.6	24.8	46.4	6.6	8.5	6.2
2015년	37.7	20.8	45.4	7.9	11.2	7.2
2016년	38.5	21.7	46.4	6.5	9.2	5.9
2017년	38.7	21.2	46.9	5.7	7.7	5.3
2018년	37.0	22.1	43.9	6.6	8.4	6.2
2019년	37.3	22.6	43.3	6.3	7.3	6.1
2020년	37.0	21.3	44.2	5.9	6.9	5.6
2021년	37.3	23.8	43.3	7.1	8.2	6.8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 장애정도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3&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3&conn_path=I2), 검색일자: 2023. 7. 3.

#### 나. 청년의 연령 요건

- 동 제도는 2018년부터 30~34세를 청년의 연령 요건에 포함하였음
-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지표만 고려하면 30~34세를 정책대상에 포함할 타당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35~59세와 비교해 좋지 않은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됨
    - 청년의 경우 학업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참가율보다는 실업률이 정책대상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지표임
    - 다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9세가 노동시장에 더 빨리 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어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30~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35~59세의 수준에 거의 수렴하는 것으로 관찰됨

- 다만 청년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동 제도의 청년 연령에 30~34세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고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조세특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동 제도와 동일하게 청년의 연령을 15~34세로 정의함
  -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는 노동공급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노동수요자를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2023년에 도입되었음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한 제도로 기존 제도는 일몰이 도래했거나 도래할 예정임
- 한편 「청년기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함
- 정부(관계부처 합동, 2023)는 현재 15~29세로 정의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 연령을 2023년 하반기에 공론화를 거쳐 15~34세로 확대할 계획임

#### 다. 경력단절여성의 요건

##### 1) 동종 업종 재취업 요건

- 본 조세특례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당시 근무하던 기업과 한국표준분류산업의 동일한 중분류에 속한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지원함
  - 이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이하 ‘경력단절여성고용증대세제’)의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준용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중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지원하는 다른 조세특례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경력단절여성 정의 시 ‘경력’을 상당히 협소하게 정의하여, 어떤 업종에 대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그 경력이 이어지는 경우에만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제도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의를 위해 준용하는 ‘경력단절여성고용증대세제’의 경우 2018년까지는 경력단절 당시 퇴사한 기업에 재취업하였을 경우에만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하였음

- ‘경력단절여성고용증대세계’의 경우 노동수요자를 지원하는 정책이고 동 제도 도입 당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됨
  - 이러한 동일 기업 재취업 요건이 2019년부터 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으로 완화되었음
- 경력단절여성의 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경력단절 당시까지 축적한 기술이나 능력 등의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임
-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이 경력단절 이전에 축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전혀 새로운 직무를 수행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인적자원의 배분에 비효율이 발생함
  - 특히 오랜 기간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축적한 여성일수록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시 해당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요건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노동공급자인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과정에서 업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업종 요건을 통해 여성이 취업을 결정할 때 경력단절 전 축적한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이 경우에도 경력단절 기간에 새로운 분야의 인적자본을 축적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동일 업종에 취업해야만 경력단절여성의 인적자본이 충분히 활용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음
  - 한편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할 때 업종 선택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해당 요건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음
- 여성가족부(2023)의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경력단절은 여성을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표 III-9>를 살펴보면, 경력단절 이후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경력단절 전 22.4%에서 경력단절 후 9.2%로 13.2%p 감소함
  -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의 비중은 경력단절 전 20.7%에서 경력단절 후 26.6%로 5.9%p 증가함
  - 음식 및 숙박업 종사자의 비중은 경력단절 전 4.3%에서 경력단절 후 13.3%로 9.0%p 증가함
  - <표 III-10>을 살펴보면, 경력단절 이후 사무직 종사자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직과 판매직 종사자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임
    - 사무직 종사자의 비중은 경력단절 전 47.3%에서 경력단절 후 23.6%로 23.7%p 감소함
    - 반면,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중은 경력단절 전 7.4%에서 경력단절 후 19.9%로 12.5%p 증가함
    - 판매직 종사자의 비중 또한 경력단절 전 12.2%에서 경력단절 후 26.2%로 14.0%p 증가함
  - <표 III-11>을 살펴보면, 경력단절 당시와 비교하여 경력단절 이후 종사하는 사업체 규모 또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1~4인 사업체 종사자의 비중이 경력단절 전 20.9%에서 경력단절 후 45.7%로 24.8%p 증가함
  - <표 III-9>~<표 III-11>을 통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제조업에 속한 대규모 사업체의 사무직에 종사하던 여성이 경력단절로 인해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에 속한 소규모 사업체에서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보았을 때 동 제도의 동종 업종 재취업 요건은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스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으로 경력단절여성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하여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표 III-9〉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업종 변화

(단위: %, %p)

구분	전체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100.0	22.4	4.5	20.7	4.3	4.8	11.7	12.4	4.5	8.4	6.3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100.0	9.2	2.0	26.6	13.3	4.6	9.1	14.2	6.8	6.2	8.0
증감	-	-13.2	-2.5	5.9	9.0	-0.2	-2.6	1.8	2.3	-2.2	1.7

주: 1. 기타 서비스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 기타는 농업·임업·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주요 결과」, 보도자료 별첨, 2023. 6. 1., p. 4

〈표 III-10〉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직종 변화

(단위: %, %p)

구분	전체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기계조작	단순노무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100.0	0.0	26.6	47.3	7.4	12.2	0.1	1.4	3.7	1.3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100.0	0.1	21.4	23.6	19.9	26.2	0.4	1.3	2.7	4.4
증감	-	0.1	-5.2	-23.7	12.5	14.0	0.3	-0.1	-1.0	3.1

자료: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주요 결과」, 보도자료 별첨, 2023. 6. 1., p. 4

〈표 III -11〉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 변화

(단위: %, %p)

구분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잘 모르겠음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100.0	20.9	21.3	23.8	17.1	6.8	1.9	4.7	3.4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100.0	45.7	18.2	17.8	10.5	3.2	0.8	1.4	2.4
증감	-	24.8	-3.1	-6.0	-6.9	-3.6	-1.1	-3.3	-1.0

자료: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주요 결과」, 보도자료 별첨, 2023. 6. 1., p. 3

## 2) 성별 요건

- 동 제도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이 재취업하였을 경우 지원하지만 유사한 사유로 퇴직한 뒤 재취업한 남성에게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동 제도뿐만 아니라 현재 경력단절여성은 고용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많은 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경력단절남성은 거의 모든 정책이나 사회적 인식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우리 사회가 경력이 단절된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에만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러한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실제로 많은 여성이 경력단절 후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 이와 동시에 일과 가정에서 남녀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도 경력단절남성이 주목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판단됨
  
- 하지만 결혼,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도 정책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 자료를 살펴보면, 육아 및 가사의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남성도 존재함
    - 2022년 기준 육아 및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676만 2천명, 남성이 19만 9천명임
  - 정책대상이 소수일지라도 성별을 이유로 정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임
    - 물론, 경력단절남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계층을 정책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조세지출 규모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가 남녀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전환하여 남성도 육아와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2022년 우리나라는 0.784)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합계

4)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path=I2), 검색일자: 2023. 6. 15.

출산율을 기록하였음

-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 법과 제도에서 성역할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비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임

<표 III-12>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시점	남성				여성			
	전체	소계	육아	가사	전체	소계	육아	가사
2010년	5,357	162	5	157	10,511	7,095	1,481	5,614
2011년	5,399	147	4	143	10,599	7,213	1,482	5,731
2012년	5,423	146	5	141	10,653	7,316	1,481	5,835
2013년	5,483	144	6	138	10,713	7,322	1,476	5,846
2014년	5,382	130	6	124	10,578	7,170	1,433	5,737
2015년	5,494	149	8	141	10,592	7,108	1,434	5,674
2016년	5,565	161	8	153	10,622	7,067	1,355	5,712
2017년	5,598	168	4	164	10,585	6,971	1,262	5,709
2018년	5,697	166	8	158	10,590	6,974	1,183	5,791
2019년	5,797	156	9	147	10,521	6,831	1,166	5,665
2020년	6,030	163	9	154	10,743	6,992	1,180	5,812
2021년	6,074	194	13	181	10,696	6,943	1,107	5,836
2022년	5,897	199	12	187	10,442	6,762	984	5,77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45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45S&conn_path=I3), 검색일자: 2020. 6. 15.

### 3. 지원방법의 적절성

#### 가. 세액감면율

- 동 조세특례 신청 시 청년의 세액감면율은 90%이며, 그 외 다른 정책대상자들의 세액감면율은 70%임
- 즉, 동 제도는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보다 청년을 우대함

- 우선, 현행 세액감면율인 70~90%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동 제도의 도입 초기인 2012~2013년에는 세액감면율이 100%였는데, 고용취약 계층이라 하더라도 특정 조세특례 하나로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면세자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 국민개세주의 측면에서도 단 하나의 조세특례로 소득세 전체를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의 세액감면율을 90%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4~2015년 동 제도의 세액감면율은 50%였는데, 오종현·신상화·강성훈(2015)에 따르면 이때 동 제도를 신청할 경우 오히려 소득세 결정세액이 많아지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였음
    - 이는 동 조세특례를 신청할 경우 동 제도로 인해 세액이 줄어드는 동시에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감소하여 세금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세액공제율이 낮으면 후자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임
    -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세액감면율을 70%로 인상한 바 있음
  - 제Ⅱ장의 제도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하에서 순세액감면율이 평균적으로 30%를 넘지 않으며, 순세액감면율이 높은 소득구간인 총급여액 4천만~5천만원 구간의 평균 순세액감면율 또한 40% 내외 수준으로 동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는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뒤의 효과성 분석에서 살펴보겠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음
    - 한편, 순세액감면율에는 세액감면 한도액의 영향도 반영되어 있음
- 한편 동 제도는 청년을 우대하는데, 이는 동 제도의 주된 정책대상이 청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의 목적은 근로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것인데, 다른 근로취약계층과 달리 청년은 높은 실업률로 노동시장의 인력불일치 문제를 발생시키는 계층이므로 동 제도의 주된 정책대상이 될 수 있음

- 한편, 다른 집단과 비교해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시 기회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청년의 세제혜택을 다른 집단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른 집단보다 연령이 낮은 청년은 은퇴까지의 잔여 근로연수가 길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장기간 근무할 경우 기회비용이 다른 집단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음

## 나. 세액감면액 한도

- 동 제도는 도입 시 세액감면액에 한도가 없다가 2016년 150만원의 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인 2023년부터 한도를 2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이는 지난 7년간 연평균 4.2% 인상된 것인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는 연평균 약 2.0% 인상된 효과임
    - 물가상승률은 2016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sup>5)</sup> 기준이며, 2023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7월까지의 실적치, 8~12월은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한다고 가정하여 월평균으로 계산함
- 동 제도에 세액감면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세액감면 제도의 특성상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함
  - 고소득층이 동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이 아님에도 동 제도를 통해 한도 없이 세액감면을 받는다면 사중손실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함
  - 뒤의 효과성 분석에서 살펴보듯이 고소득층이 동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는 통계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함
  - 한편, 고소득층이 동 제도의 세제혜택에 반응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액감면액에만 한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동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소득요건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액감면액 한도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살펴보면, 순세액감면액은 평균 7만원, 순세액감면율은 평균 2.4%p 인상되고 실효세율은 평균 0.1%p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2.1. 소비자물가지수,”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8. 4.

- 세액감면액 한도 인상은 2023년부터 적용되어 아직 이로 인해 순세액감면율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Ⅱ장에서 활용한 국세청 제공 근로소득자 표본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귀속자료를 이용해 모의실험한 결과임
  
- 취업자유형 및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세액감면액 한도를 인상하더라도 인상 전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액 4천만~5천만원 구간에 속한 청년의 순세액감면율이 5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 집단의 순세액감면율은 기존의 42.0%에서 9.1%p 상승한 것이며, 실효세율 감소폭은 또한 기존의 2.3%에서 2.9%로 0.5%p 높아짐
  - 청년 외 집단에서도 총급여액 4천만~5천만원 구간의 순세액감면율이 42.9%로 가장 높음
  - 다만 청년 외 집단의 경우 실효세율 감소폭은 기존 제도하에서는 4천만~5천만원 구간이 가장 컸는데, 세액감면액 한도가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5천만~6천만원 구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순세액감면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은 총급여액 5천만~6천만원 구간에 속한 청년임
  - 이 계층의 순세액감면율은 기존 33.6%에서 43.2%로 9.6%p 상승하며, 실효세율 감소폭은 또한 2.2%에서 2.8%로 0.6%p 증가함
  - 동일한 총급여액 구간의 청년 외 집단의 순세액감면율은 8.2%p 증가하였으며, 실효세율 감소폭은 청년과 유사한 0.6%p임

<표 III-13> 세액감면 한도 증가에 따른 세제혜택 변화(근로소득자)

(단위: 만원, %, %p)

구분	순감면액			순감면율			실효세율 순감소폭			
	150 (A)	200 (B)	증감 (B-A)	150 (C)	200 (D)	증감 (D-C)	150 (E)	200 (F)	증감 (F-E)	
전체	48.2	55.2	7.0	28.5	30.8	2.4	1.3	1.4	0.1	
청년	청년 전체	48.3	55.4	7.1	28.7	31.1	2.4	1.3	1.4	0.2
	1천만원 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2천만원 이하	2.2	2.2	0.0	4.9	4.9	0.0	0.1	0.1	0.0
	3천만원 이하	19.9	19.9	0.0	24.1	24.1	0.0	0.8	0.8	0.0
	4천만원 이하	62.2	66.8	4.7	39.1	41.2	2.2	1.8	1.9	0.1
	5천만원 이하	102.4	126.6	24.2	42.0	51.1	9.1	2.3	2.9	0.5
	6천만원 이하	118.0	153.1	35.0	33.6	43.2	9.6	2.2	2.8	0.6
	7천만원 이하	125.0	164.0	39.1	26.3	34.5	8.2	2.0	2.6	0.6
	8천만원 이하	135.1	177.8	42.7	21.0	27.6	6.6	1.8	2.4	0.6
	9천만원 이하	139.1	184.8	45.7	16.4	21.7	5.3	1.6	2.2	0.5
	1억원 이하	141.2	187.1	46.0	13.0	17.2	4.2	1.5	2.0	0.5
	1억원 초과	145.1	193.0	47.9	8.1	10.8	2.7	1.1	1.5	0.4
청년 외	청년 외 전체	45.7	51.9	6.2	24.3	25.9	1.6	1.2	1.3	0.1
	1천만원 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2천만원 이하	3.9	3.9	0.0	8.1	8.1	0.0	0.2	0.2	0.0
	3천만원 이하	20.6	20.6	0.0	23.5	23.5	0.0	0.8	0.8	0.0
	4천만원 이하	57.8	59.2	1.4	33.4	33.9	0.5	1.6	1.7	0.0
	5천만원 이하	97.2	114.8	17.5	37.1	42.9	5.8	2.2	2.6	0.4
	6천만원 이하	112.8	145.0	32.2	29.5	37.7	8.2	2.1	2.7	0.6
	7천만원 이하	119.2	154.2	35.0	23.3	30.0	6.7	1.9	2.4	0.5
	8천만원 이하	127.3	165.2	38.0	18.6	24.0	5.4	1.7	2.2	0.5
	9천만원 이하	135.0	177.6	42.6	14.5	19.0	4.5	1.6	2.1	0.5
	1억원 이하	133.6	175.6	42.0	11.8	15.6	3.7	1.4	1.9	0.4
1억원 초과	141.0	186.7	45.7	7.6	10.1	2.5	1.1	1.5	0.4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
2.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표본자료

#### 다. 세액감면 기간

□ 동 제도의 세액감면 기간은 청년은 5년, 그 외 집단은 3년임

- 2017년까지는 모든 집단의 세액감면 기간이 3년으로 동일하였는데, 2018년부터 청년에 한해 세액감면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음

- 따라서 현행 제도는 세액감면 기간에서도 청년을 우대하는데, 세액감면율에서 청년을 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이 동 제도의 주된 정책대상이고 기회 비용 측면 또한 청년을 우대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 세액감면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액감면 기간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액감면 기간이 짧을 경우 동 제도를 통한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음
    - 취업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임금 경로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이 짧다면 그만큼 장기간의 임금 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동 제도가 청년 등의 취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수 있음
  - 반면 세액감면 기간이 길수록 사중손실이 커질 수 있음
    - 동 제도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 사람들 중 동 제도가 없더라도 중소기업에 근무하였을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하여 동 조세특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조세지출이 증가함
- 자료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고려한 적정 세액감면 기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만한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최소한 3년 이상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표 III-14>는 중소기업 근무 기간에 따라 그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비중을 보여줌
    - 예를 들어, <표 III-14>에서 중소기업(299인 이하 사업체)에서 2년간 근무한 1,036명(전체 기준) 중 그다음 연도에도 299인 이하 사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의 비중이 62.36%라는 의미임
    - <표 III-14>는 2013~2017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청년의 분류는 당시 연령 기준이 15~29세였던 점과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인 2년을 추가로 고려하였음
  - 이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300인 이상 기업 등으로 이직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취업 후 최소 3년간은 세제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 취업자가 계속해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에서 3년간 근무하면 그 이후에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70%보다 높아지며, 청년의 경우에는 이 비중이 75%를 넘어감

<표 III-14> 중소기업 근무 기간에 따른 직장 이동 경로(2013~2017년 취업자)

(단위: 명, %)

구분		중소기업 근무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전체	관측치	2,298	1,036	618	418	257	154
	299인 이하	48.04	62.36	70.06	73.68	78.21	81.17
	300인 이상	30.68	21.33	18.61	14.11	12.84	14.94
	기타취업	9.01	6.66	4.21	3.35	5.45	0.65
	미취업	12.27	9.65	7.12	8.85	3.50	3.25
청년 남성: 31세 이하 여성: 29세 이하	관측치	506	229	138	96	56	35
	299인 이하	50.59	63.76	75.36	71.88	83.93	82.86
	300인 이상	27.67	17.03	15.94	14.58	8.93	14.29
	기타취업	4.74	4.37	2.90	1.04	1.79	2.86
	미취업	17.00	14.85	5.80	12.50	5.36	0.00
청년 외 남성: 32세 이상 여성: 30세 이상	관측치	1,792	807	480	322	201	119
	299인 이하	47.32	61.96	68.54	74.22	76.62	80.67
	300인 이상	31.53	22.55	19.38	13.98	13.93	15.13
	기타취업	10.21	7.31	4.58	4.04	6.47	0.00
	미취업	10.94	8.18	7.50	7.76	2.99	4.20
남성: 32~54세 여성: 30~54세	관측치	1,285	582	345	230	144	84
	299인 이하	48.02	62.54	68.41	73.04	77.78	78.57
	300인 이상	33.00	22.34	20.58	16.09	14.58	17.86
	기타취업	9.88	8.08	4.64	4.35	5.56	0.00
	미취업	9.11	7.04	6.38	6.52	2.08	3.57
55세 이상	관측치	507	225	135	92	57	35
	299인 이하	45.56	60.44	68.89	77.17	73.68	85.71
	300인 이상	27.81	23.11	16.30	8.70	12.28	8.57
	기타취업	11.05	5.33	4.44	3.26	8.77	0.00
	미취업	15.58	11.11	10.37	10.87	5.26	5.71
60세 이상	관측치	310	134	85	55	30	16
	299인 이하	44.19	64.18	65.88	72.73	60.00	87.50
	300인 이상	25.81	20.90	20.00	10.91	20.00	12.50
	기타취업	11.94	5.22	3.53	5.45	13.33	0.00
	미취업	18.06	9.70	10.59	10.91	6.67	0.00

주: 연령은 중소기업 취업 당시 연령 기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4. 다른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 동 제도는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 중 노동공급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조세특례로 다른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고용지원 정책은 조세지출사업(조세특례)과 재정지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노동공급자(취업자)와 노동수요자(기업)를 지원하는 정책으로도 구분할 수 있음
  - 노동공급자를 지원하는 정책에는 소득지원,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
  
- 본 조세특례와 유사하게 다음의 조세특례는 노동공급자의 소득을 보조하는데, 그 목적과 정책대상,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어 동 제도와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이하 ‘근로장려세제’)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이하 ‘성과보상금소득세감면’)
  - 이하에서는 이 두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봄
  
- ‘근로장려세제’는 동 제도와 유사하게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지원하지 못하는 최저소득층을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 세액감면 제도의 특성상 소득세 납부액이 적은 저소득층의 경우 동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액이 매우 적어 해당 소득계층에 대한 동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 청년 기준 2021년 귀속소득에 대한 동 제도 신청자의 순세액감면액은 총급여액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0원, 1천만~2천만원 구간에서 평균 2만 2천원, 2천만~3천만원 구간에서 평균 19만 9천원임
  -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 최대 165만원(총급여액 등이 400만~900만원인 경우)을 지원하는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이기 때문에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로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계층을 비교적 실효성 있게 지원함

- ‘근로장려세제’는 맞벌이 가구에도 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최대 330만원(총급여액 등이 800만~1,700만원인 경우)을 지원하여 동 제도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지 못하는 최저소득 계층을 주로 지원함
- 또한 동 제도는 취업 후 3~5년간만 지원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다는 점도 동 제도와 차이점임

□ ‘성과보상금소득세감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 청년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동 제도와는 정책목표에 차이가 있음

- 동 제도는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 후 처음 5년간만 세제혜택을 지원함
- 반면, ‘성과보상금소득세감면’ 제도는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였을 때 지원하는 제도임
  - ‘성과보상금소득세감면’ 제도는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하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또한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는 고용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에 중점을 둔 제도로 취업 대상 중소기업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됨
- 반면, ‘성과보상금소득세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우수인력 확보에 중점을 둔 제도로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취업하였을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어 취업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비교적 협소하게 정의됨

□ 다음과 같은 노동수요자를 지원하는 조세특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고용을 촉진 또는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동 조세특례와 같이 노동공급자를 지원하는 제도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 ‘통합고용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고용지원을 위한 다른 조세특례는 이미 일몰이 도래하여 경과규정으로만 남아 있거나 향후 일몰이 도래할 경우 폐지될 예정인 제도임

- 재정지출사업에도 고용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지출사업의 특성상 지원대상이 협소하게 정의되거나 조세지출사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단계를 지원하여 동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가령,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동 제도와 같이 청년의 소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이나 지원대상이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음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 납입 시 기업과 정부가 총 8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임
    - 다만, 청년의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기업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업에 속한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을 경우에 지원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전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하고 취업했을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일시금으로 지원함
    - 조세특례는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취업 이전 단계를 지원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 그 외 고용노동부(2023)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용노동 정책들을 검토해 보았으나 동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문제를 발견하지 못함
    - 고용노동부(2023)에는 총 170개의 고용노동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IV.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 IV.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 1. 분석 개요

- 본 장에서는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의 수혜집단인 청년의 연령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제도 변화를 이용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함
  - 2015~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고 이벤트스터디(event-study) 및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을 활용하여 본 조세특례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를 추정함
    - 수혜대상에 갑자기 포함된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 확대 전후의 중소기업 취업을 측정하면 되지만, 동일 시기에 정책 외에 다른 경제변수도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혜대상 확대로 인해 특별히 변화되는 점이 없는 대상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실증 분석함
  
- 본 연구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가능한 한 유사하도록 구성하고자 동 제도의 새로운 수혜집단인 30~34세 중 30~31세를 제외한 32~34세를 처치집단으로 설정함
  - 한편 연령이 높아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계층일수록 동 제도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할 유인이 높음
    - 달리 말하면, 처치집단을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의 청년으로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연령을 더 폭넓게 설정하더라도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통제집단의 경우 권성준·강성훈·조희평(2021)과 같이 25~29세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해당 연령대는 동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통제집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동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35~37세로 설정함
  - 2018년에는 동 제도 외에 고용을 지원하는 다른 조세특례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 변화 중 동 제도와 같이 15~29세 집단보다 30세 이상 집단을

고용할 경우 세제혜택이 더 많이 증가한 제도 변화가 존재함

- 대표적으로 2018년에는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면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음
  - ‘청년고용증대세제’가 ‘고용증대세제’로 확대되면서 기업이 15~29세 집단을 고용할 경우의 세제혜택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30세 이상 집단을 고용할 경우의 세제혜택은 크게 증가하였음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업 투자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액의 한도를 신규 채용 또는 고용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는데, 2018년 폐지 전 제도는 30세 이상 집단을 고용하였을 경우보다 15~29세 집단을 고용하였을 경우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었음
    - 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폐지로 기업들이 15~29세 청년을 고용하였을 경우의 세제혜택 감소폭이 30세 이상 집단을 고용하였을 경우보다 컸음
- 또한 15~29세 청년의 경우 분석 기간 중 처치 시점 이전인 2017년에도 세제혜택에 큰 변화가 있었던 반면 30세 이상 집단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29세 이하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추세가 제도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물론 2018년 이후에도 35세 이상 집단의 세제혜택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34세 이하 집단의 세제혜택에는 변화가 있어 35세 이상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처치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한 추세가 제도적으로 완벽히 통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다만, 처치 시점 이후의 세제혜택 변화폭이 2017년보다 작았기 때문에 통제집단을 29세 이하 집단보다 35세 이상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제도 변화로 인한 추세의 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이유로 25~29세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면 동 제도의 효과와 다른 조세특례 제도 변화의 효과가 동시에 추정될 우려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분석 기간에 대한 통제집단의 추세가 제도적으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동 제도의 효과를 식별하기 어려움

□ 통제집단을 35세 이상 집단으로 설정하면 다른 고용지원 조세특례의 제도 변화로

인한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고용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에 한정하면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를 제외한 다른 조세특례는 청년을 15~29세로 규정하고 있음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동 제도와 같이 청년을 15~34세로 정의하나, 2023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기간에는 영향이 없음
- 따라서 다른 고용지원 조세특례의 경우 제도가 변하더라도 30세 이상 집단에 적용되는 변화는 항상 동일함
- 유일하게 동 제도만 2018년 6월부터 30~34세를 청년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다른 고용지원 조세특례의 제도 변화를 통제하고 동 제도의 효과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35세 이상 집단 중에서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IV-1>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 변화  
(단위: 만원)

고용증가 인원 구분	기업 구분	청년고용증대세제		고용증대세제		
		2015~2016	2017	2018	2019~	2021~2022 <sup>1), 2)</sup>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밖 중소기업	500	1,000	1,100	1,200	1,300
	수도권 내 중소기업			1,000	1,100	-
	중견기업		700	800	900	
	그 외 기업	200	300	300	400	500
그 외 상시근로자	수도권 밖 중소기업	X		770	770	-
	수도권 내 중소기업			700	700	-
	중견기업			450	450	-
	그 외 기업			X		

주: 1)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2) 수도권 밖 청년 등 고용증가 인원엔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그 외 고용증가 인원엔 대해서는 기존 세액공제액(‘2019~’ 열) 적용

1. 청년 등은 청년(15~29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자료: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조세특례제한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4. 6.)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추가공제액 한도 변화

(단위: 만원)

고용증가 인원 구분	기업 구분	추가공제액 한도 기준		
		2012~2016	2017	2018~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중소기업	2,000	2,500	폐지
	그 외 기업		2,000	
청년 등 상시근로자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중소기업	1,500	2,000	
	그 외 기업		1,500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중소기업	1,000	1,500	
	그 외 기업		1,000	

- 주: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투자 시 추가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에 대한 한도를 채용 및 고용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설정  
 2. 청년 등은 청년(15~29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3.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직전 과세 연도 대비 해당 과세 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과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신규 채용 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계산

자료: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조세특례제한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4. 6.)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32~34세의 청년이 본 조세특례의 정책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시점을 2018년 6월로 설정하여 분석함
  - 2018년 본 조세특례의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시점은 2018년 5월 29일임
    - 개정 사항을 2018년 전체에 소급 적용함
  - 하지만 청년 연령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은 2018년 8월 28일임
  - 다만, 정부는 2018년 5월 17일 동 법의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점을 보도자료<sup>6)</sup>를 통해 알리면서, 청년의 연령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는 점도 함께 공표하였기 때문에, 제도 변화 시점을 2018년 6월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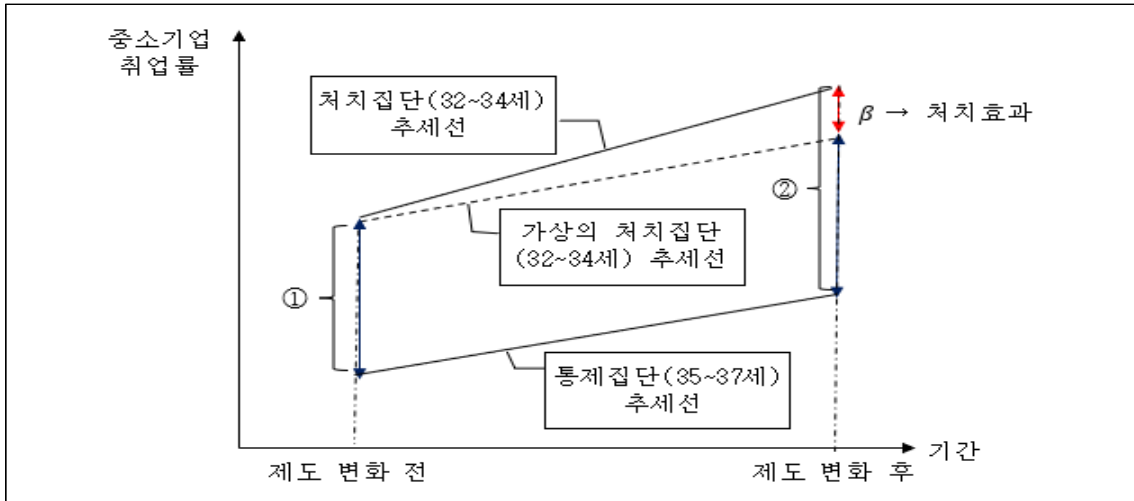
6) 기획재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 2018. 5. 17.

## 2.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 가. 분석 방법

- 2018년 6월부터(정부 공표 시점) 동 제도의 수혜집단인 청년의 연령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제도 변화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에 미친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으로 정책효과를 평가함
  - 단순히 제도 변화의 전후 추세를 비교하거나 제도 변화 이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본 조세특례의 확대 전과 후의 32~34세 중소기업 취업률을 단순 비교할 경우, 경제 상황과 같은 정책 외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통제할 수 없음
    - 본 조세특례의 확대 이후 32~34세 중소기업 취업률과 35~37세 중소기업 취업률을 비교할 경우([그림 IV-1]의 ②), 수혜대상 확대 이전에 존재하던 두 집단 사이의 중소기업 취업률 차이([그림 IV-1]의 ①)를 고려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알려진 이중차분법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첫째, (식 IV-1)과 같이 제도 변화 이후 두 집단의 중소기업 취업률 차이에서 제도 변화 이전에 존재하던 두 집단의 중소기업 취업률 차이를 차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음
      - $[E(y_{i2}|d_{i2}=1)-E(y_{i2}|d_{i2}=0)]-[E(y_{i1}|d_{i2}=1)-E(y_{i1}|d_{i2}=0)]$  (식 IV-1)
    - 둘째, (식 IV-2)와 같이 처치집단의 제도 변화 전과 후의 중소기업 취업률 차이에서 통제집단의 제도 변화 전과 후의 중소기업 취업률 차이를 차분하여 구할 수 있음
      - $[E(y_{i2}|d_{i2}=1)-E(y_{i1}|d_{i2}=1)]-[E(y_{i2}|d_{i2}=0)-E(y_{i1}|d_{i2}=0)]$  (식 IV-2)
  - 다만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할 때에는 [그림 IV-1]과 같이 공통추세 가정을 만족할 필요가 있음
    - 이중차분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인 공통추세 가정은 처치가 부재했다면 처치집단의 추세(가상의 처치집단 추세선)는 통제집단의 중소기업 취업률과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다소 강한 가정임

[그림 IV-1] 이중차분법의 처치효과 추정 방법



자료: 저자 작성

-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과 더불어, 정책효과의 시간적 변화를 각각 추정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스터디도 추가로 수행함
  - 이벤트스터디는 이중차분법과 유사한 방법론이나 제도 변화 전과 후의 시간적 변화 효과를 각각 추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함
  - 또한 제도 변화 이전의 정책효과 추정치를 활용하여 공통추세 가정을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

□ 이중차분법 및 이벤트스터디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음

○ 이중차분법 회귀식

$$- y_{it} = \alpha + \beta(Treat_{it} \times Post_{it}) \quad (\text{식 IV-3})$$

$$+ \sum_{n=2}^6 \gamma_n Age_{it} + \sum_{m=2}^{96} \gamma_m Time_t + \sum_{g=2}^4 \gamma_g Edu_{it} + \epsilon_{it}$$

$$- y_{it} = \alpha + \beta(Treat_{it} \times Post_{it}) + \sum_{q=2}^6 \gamma_q (Age_{it} \times t) \quad (\text{식 IV-4})$$

$$+ \sum_{n=2}^6 \gamma_n Age_{it} + \sum_{m=2}^{96} \gamma_m Time_t + \sum_{g=2}^4 \gamma_g Edu_{it} + \epsilon_{it}$$

○ 이벤트스터디 회귀식

$$- y_{it} = \alpha + \sum_{d=-14, d \neq -1}^{17} \beta_d (Treat_{it} \times \tau_t^d) \quad (\text{식 IV-5})$$

$$+ \sum_{n=2}^6 \gamma_n Age_{it} + \sum_{m=2}^{30} \gamma_m Time_t + \sum_{g=2}^4 \gamma_g Edu_{it} + \epsilon_{it}$$

- 상기 회귀식에서 사용된 변수와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식 IV-3)과 (식 IV-4)에서 처치변수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함
    - $Treat_{it}$ 는 32~34세 청년(처치집단)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 $Post_{it}$ 는 2018년 6월 이후 인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 (식 IV-5)에서 정책효과의 시간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구축한 변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함
    - $\tau_t^d$ 는 제도 변화(2018년 3분기)로부터  $d$ 분기만큼 지났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 본 분석에서는 정책 변화 14분기 전( $d=-14$ )인 2015년 1분기부터 제도 변화 후 17분기( $d=17$ )인 2022년 4분기까지 고려
    -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제도 변화 1분기 전( $d=-1$ )은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d=-1$ 이 베이스라인이 됨
    - 따라서 이벤트스터디 계수( $\beta_d$ )는 제도 변화 1분기 전의 중소기업 취업 대비 제도 변화  $d$ 분기 후의 중소기업 취업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나타냄
  - 모든 회귀식에서 연령별 더미변수와 교육 수준별 더미변수, 시간고정효과를 통제함
    - 이중차분법 회귀식에서 시간고정효과는 연-월 시간더미를 의미하며, 이벤트 스테디 회귀식에서 시간고정효과는 연-반기 시간더미를 나타냄
  - [그림 IV-1]과 같이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시에 가장 중요한 공통추세 가정은 처치가 부재했다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과변수 값이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다소 강한 가정임
    - 본 연구에서 공통추세 가정을 만족하지 않을 소지가 다분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 IV-4)와 같이 연령별 선형추세  $\left(\sum_{q=2}^6 \gamma_q (Age_{it} \times t)\right)$ 를 통제함(Angrist and Pischke, 2015)
    - 연령별 선형추세를 통제하면 각 집단의 중소기업 취업률 추세가 고정된 상태에서 정책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취업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가중치를 사용하고 추정계수의 표준 오차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특성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뒤에서 설명하듯 남성

의 경우 군 복무기간 2년이 보정된 연령이 사용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각각 분석함

□ 종속변수인 중소기업 취업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중소기업 취업 여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일 때 1의 값을 가지고, 중소기업 미취업자일 때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
- (중소기업 취업자)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업종을 제외하고 제10차 한국표준산업대분류에 따라 종사자규모가 300인 미만 혹은 100인 미만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표 IV-3> 참고)
  - 2015년에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개편되면서 현재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종사업체의 매출액 자료가 없으므로 개편되기 이전 종사자규모 기준을 사용함<sup>8)</sup>
- (중소기업 미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대기업 종사자, 동 제도의 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 일용직 근로자
  - (적용 대상이 아닌 업종<sup>9)</sup>)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T.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K. 금융 및 보험업, P. 교육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R업종은 적용 대상 업종이 아니었다가 2020년 2월부터 상당 부분의 세부 업종이 포함되었으나 통일성을 위하여 대상 업종에서 제외함
    - R업종의 종사자를 2020년 2월부터 중소기업 취업자로 분류하면 동 제도의 효과가 아닌 분류 방식에 의한 효과가 추정될 우려가 있음
  - M, Q, S업종의 경우 소분류 및 중분류 기준 특정 업종은 동 제도의 대상 업종이므로 대분류 기준으로는 대상과 비대상이 섞여 있어 중소기업 취업자의 정의가 애매함

7)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기업체(○○은행)가 아닌 사업체(○○은행 세종지점) 기준으로 종사자 규모를 조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률이 과대 추정될 수 있어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5050,20131230\)](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5050,20131230)), 검색일자: 2023. 5. 28.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조세특례제한법%20시행령>, 검색일자: 2023. 4. 6.

- 따라서 해당 업종의 경우 기본 분석에서는 비대상 업종으로 분류하지만 차 후 민감도 분석에서는 대상 업종에 포함한 추가 분석을 수행함

<표 IV-3> 산업별 종사자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분류 기준

코드 <sup>1)</sup>	업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B	광업	1~9인	10~99인 <sup>5)</sup>	100~299인
C	제조업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1~4인	5~99인 <sup>5)</sup>	100~299인
M <sup>2)</sup>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Q <sup>3)</su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1~4인	5~9인	10~299인 <sup>6)</sup>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4인	5~9인	10~99인 <sup>5)</sup>
S <sup>4)</su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L	부동산업			

- 주: 1)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2) 소분류 기준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제외  
 3) 중분류 기준 보건업 제외  
 4) 중분류 기준 협회 및 단체와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외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인 미만에 해당하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한계로 인해 100인 미만으로 정의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인 미만에 해당하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한계로 인해 300인 미만으로 정의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조세특례제한법%20시행령>, 검색일자: 2023. 4. 6.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5050,20131230\)](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5050,20131230)), 검색일자: 2023. 5. 28.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31532,20210309\)](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31532,20210309)), 검색일자: 2023. 5. 28.

## 나. 분석 자료

- 본 조세특례의 수혜대상 확대가 32~34세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함
  - (분석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타 조사와 비교하여 표본의 규모 및 대표성에서 우의를 가지고 있는 자료임
  - (분석기간) 2015~2022년(월별 자료)
  - (자료특성) 반복 횡단면 자료
    - 반복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법을 시행할 경우 (식 IV-2)에서  $E(y_{i2}|d_{i2} = 1)$ 과  $E(y_{i1}|d_{i2} = 1)$ 은 서로 같은 개체들을 대상으로 구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개체들을 대상으로 구할 수도 있음( $d_{i2} = 0$ 도 마찬가지로)
    - 만약 고정효과 패널 모형과 같이 서로 같은 개체들을 대상으로 구한다면  $E(y_{i2} - y_{i1}|d_{i2} = 1)$ 과 같이 통째로 차이를 구하게 됨
  - (분석표본) 군 복무기간을 보정한 연령 기준 32~37세에 해당하는 대상
    -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군 복무기간을 보정한 연령을 사용하므로 남성의 경우 만 연령에서 2세를 차감한 후 표본을 구축함
    - 연령을 기준으로 표본을 한정하였으므로 분석표본에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됨
    - 선행연구와의 비교 차원에서 분석표본을 25~34세로 한정하여 처치집단을 30~34세, 통제집단을 25~29세로 설정하고 추가 분석함
    - 아울러 처치집단 및 통제집단의 연령 기준을 좁혀 처치집단을 33~34세, 통제집단을 35~36세로 설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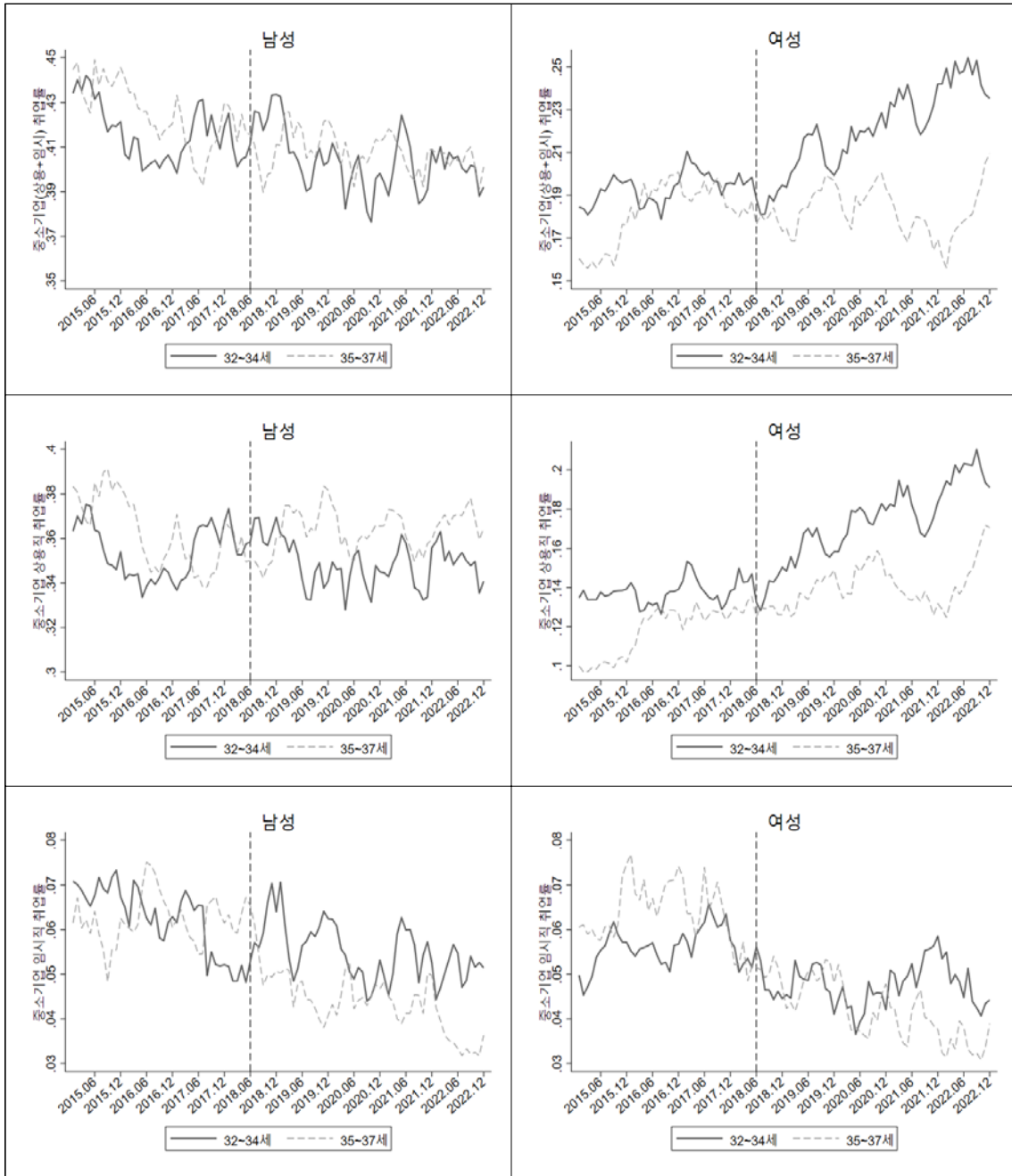
## 3. 분석 결과

### 가. 중소기업 취업률 추이

- 실증분석에 앞서 [그림 IV-2]와 같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중소기업 취업률 추이를 살펴봄

- 좌측은 남성, 우측은 여성, 상단은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률, 중단은 중소기업 상용직 취업률, 하단은 중소기업 임시직 취업률을 나타냄
- 남성의 경우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률은 32~34세와 35~37세 두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본 조세특례의 수혜대상이 확대된 시점을 기점으로 살펴보면, 새롭게 수혜대상이 된 32~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취업률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반면 동 제도의 수혜대상인 아닌 35~37세 남성의 중소기업 취업률은 급격히 감소함
  - 본 조세특례가 32~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률 감소 추세를 늦추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 이와 달리 여성의 경우 32~34세와 35~37세 두 집단의 추세가 유사하지 않으며, 처치집단의 중소기업 취업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제도 변화 직후 두 집단 모두 중소기업 취업률의 하락이 관찰되지만, 32~34세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률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함
  - 반면, 본 조세특례의 수혜대상이 아닌 35~37세의 중소기업 취업률은 하락함
    - 이는 본 조세특례의 효과일 수 있지만, 이 시기 여성 일자리 관련 다른 정책에서 비롯된 효과일 수도 있음
- 중소기업 취업률을 상용직 취업률과 임시직 취업률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종사상 지위별 중소기업 취업률 추세가 다른 것으로 관찰됨
  - 남성의 경우 제도 변화 직후 새롭게 수혜대상에 포함된 32~34세의 중소기업 상용직 취업률과 임시직 취업률이 급상승한 반면, 수혜대상자가 아닌 35~37세는 중소기업 취업률이 급락함
  - 여성의 중소기업 상용직 취업률은 두 집단 모두 상승하는 추세인 것으로 관찰되며, 이와 달리 중소기업 임시직 취업률은 하락하고 있음

[그림 IV-2] 중소기업 취업률 추이



주: 1. 중소기업 취업률은 (각 경우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수/전체 인구수)로 정의  
 2. 취업률 계산 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가중치 사용  
 3. 중소기업 취업자는 300인 이하 사업체(일부 업종의 경우 100인 이하)에 취업한 상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로 정의  
 4.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임시직은 1년 미만인 경우를 의미  
 5. 세로 점선은 본 조세특례의 확대 개편 시기인 2018년 6월을 의미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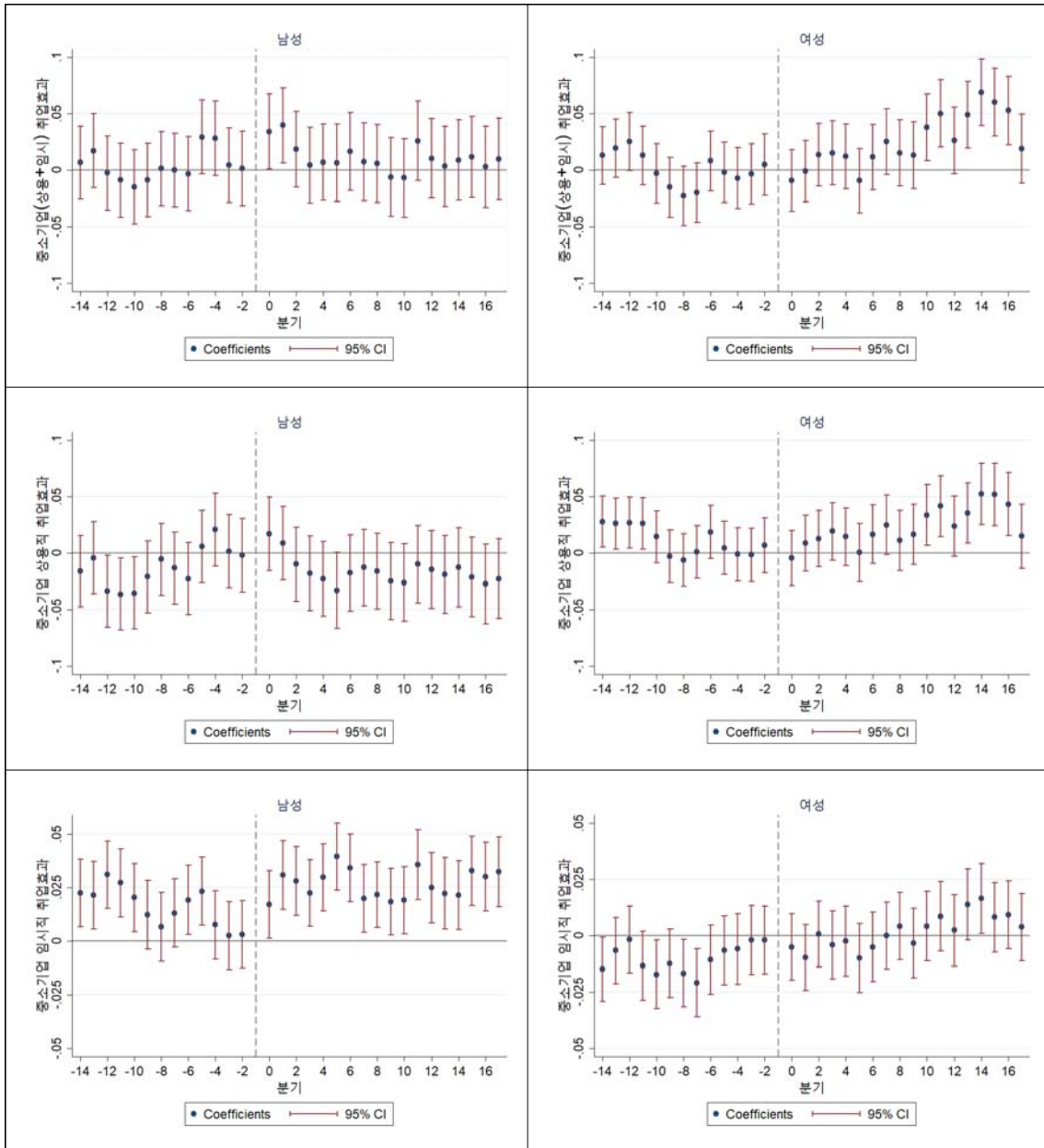
## 나. 이벤트스터디 분석 결과

- 이벤트스터디 회귀식(식 IV-5)을 이용하여 제도 변화 이전의 추정치를 통해 공통 추세 가정이 만족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제도 변화 이후의 추정치는 정책효과라고 할 수 있으나, 이전의 추정치는 단순히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과변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임
  -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이벤트스터디 더미 중  $d=-1$ 은 제외하였으므로 각각의 추정계수는 정책 변화 1분기 전 대비 특정 시점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beta_{-2}$ 는 제도 변화 1분기 전 대비 제도 변화 2분기 전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중소기업 취업률 차이를 의미함
    - 반대로  $\beta_2$ 는 제도 변화 1분기 전 대비 제도 변화 2분기 이후 시점에서의 중소기업 취업 효과를 의미함
  - 제도 변화 이전의 추정치가 유의하다면 제도 변화 1분기 전 대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중소기업 취업률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통추세 가정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그림 IV-3]은 동 제도의 확대가 32~34세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벤트스터디 분석 결과를 보여줌
  - 좌측은 남성, 우측은 여성, 상단은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 효과, 중단은 중소기업 상용직 취업 효과, 하단은 중소기업 임시직 취업 효과의 분석 결과를 나타냄
  - 그림에서 점은 이벤트스터디 분석의 추정계수( $\beta_d$ )이며, 실선은 각 추정계수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 신뢰구간이 0을 벗어나는 경우 추정계수가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먼저 제도 변화 이전( $d < 0$ )을 살펴보면 남성, 여성 모두 일부 시점에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남성, 여성 모두 중소기업 상용직 취업률과 임시직 취업률을 구분하여 보면 분석기간 초반에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이는 제도 변화 이전에 두 집단 간 공통추세 가정이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이중차분법 분석에서 연령별 선형추세를 통제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남성의 결과를 보면, 2018년 제도 변화 이후 초기에 32~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률은 유의하게 증가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이는 제도 변화를 기점으로 32~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임시직 취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제도 변화 이후( $d \geq 0$ ) 모든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이벤트스터디 계수가 추정됨
    - 즉 32~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취업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대부분 임시직 취업률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에 32~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상용직 취업에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취업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상용직 일자리)로 유인하는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시점별 이벤트스터디 추정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제도 변화 전과 후의 이벤트스터디 계수들을 종합하여 추정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중차분법 계수가 도출됨
- 여성의 경우 제도 변화 이후 초기에는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 효과가 발견되지 않으나 2021년부터( $d \geq 10$ ) 중소기업 취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양(+의 취업 효과가 제도 변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뒤에 발생하였기에 이것이 본 제도의 효과인지 다른 여성 관련 일자리 정책으로 인한 효과인지는 불명확함
  - 이러한 양상은 32~34세 여성의 중소기업 상용직 취업에도 나타나는데, 이에 반해 제도 변화 직후에 30~34세 여성의 중소기업 임시직 취업이 통제집단 여성과 비교하여 증가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움
    - 이는 제도 변화 직후 남성의 중소기업 임시직 취업률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와 대비됨

- 분석 기간 후반에 이벤트스터디 추정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제도 변화 전과 후의 이벤트스터디 계수들을 종합하여 추정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이중차분법 계수가 도출됨

[그림 IV-3] 이벤트스터디 분석 결과: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주: 1. 세로축은 이벤트스터디 추정계수, 가로축은 정책대상 연령 확대(2018년 3분기) 이전 또는 이후 몇 분기가 지났는지를 의미하며, -1은 2018년 2분기이자 기준 시점  
 2. 종속변수는 중소기업 취업 여부  
 3. 연령고정효과, 연·반기고정효과, 교육수준 고정효과 통제  
 4. 강건표준오차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중치 사용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다.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 <표 IV-4>는 동 제도의 확대가 32~34세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률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임
  - 제도 변화로 인해 32~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취업률이 0.8%p 상승하고,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률이 2.3%p 상승함
    - 이는 제도 변화 전 평균 중소기업 취업률이 남성과 여성 각각 42%, 19%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효과로 판단됨
  
- 다만, 이벤트스터디 분석 결과에서 관찰되었다시피 제도 변화 이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통추세 가정이 만족하지 않으므로 연령별 선형추세를 통제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IV-4>의 (2)열과 (4)열) 여성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도출됨
  - 분석 기간 동안 32~34세와 35~37세의 중소기업 취업률 추세 자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별 선형추세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연령별 선형추세를 통제하면 32~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취업률은 1.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연령별 선형추세를 통제하면 추정계수의 크기가 현저히 작아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됨
    - 이중차분법 추정계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처럼 연령별 선형추세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동 제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추정치에 편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후 종사자 규모 및 종사상 지위, 업종별 분석 결과에서는 연령별 선형추세를 통제한 결과를 위주로 살펴봄

<표 IV-4>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 유도 효과

구분	남성		여성	
	(1)	(2)	(3)	(4)
32~34세 × 2018년 6월 이후	0.008* (0.004)	0.016* (0.009)	0.023*** (0.004)	-0.005 (0.007)
연령 고정효과	Y	Y	Y	Y
연-월 고정효과	Y	Y	Y	Y

<표 IV-4>의 계속

구분	남성		여성	
	(1)	(2)	(3)	(4)
교육수준 고정효과	Y	Y	Y	Y
연령별 선형추세		Y		Y
관측치수	246,040	246,040	242,134	242,134
제도 변화 이전 평균	0.42	0.42	0.19	0.19

주: 1. 종속변수는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 여부  
 2. 처치집단은 32~34세이며 통제집단은 35~37세  
 3. 강건표준오차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중치 사용  
 4. \*\*\*은 1%, \*\*은 5%, \*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본 조세특례가 미치는 취업 유도 효과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를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봄(<표 IV-5>의 (1)~(3)열)
  - <표 IV-3>와 같이 산업별 종사자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식 IV-4)의 종속변수인 중소기업 취업 여부를 종사자 규모별 중소기업 취업 여부로 정의함
    - 예를 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를 추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상용직 및 임시직에 취업했을 경우 종속변수는 1의 값을 취함
    - 반대로 미취업 상태 혹은 다른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거나 소상공인 일용직일 경우 종속변수는 0의 값을 가짐
  
- 종사자 규모별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현저히 작은 소상공인으로의 취업 증가가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남성의 경우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 효과는 1.8%p로 도출되는데, 그중 소상공인 취업률이 2.8%p로 나타났고 중기업 취업률은 오히려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 변화 전 취업률이 9% 수준으로 소기업과 중기업에 비하여 취업률이 낮은 것을 고려하면 본 조세특례가 취업 도모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함
    - 반면에 제도 변화 이후 35~37세에 비하여 중기업으로의 취업 증진은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본 조세특례의 취업 유도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여성의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률 증가 효과는 발견되지 않으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률은 1.2%p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과 마찬가지로 본 조세특례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도모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본 조세특례가 32~34세 중소기업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상용직 취업과 임시직 취업으로 나누어 분석함(<표 IV-5>의 (4)~(5)열)

- 제도 변화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률(상용직 및 임시직)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특정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률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분석을 수행함
  - (식 IV-4)의 종속변수로 중소기업 상용직 취업 여부와 중소기업 임시직 취업 여부를 사용함

□ 본 제도 확대가 남성의 중소기업 임시직 취업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확인된 32~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취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임시직 취업 증가(1.7%p)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32~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상용직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본 제도의 확대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으나,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로 유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남성과 달리, <표 IV-5>의 하단을 보면 32~34세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률 증가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남성의 경우 제도 확대가 중소기업 임시직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은 음(-)의 영향이 도출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5>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사자 규모 및 종사상 지위별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구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상용직	임시직	
	(1)	(2)	(3)	(4)	(5)	
남성	32~34세 × 2018년 6월 이후	0.028*** (0.005)	0.001 (0.007)	-0.014** (0.006)	-0.001 (0.008)	0.017*** (0.004)
	연령 고정효과	Y	Y	Y	Y	Y
	연-월 고정효과	Y	Y	Y	Y	Y
	교육수준 고정효과	Y	Y	Y	Y	Y
	연령별 선형추세	Y	Y	Y	Y	Y
	관측치수	246,040	246,040	246,040	246,040	246,040
	제도 변화 이전 평균	0.09	0.21	0.12	0.36	0.06
여성	32~34세 × 2018년 6월 이후	0.004 (0.004)	0.002 (0.005)	-0.012*** (0.004)	-0.002 (0.006)	-0.004 (0.004)
	연령 고정효과	Y	Y	Y	Y	Y
	연-월 고정효과	Y	Y	Y	Y	Y
	교육수준 고정효과	Y	Y	Y	Y	Y
	연령별 선형추세	Y	Y	Y	Y	Y
	관측치수	242,134	242,134	242,134	242,134	242,134
	제도 변화 이전 평균	0.06	0.08	0.05	0.12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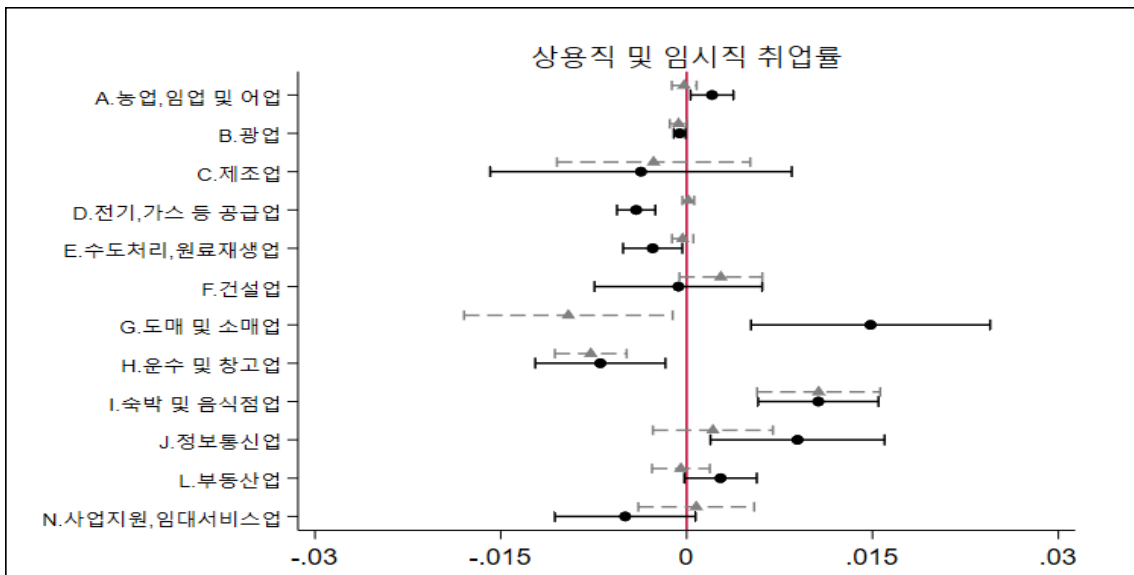
주: 1. 종속변수는 종사자규모 및 종사상지위별 중소기업 취업 여부  
 2. 처치집단은 32~34세이며 통제집단은 35~37세  
 3. 강건표준오차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중치 사용  
 4. \*\*\*은 1%, \*\*은 5%, \*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마지막으로 본 제도의 확대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를 산업별로 살펴봄 ([그림 IV-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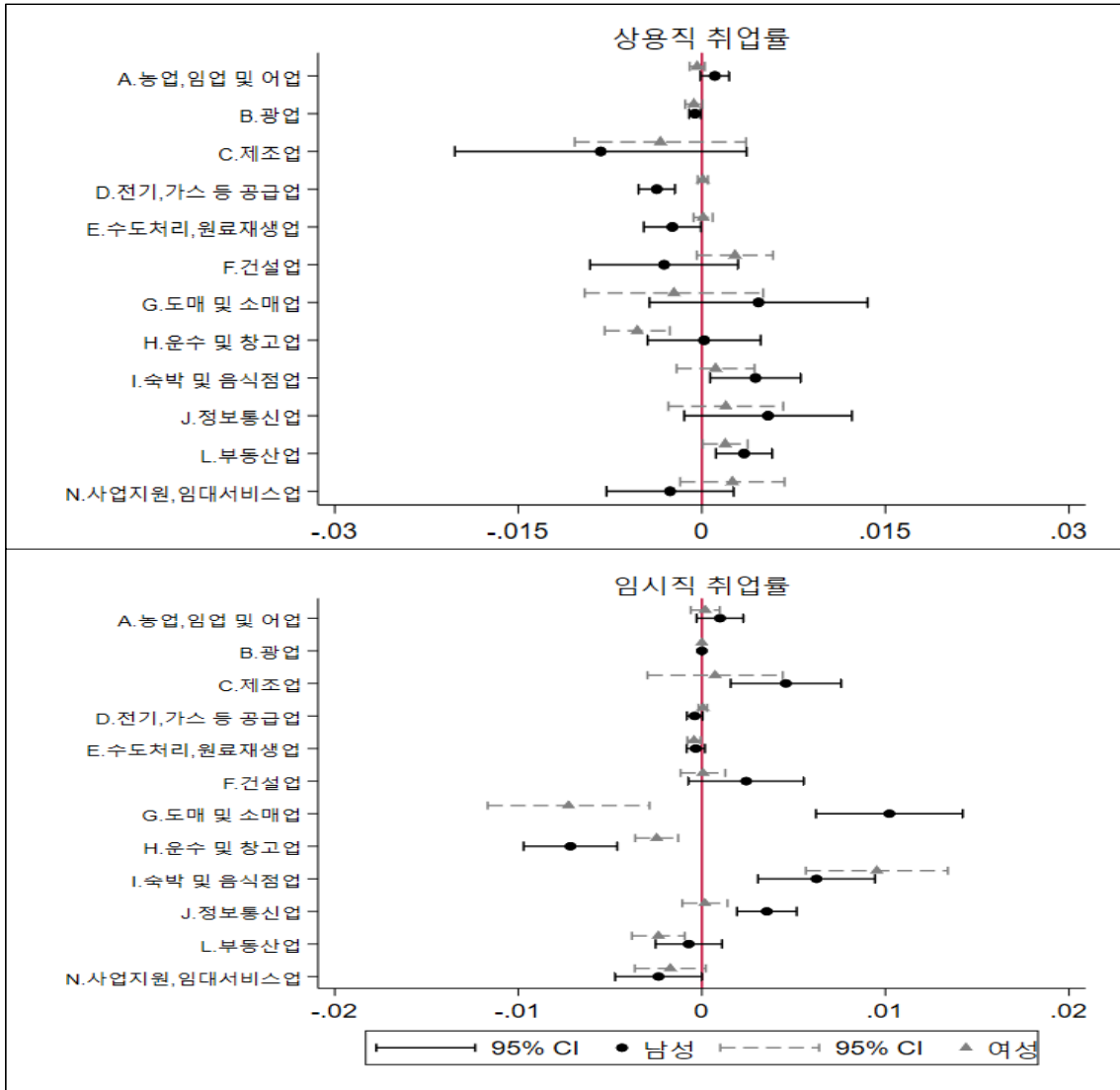
- 이를 위해 (식 IV-4)의 종속변수인 중소기업 취업 여부를 산업대분류 및 종사상 지위별 중소기업 취업 여부로 정의함
  - 예를 들어, A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를 추정하는 경우 A산업에 속한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에 취업했을 경우 종속변수는 1의 값을 취함
  - 반대로 미취업 상태 혹은 대기업에 종사하거나 A산업의 중소기업 일용직, A산업을 제외한 타 산업에 취업했을 경우 종속변수는 0의 값을 가짐

- 본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산업은 산업별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를 추정할 수 없음
- 남성은 주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가 발생했지만, 여성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만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가 관찰됨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남성의 업종 비중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종사 중이지만 본 제도의 확대에 의한 제조업 유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제조업에 미치는 중소기업 임시직 취업 유도 효과를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32~34세 남성의 경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임시직에서 유의미한 취업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본 제도가 청년 남성에게 안정적인 장기적인 일자리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의미함
  -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숙박 및 음식점 임시직에서만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고용효과가 나타남

[그림 IV-4]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산업별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그림 IV-4]의 계속



주: 1. 종속변수는 산업대분류별 중소기업 취업 여부  
 2. 처치집단은 32~34세이며 통제집단은 35~37세  
 3. 강건표준오차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중치 사용  
 4. 실선은 남성을 의미하고 점선은 여성을 의미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라. 민감도 분석 결과

- (표본 축소) 종속변수인 중소기업 취업자 정의를 앞의 기본 분석과 동일하게 설정하되, 처치집단 및 통제집단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 분석표본은 군 복무기간을 보정한 연령 기준 33~36세에 해당하는 대상
  - 처치집단은 33~34세, 통제집단은 35~36세

- 중소기업 취업자 제외 업종은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T.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K. 금융 및 보험업, P. 교육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더 유사하게 구성할 경우, 33~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 유도 효과는 사라지지만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률이 2.2%p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분석 결과와 상당히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처치집단과 통제 집단의 범위 상정에 따라 결과가 민감하게 변할 수 있음
- (대상 업종 확대) 산업대분류 기준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이 혼재된 경우 동 제도의 적용 대상 업종으로 정의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 분석표본은 군 복무기간을 보정한 연령 기준 32~37세에 해당하는 대상
    - 처치집단은 32~34세, 통제집단은 35~37세
  - 중소기업 취업자 제외 업종은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T.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K. 금융 및 보험업, P. 교육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기존의 분석에서는 32~34세 남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가 존재하는 반면, 적용 대상 업종을 확대한 중소기업 취업률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됨
    - 남성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 여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민감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여성의 경우 기존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선행연구와의 비교) 권성준·강성훈·조희평(2021)의 종속변수와 분석표본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분석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 분석표본은 군 복무기간을 보정한 연령 기준 25~34세에 해당하는 대상
    - 처치집단은 30~34세, 통제집단은 25~29세
  - 중소기업 취업자 제외 업종은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T.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설정하여 분석하면 결과 또한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도출되지만, 이 결과를 동 제도의 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해당 분석에서 통제집단은 분석 기간 중 다른 조세특례의 변화에 지속해서 영향을 받았을 소지가 다분함
- 또한 동 제도의 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속변수인 중소기업 취업자에 포함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함

<표 IV-6> 민감도 분석 결과: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 유도 효과

구분	남성		여성		
	(1)	(2)	(3)	(4)	
표본 축소	33~34세 × 2018년 6월 이후 연령 고정효과	0.002 (0.005) Y	0.006 (0.010) Y	0.020*** (0.004) Y	-0.022*** (0.008) Y
	연-월 고정효과	Y	Y	Y	Y
	교육수준 고정효과	Y	Y	Y	Y
	연령별 선형추세		Y		Y
	관측치수	165,328	165,328	162,717	162,717
	제도 변화 이전 평균	0.42	0.42	0.18	0.18
	대상 업종 확대	32~34세 × 2018년 6월 이후 연령 고정효과	-0.006 (0.004) Y	-0.014 (0.009) Y	0.029*** (0.004) Y
연-월 고정효과		Y	Y	Y	Y
교육수준 고정효과		Y	Y	Y	Y
연령별 선형추세			Y		Y
관측치수		246,040	246,040	242,134	242,134
제도 변화 이전 평균		0.49	0.49	0.29	0.29
선행 연구 비교		30~34세 × 2018년 6월 이후 연령 고정효과	0.022*** (0.004) Y	0.020*** (0.007) Y	0.017*** (0.004) Y
	연-월 고정효과	Y	Y	Y	Y
	교육수준 고정효과	Y	Y	Y	Y
	연령별 선형추세		Y		Y
	관측치수	348,172	348,172	338,528	338,528
	제도 변화 이전 평균	0.57	0.57	0.47	0.47

- 주: 1. 종속변수는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 여부  
 2. 상단의 경우 처치집단은 33~34세이며 통제집단은 35~36세  
 3. 중단의 경우 처치집단은 32~34세이며 통제집단은 35~37세  
 4. 하단의 경우 처치집단은 30~34세이며 통제집단은 25~29세  
 5. 강건표준오차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중치 사용  
 6. \*\*\*은 1%, \*\*은 5%, \*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4. 소결

- 이중차분법 및 이벤트스터디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2018년 본 조세특례의 확대 개편이 32~34세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나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할 수 있음
  -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확대 이후 32~34세의 중소기업 취업 증가 추세는 남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상공인 일자리 및 임시직 일자리에서 발생한 취업 효과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중에서 기업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으로의 취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
    - 또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임시직에서 유의미한 취업 유도 효과가 나타남
  - 전반적으로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률에는 유의미한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여성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 임시직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취업 유도 효과가 나타남
  - 결론적으로 본 제도의 확대가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의미함
  
- 다만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처치집단 및 통제집단의 범위에 따라 추정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석에 다소 주의가 필요함
    - 특히 남성의 경우 군 복무 연령 2세를 일괄 차감하기 때문에 처치집단 및 통제집단이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함
  - 둘째, 본 연구는 2018년 제도 변화로 인해 정책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32~34세 청년으로 한정하여 정책 변화가 중소기업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제도가 전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 셋째, 본 분석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조세특례의 수혜대상인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음
    - 분석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을 정확히 식

별할 수 없음

- 아울러 상기 수혜대상의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법과 같은 계량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제도 개편이 없었음
  - 하지만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수혜자의 규모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가 각 수혜대상의 중소기업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유추됨
- 넷째, 해당 조세특례가 취업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정책이므로 이로 인해 고용자(사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의 임금을 인하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임금에 관한 분석을 후속 연구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V.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인력난 개선 효과





## V.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인력난 개선 효과

### 1. 분석 개요

-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개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동 제도는 도입 이후에도 제도 개정이 여러 번 이루어짐
    - 주로 제도 수혜자 범위를 넓히고 혜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정됨
  - 본 연구에서는 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제도 개정 전후 인력난 현황을 비교하여 본 제도가 인력난 개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즉,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함
    - 매 홀수 연도마다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의 인력난 관련 문항, 구체적으로 사업장 내 빈 일자리(공석)의 수와 신입사원 채용 시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 수의 비율 변화를 분석함

### 2. 분석 방법

-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의 도입과 이후 변화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본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그 밖의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
  - 따라서 제도 도입 또는 변화 전후 중소기업과 나머지 기업들의 인력난 변화를 비교하여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즉,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을 위해 제도 도입 또는 변화 시기를 명확히 선정하고, 또한 제도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과 나머지 기업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 가. 제도 변화

- 제Ⅱ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는 2012년 도입된 이후 일몰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제도 개정이 여러 번 이루어짐
  - 주로 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정됨
    - 2014년에는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되고, 2015년에는 감면액을 150만원으로 설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 외의 개정은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 방향이었음
  
- 본 장은 제Ⅳ장과 마찬가지로 2017년과 2019년 사이의 제도 변화를 이용하여 제도 변화 전과 후의 사업체 인력난을 비교함
  - 2018년 제도 개정으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음
    - 청년 연령 기준이 15~29세에서 15~34세로 넓어졌으며, 세액감면율이 70%에서 90%로,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
  
- 한편, 그 외 3건의 제도 변화를 이용하여 제도 변화 전과 후의 사업체 인력난을 비교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부록 V>에 제시함
  - 2011년과 2013년 비교
    -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2013년과 2015년 비교
    - 정책대상자 확대(청년 → 청년, 고령자, 장애인)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다만 이 기간 동안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되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2015년과 2017년 비교
    - 감면율이 50%에서 70%로 인상되고, 정책대상자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된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다만 이 기간 동안 감면액 한도(150만원)가 설정되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각 경우 모두 제도 대상인 기업(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제도 변화 전후의 인력난을 비교하여 제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함

- 다만 비경력직 신입사원 채용 시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 수에 대한 문항의 경우 6차년도 이후 조사에만 포함되어 2015년과 2017년, 2017년과 2019년 비교에만 사용될 수 있음

## 나. 중소기업 범위

- 제IV장에서는 노동공급자(취업자)가 분석대상이었지만, 본 장은 노동수요자(기업)가 분석대상임
  - 따라서 이중차분법 분석을 위해서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설정이 필요하기 때 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매출액 및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임
  - 자산총액의 경우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평균매출액 기준은 <표 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달라짐
  -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 외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대한 세부 적인 기준이 존재
  - 본 연구에서는 자산총액과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함
    - 매출액은 자료상의 당기와 전기 매출액의 평균, 자산총액은 연초와 연말 자산 총액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표 V-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표 V-1>의 계속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7. 농업, 임업 및 어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25. 음료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18. 1. 1., <https://www.law.go.kr/> 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8560,20171229), 검색일자: 2023. 2. 15.

### 3. 분석 자료

- 본 연구는 사업체의 인력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사용함
  - 「사업체패널조사」는 2년 주기로 사업체들의 고용 및 노동수요를 조사하며, 그 밖에도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인적자원개발 및 투자실태 등 다양한 문항을 설문함<sup>10)</sup>
    - 2006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8차년도 조사까지 완료되었음
    - 조사시점 기준 전년도 현황을 조사하여 2005년(1차년도)부터 2019년(8차년도)까지 매 홀수 연도에 대한 자료가 존재함
    - 8차년도 기준 민간부문 2,698개 사업장, 공공부문 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함
  - 「사업체패널조사」 표본의 모집단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수집된 전국의 사업장 중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 속한 30인 이상 규모의 모든 사업장임
  
- 「사업체패널조사」에서는 사업장의 고용 및 노동수요와 관련된 문항을 설문하고 있으며, 이 중 인력난 관련 질문은 다음과 같음
  - 빈 일자리(공석)의 수에 관한 문항은 6차년도를 기준으로 변화가 있었음
    - 1~5차년도에는 작년 말 기준 빈 일자리 수를 조사하였음([그림 V-1] 참고)
    - 6차년도 이후 조사에서는 최근 한 달간 직종과 고용형태별 공석 수를 조사하였음([그림 V-2] 참고)
  - 작년 한 해 비경력직 신입사원 채용 시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의 수에 대한 문항이 존재함
    - 다만, 본 문항은 6차년도 이후에만 조사됨([그림 V-3] 참고)

10) 「사업체패널조사」 관련 이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2022a)의 『사업체패널 1~8차 조사자료 User's Guide』(version 1.72)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V-1] 빈 일자리(공석)의 수 문항(1~5차년도)

작년 말 기준으로 귀 사업장의 [BQ1001(EP037)]에 결원이나 이직(사업확장 제외)에 따른 공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없는 경우에는 '0'이라고 입력하여 주십시오.

\_\_\_\_\_ 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1~8차년도 조사자료 통합설문지』, version 1.72, 2022b, p. 53

[그림 V-2] 빈 일자리(공석)의 수 문항(6차년도 이후)

최근 한 달간 귀 사업장의 빈 일자리(공석) 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직종과 고용형태에 따라 입력하여 주십시오.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합계
정규직	BQ1002	BQ1003	BQ1004	BQ1005	BQ1006
무기계약직	BQ1007	BQ1008	BQ1009	BQ1010	BQ1011
기간제(계약직 등)	BQ1012	BQ1013	BQ1014	BQ1015	BQ1016
파트타임	BQ1017	BQ1018	BQ1019	BQ1020	BQ1021
하청/용역	BQ1022	BQ1023	BQ1024	BQ1025	BQ102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1~8차년도 조사자료 통합설문지』, version 1.72, 2022b, p. 52

[그림 V-3]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 수 문항(6차년도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에서 [Majority\_Occ]의 비경력직 신입사원 채용 시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의 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1배수 미만  
 ② 1배수 이상 ~ 3배수 미만  
 ③ 3배수 이상 ~ 5배수 미만  
 ④ 5배수 이상 ~ 10배수 미만  
 ⑤ 10배수 이상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1~8차년도 조사자료 통합설문지』, version 1.72, 2022b, p. 59

## 4. 분석 결과

### 가. 분석방법론

- 본 분석에서는 2018년 제도 변화를 사용하여 제도 변화 전후 중소기업과 나머지 기업들의 인력난 정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
- 따라서 계량경제학적으로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함

- 분석별로 통합선형(pooled OLS) 분석과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고정효과(fixed effect) 분석을 실시함

□ 통합선형 분석은 다음의 회귀식을 이용해 추정함

- $y_{i,t} = \alpha + \beta_1 \times small_i + \beta_2 \times after_t + \beta_3 \times small_i \times after_t + X_{i,t}\Gamma + \epsilon_{i,t}$

- 여기서  $i$ 는 기업,  $t$ 는 시간을 나타냄

- $y$ 는 인력난 관련 변수, 즉 작년 한 해 비경력직 신입사원 채용 시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의 수와 빈 일자리(공석)의 수입
- 구체적으로, 작년 한 해 비경력직 신입사원 채용 시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의 수 변수의 경우 1배수 미만일 경우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한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함
- 빈 일자리(공석) 수의 경우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공석 수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함
- $small$ 은 중소기업은 1,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0의 값을 갖는 변수임
- $after$ 는 정책 도입 또는 변화 후 시기는 1, 그 전 시기는 0의 값을 갖는 변수임
- $X$ 는 나머지 변수들(매출액, 자산총액, 근로자수 등)에 대한 벡터임
- $\beta$ 값들은 회귀계수이며,  $\Gamma$ 는 나머지 변수들( $X$ )에 대한 회귀계수들을 모은 벡터임
- $\epsilon$ 는 오차항임
- 나머지 변수들을 통제하고, 정책의 효과만 계산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y$ 가 정책 변화 전  $\beta_1$ 에서 정책 변화 후  $\beta_1 + \beta_2 + \beta_3$ 가 되어  $\beta_2 + \beta_3$ 만큼 증가함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y$ 가 0에서  $\beta_2$ 로  $\beta_2$ 만큼 증가함
  - 따라서 증가 규모의 차이인  $\beta_3 (= (\beta_2 + \beta_3) - \beta_2)$ 가 정책효과임
  - 즉, 중소기업과 정책 변화 후의 교차항( $small_i \times after_t$ )의 계수인  $\beta_3$ 가 동 제도로 인한 효과를 의미하는 관심 추정치임

□ 고정효과 분석은 다음의 회귀식을 이용해 추정함

- $y_{i,t} = \alpha + \beta_1 \times after_t + \beta_2 \times small_i \times after_t + X_{i,t}\Gamma + \epsilon_{i,t}$

- 대부분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여부가 단기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의 시간 변화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고정효과 패널 모형에서는  $small_i$ 값은 변하지 않아 회귀식에 포함하지 않음

- 나머지 변수들을 통제하고, 정책의 효과만 계산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y$ 가 정책 변화 전 0에서 정책 변화 후  $\beta_1 + \beta_2$ 가 되어  $\beta_1 + \beta_2$ 만큼 증가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y$ 가 0에서  $\beta_1$ 로  $\beta_1$ 만큼 증가
  - 따라서 증가 규모의 차이인  $\beta_2 (= (\beta_1 + \beta_2) - \beta_1)$ 가 정책의 효과임
  - 즉, Pooled OLS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정책 변화 후의 교차항( $small_i \times after_t$ )의 계수인  $\beta_2$ 가 본 연구의 관심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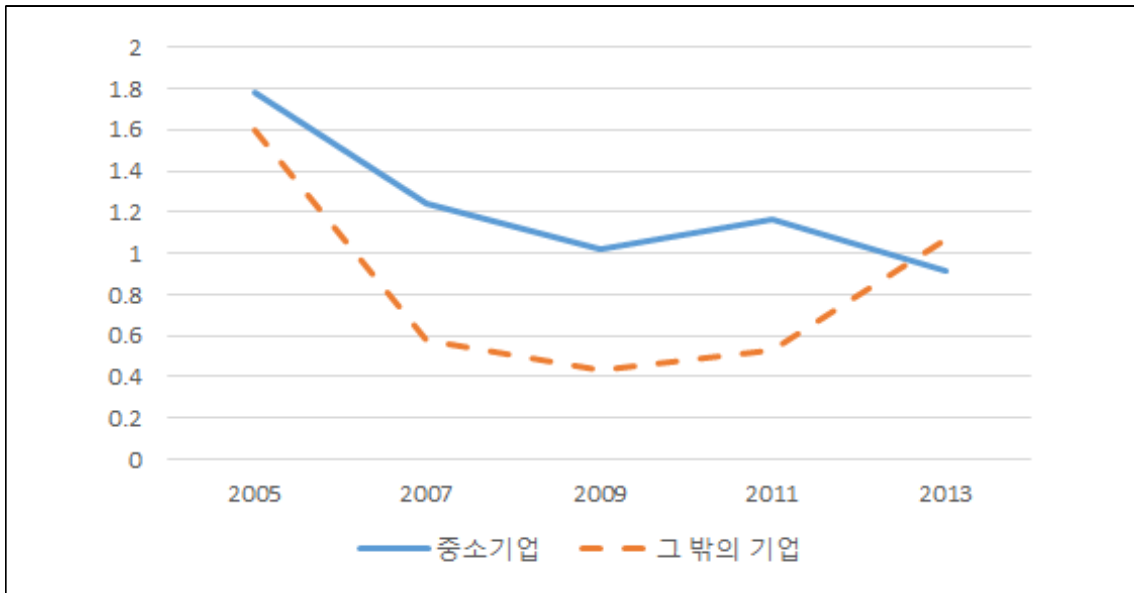
## 나. 기초 통계

- 통계분석에 앞서 [그림 V-4]~[그림 V-6]에서 공석 비율과 지원자 미달 확률의 대략적인 추세를 살펴볼 수 있음<sup>11)</sup>
  - 공석 비율의 경우 6차년도 조사부터 문항이 변경되어 1~5차년도와 6차년도 이후 그림을 별도로 제시함
  - 1~5차년도 공석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1년까지는 중소기업의 공석 비율이 더 높으며 중소기업과 그 밖의 기업이 대략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임([그림 V-4] 참고)
    - 하지만 2011년과 2013년 사이 서로 상반된 추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공석 비율이 더 낮음
  - 2015년 이후 중소기업과 그 밖의 기업의 공석 비율은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석 비율이 더 높음([그림 V-5] 참고)
  - 지원자 미달 확률의 경우 중소기업과 그 밖의 기업이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원자 미달 확률이 더 높음([그림 V-6] 참고)

11) 매출액, 자산총액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과 공석 비율(공석/총근로자수)이 50%가 넘는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공석 비율이 50%가 넘는 기업의 비중은 작아 그 기업들을 포함하더라도 분석 통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

[그림 V-4] 공식 비율 변화(1~5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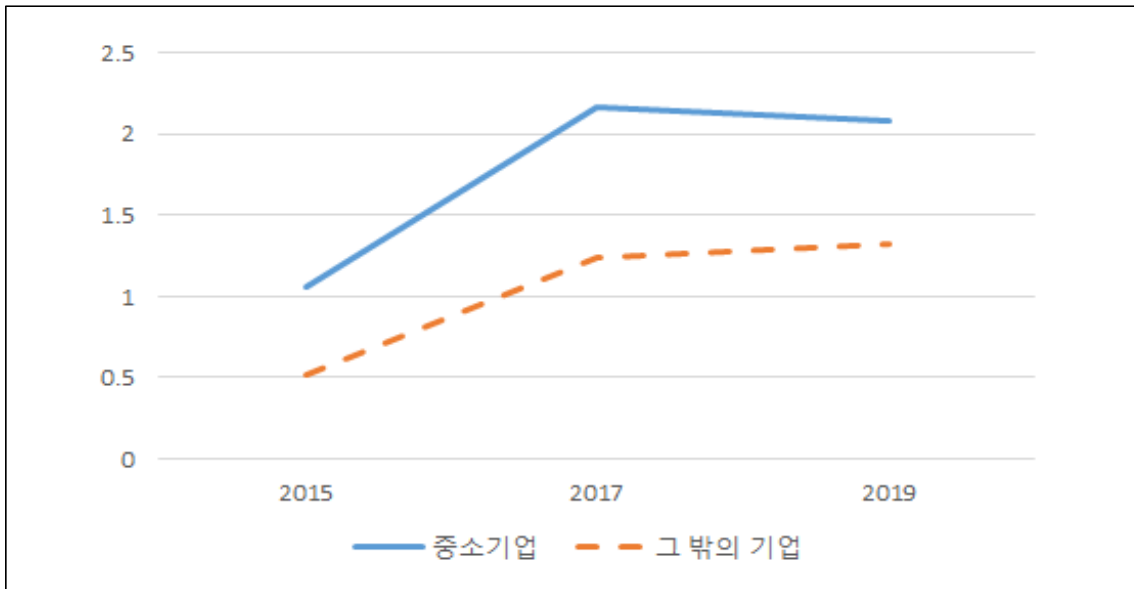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V-5] 공식 비율 변화(6차년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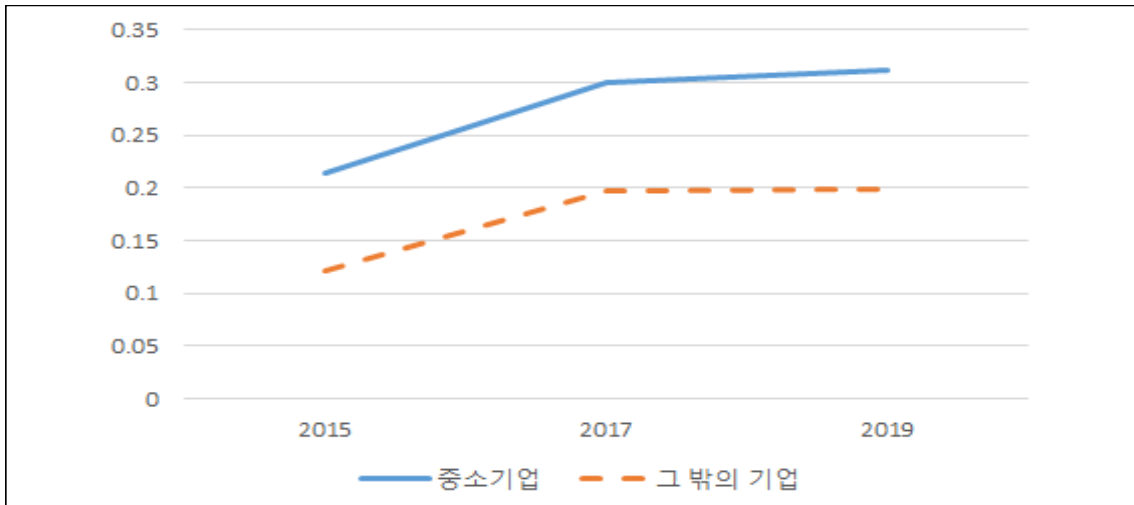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V-6] 지원자 미달 확률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표 V-2>는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줌

- 1차년도(2005년) 통계와 최근 조사인 8차년도(2019년) 조사의 통계임
- 2019년 기준 공석 비율은 약 1.58%임
- 전체 표본 사업체 중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가 1배수 미만인 비율은 24%임
- 전체 표본 사업체의 67.1%가 중소기업임

<표 V-2>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초통계

(단위: %)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2005년	공석 비율	1,290	1.35	4.23	0	49.08
	중소기업	1,290	0.557	0.497	0	1
	당기순이익(백만원)	1,287	58,284	372,168	-944,350	7,640,213
	매출액(백만원)	1,290	868,361	3,508,141	705	57,545,016
	자산총액(백만원)	1,290	1,287,433	6,232,674	59	116,587,040
	총근로자수	1,290	472	1,145	30	21,106
2019년	공석 비율	2,181	1.577	4.453	0	47.619
	지원자 미달 여부	2,181	0.240	0.427	0	1
	중소기업	2,181	0.671	0.470	0	1
	당기순이익(백만원)	2,181	11,404	163,452	-753,701	2,832,289
	매출액(백만원)	2,181	616,949	2,787,843	210.5	46,157,900
	자산총액(백만원)	2,181	1,193,663	6,780,647	150	174,924,080
총근로자수	2,181	280	690	5	17,16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표 V-3>은 2019년 기준 고용형태별 공석 비율을 보여줌

- 고용형태별로 근로자 대비 공석의 비율임
- 전체 사업체 평균보다 중소기업의 평균 공석 비율이 더 높음
- 정규직 공석 비율이 비정규직 공석 비율보다 더 높음

<표 V-3> 고용형태별 공석 비율 기초통계

(단위: %)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공석 비율	2,181	1.577	4.453	0	47.619
	정규직	2,167	1.684	5.681	0	150
	비정규직	769	1.310	6.589	0	80
	무기계약직	321	0.662	4.143	0	55.556
	기간제(계약직 등)	598	1.635	7.773	0	80
	파트타임	136	0.608	3.789	0	37.037
중소기업	공석 비율	1,464	1.883	4.992	0	47.619
	정규직	1,452	1.979	5.361	0	53.571
	비정규직	382	0.965	6.062	0	80
	무기계약직	153	0.717	4.879	0	55.556
	기간제(계약직 등)	271	1.276	7.352	0	80
	파트타임	70	0.076	0.639	0	5.34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다.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17년과 2019년 중소기업과 나머지 기업의 공석 비율과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 수 1배수 미만(미달) 여부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 <표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제도 개정이 중소기업의 공석 비율에 미치는 영향(중소기업 × 2019년의 계수)은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통합선형 분석의 경우 총근로자수가 많은 기업에서 공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정효과 분석의 경우 총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서 공석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 8천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제도 개정이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의 공석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V-4> 2018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중소기업	0.392 (0.577)		-0.011 (1.345)	
2019년	0.101 (0.409)	0.022 (0.258)	-0.709 (0.803)	-0.931** (0.401)
중소기업 × 2019년	-0.134 (0.454)	-0.149 (0.287)	0.635 (1.721)	-0.056 (1.466)
당기순이익(로그)	-0.136 (0.103)	0.211** (0.084)	-0.352 (0.383)	-0.335 (0.245)
매출액(로그)	0.032 (0.179)	-0.511 (0.406)	0.693 (0.657)	0.748 (1.225)
자산총액(로그)	0.131 (0.122)	-0.356 (0.544)	-1.370 (0.856)	-0.034 (2.490)
총근로자수(로그)	-0.434*** (0.165)	-1.412*** (0.427)	-0.491 (0.618)	2.914*** (0.992)
상수항	2.484* (1.449)	15.028*** (4.420)	16.744 (11.381)	-16.655 (28.605)
표본수	2,667	2,667	360	360
결정계수( $R^2$ )	0.0117	0.0209	0.0421	0.1253

주: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표 V-5>는 지원자 미달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앞서의 분석과 동일하게 제도 개정이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의 공석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통합선형 분석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높고, 총근로자수가 많은 기업에서 지원자 미달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정효과 분석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에서 지원자 미달 확률이 낮아짐

-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 8천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제도 개정이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의 공석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자 미달 여부를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더라도 앞서의 분석과 동일하게 제도 개정이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의 공석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높고, 총근로자수가 많은 기업에서 지원자 미달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V-5> 2018년 제도 개정이 지원자 미달 여부에 미친 영향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프로빗	통합선형	고정효과	프로빗
중소기업	-0.009 (0.053)		0.007 (0.179)	0.117 (0.198)		0.409 (0.625)
2019년	-0.021 (0.027)	-0.029 (0.026)	-0.078 (0.107)	0.068 (0.042)	-0.006 (0.026)	0.315* (0.188)
중소기업 × 2019년	0.035 (0.034)	0.042 (0.029)	0.116 (0.123)	-0.239 (0.183)	-0.054 (0.097)	-0.934 (0.604)
당기순이익(로그)	-0.024*** (0.009)	-0.017** (0.009)	-0.074*** (0.028)	-0.018 (0.018)	-0.003 (0.016)	-0.088 (0.077)
매출액(로그)	-0.025 (0.019)	-0.023 (0.042)	-0.071 (0.060)	-0.015 (0.051)	-3.31×10 <sup>-6</sup> (0.081)	-0.065 (0.212)
자산총액(로그)	0.021 (0.016)	-0.056 (0.056)	0.062 (0.050)	-0.092 (0.085)	0.036 (0.164)	-0.442 (0.346)
총근로자수(로그)	-0.031** (0.013)	-0.031 (0.044)	-0.107** (0.046)	-0.001 (0.029)	-0.027 (0.065)	0.003 (0.132)
상수항	0.614*** (0.163)	1.318*** (0.453)	0.400 (0.516)	1.658* (0.989)	-0.157 (1.887)	6.049 (4.244)
표본수	2,667	2,667	2,667	360	360	360
결정계수(R <sup>2</sup> )	0.0303	0.0106	0.0269	0.0410	0.0053	0.0517

주: 1.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프로빗 모형의 결정계수는 유사결정계수(pseudo-R<sup>2</sup>)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이하 분석에서는 제도 변화의 효과를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내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트타임 근로자의 공석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정규직 공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제도 개정이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의 정규직 공석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 V-8>의 모든 (중소기업 × 2019년)에 대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V-6> 2018년 제도 개정이 정규직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중소기업	0.636 (0.525)		-0.111 (1.436)	
2019년	0.146 (0.425)	0.046 (0.286)	-0.630 (0.805)	-0.995** (0.388)
중소기업 × 2019년	-0.166 (0.474)	-0.186 (0.317)	1.465 (1.659)	0.017 (1.413)
당기순이익(로그)	-0.088 (0.103)	0.216** (0.094)	0.011 (0.185)	-0.401* (0.237)
매출액(로그)	-0.013 (0.185)	-0.627 (0.446)	0.144 (0.319)	0.280 (1.184)
자산총액(로그)	0.056 (0.131)	-0.365 (0.601)	-1.314 (0.838)	-1.427 (2.406)
총근로자수(로그)	-0.274** (0.125)	-1.105** (0.468)	0.154 (0.205)	3.327*** (0.957)
상수항	2.501 (1.531)	14.978*** (4.877)	15.734 (11.183)	5.083 (27.586)
표본수	2,649	2,649	359	359
결정계수( $R^2$ )	0.0103	0.0159	0.0410	0.1630

주: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비정규직 공석 비율을 분석한 결과 또한 제도 개정이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공석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 V-9>의 모든 (중소기업 × 2019년)에 대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V-7> 2018년 제도 개정이 비정규직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중소기업	-0.614 (1.348)		1.977 (2.173)	
2019년	1.227 (1.333)	0.420 (0.408)	-0.513 (1.123)	0.434 (0.386)
중소기업 × 2019년	-1.200 (1.332)	-0.449 (0.498)	-1.010 (1.656)	-1.248 (1.113)
당기순이익(로그)	-0.122 (0.215)	0.075 (0.171)	-0.868 (0.792)	-0.075 (0.190)
매출액(로그)	0.353 (0.537)	0.675 (0.767)	1.864 (1.625)	0.552 (0.698)
자산총액(로그)	-0.036 (0.309)	-0.700 (0.995)	0.028 (1.449)	6.056** (2.529)
총근로자수(로그)	-0.777 (0.624)	1.874 (1.216)	-1.835 (1.643)	-2.285** (0.930)
상수항	2.415 (3.250)	-7.917 (8.881)	-3.862 (17.800)	-70.959** (28.648)
표본수	919	919	178	178
결정계수( $R^2$ )	0.0332	0.0141	0.1242	0.3861

주: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한편,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공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고정효과 분석에서는 제도 개정이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의 무기계약직 공석 비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표 V-10>의 전체 표본 고정효과 분석에서 (중소기업×2019년)에 대한 추정치인 -1.330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8년 제도 변화로 중소기업 무기계약직 일자리의 공석 비율이 1.33%p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함
  - 하지만 다른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한편, 자산총액 기준 2천억~8천억원으로 표본을 한정할 경우 표본수가 부족하여 고정효과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음

<표 V-8> 2018년 제도 개정이 무기계약직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중소기업	-0.131 (0.582)		1.019 (0.767)
2019년	-0.153 (0.211)	0.345 (0.523)	0.323 (0.269)
중소기업 × 2019년	-0.411 (0.618)	-1.330** (0.664)	-0.453 (0.373)
당기순이익(로그)	-0.316 (0.234)	-0.823*** (0.254)	0.056 (0.083)
매출액(로그)	-0.028 (0.093)	-1.657 (1.537)	0.321 (0.239)
자산총액(로그)	0.129 (0.169)	1.899 (1.270)	0.516 (0.399)
총근로자수(로그)	0.005 (0.212)	2.031 (2.070)	0.042 (0.062)
상수항	2.035 (1.973)	-5.733 (18.384)	-11.340 (8.414)
표본수	362	362	79
결정계수( $R^2$ )	0.0464	0.1645	0.1095

주: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비정규직 중 기간제(계약직 등) 공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자산총액 기준을 2천억~8천억원으로 표본을 한정된 고정효과 분석에서 제도 개정이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의 기간제(계약직 등) 공석 비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됨
  - <표 V-11>의 마지막 열에서 (중소기업 × 2019년)의 추정치가 -5.145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2018년 제도 변화로 중소기업 기간제(계약직 등) 일자리의 공석 비율이 5.145%p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함
  - 하지만, 다른 분석에서는 동 제도의 인력난 개선 효과가 관찰되지 않아 분석 결과가 민감한 것으로 판단됨

<표 V-9> 2018년 제도 개정이 기간제(계약직 등)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중소기업	0.901 (1.246)		4.071 (3.781)	
2019년	2.152 (1.731)	0.493 (0.519)	0.592 (0.467)	-0.068 (0.452)
중소기업 × 2019년	-1.954 (1.791)	-0.321 (0.655)	-4.876 (3.709)	-5.145*** (1.183)
당기순이익(로그)	0.227 (0.200)	0.302 (0.211)	-0.060 (0.119)	0.107 (0.218)
매출액(로그)	-0.029 (0.703)	1.057 (1.017)	-0.843 (0.863)	-0.120 (0.837)
자산총액(로그)	0.092 (0.404)	-1.902 (1.390)	2.337 (1.648)	-0.164 (4.287)
총근로자수(로그)	-0.394 (0.576)	2.619 (1.608)	0.143 (0.164)	-0.559 (1.018)
상수항	-0.538 (3.247)	-4.434 (11.548)	-19.512 (11.531)	6.529 (49.608)
표본수	707	707	148	148
결정계수( $R^2$ )	0.0271	0.0273	0.1403	0.3692

주: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비정규직 중 파트타임 공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고정효과 분석에서는 제도 개정이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의 파트타임 공식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 V-12>의 모든 (중소기업 × 2019년)에 대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자산총액 기준 2천억~8천억원으로 표본을 한정할 경우 표본수가 부족하여 고정효과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음

<표 V-10> 2018년 제도 개정이 파트타임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구분	전체 표본	
	통합선형	고정효과
중소기업	-8.565 (5.283)	
2019년	-2.160 (1.345)	-0.691 (0.866)
중소기업 × 2019년	1.385 (1.306)	0.717 (1.004)
당기순이익(로그)	-0.726 (0.663)	-0.205 (0.374)
매출액(로그)	0.813 (0.916)	7.800*** (2.304)
자산총액(로그)	-0.485 (0.509)	-0.567 (1.775)
총근로자수(로그)	-1.716 (1.751)	-6.843** (3.219)
상수항	17.998 (12.623)	-42.504 (34.265)
표본수	151	151
결정계수( $R^2$ )	0.1938	0.4546

주: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5. 소결

-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중기취업자소득세 감면’ 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개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
  - 청년의 범위를 넓히고 감면혜택을 확대한 2018년 제도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도 변화 전후(2017년과 2019년) 중소기업과 나머지 기업들의 인력난과 지원자 미달 확률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제도 개정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8년 감면 확대가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의 공석 비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다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 등) 일자리의 공석 비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일부 발견되었으나, 그 결과가 강건하지 않았음
- <부록 IV>에서는 전체 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일부 분석에서 2018년 제도 개정으로 인해 2017년 대비 2019년 중소기업의 인력난 또는 지원자 미달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표본을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기업으로 한정하면 전체 고용형태를 포함한 고정효과 분석에서도 제도의 효과가 확인됨
    - 고용형태별 분석에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분석 중 일부에서 제도 개정으로 인해 공석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관찰됨
  -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표본을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기업으로 한정하면 전체 고용형태를 포함한 통합선형 분석과 프로빗 분석에서 지원자 미달 확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견됨
    - 고용형태별 분석에서는 기간제(계약직 등)에 대한 분석 중 일부에서 제도 개정으로 인해 공석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관찰됨
- <부록 V>에서는 2012년 제도 도입, 2014년 제도 개정(정책대상 확대 및 감면율 인하), 2016~2017년 제도 개정(감면율 인상 및 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음
- 전반적으로 제도의 변화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일부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고정효과 분석에서 2012년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공석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고정효과 분석과 표본을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기업으로 한정해 통합선형 분석에서 2014년 제도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공석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16~2017년의 제도 개정은 어떠한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제도 변화 전후 중소기업과 나머지 기업의 공석 비율 또는 지원자 미달 여부를 분석하여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다만 본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기에 다른 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더 크거나 작은 영향을 준 거시경제 상황 또는 다른 지원정책 등이 동시에 존재했을 수도 있기에 본 연구에서 발견한 효과를 오직 본 제도의 영향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또한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실시한 분석 중 일부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긴 하였으나, 효과의 크기가 공석 비율의 평균치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부분이 있으며, 이는 표본수가 작은 상황에서 공석 비율이 크게 달라진 소수 기업들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

## VI.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 VI.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 1. 종합평가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평가한 결과 동 제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효과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됨
  
- 타당성 분석 결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인력불일치(mismatch)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동 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
  - 동 제도가 인력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은 아님
  - 인력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고급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동 제도는 그 이행과정에서 현재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고용취약계층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한편, 동 제도의 정책대상과 수행방법은 대체로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에 대해서는 제도개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른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효과성 분석 결과 일부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인력난 개선 효과가 관찰되나 임시직 일자리에 대한 효과로 취업의 질적 개선은 관찰되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동 제도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취업유도 효과 없이 조세지출만 발생한 사중손실로 해석됨
    - 동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지 않고, 한도 적용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새로운 수혜대상인 30~34세의 경우 실업률이 제도 변화 직전 14분기 평균 3.8%였고,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35~39세보다 높아 동 제도 변화에 반응할

계층이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함

- 동 계층에 대한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세제지원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효과성을 제한하는 요인임

□ 동 제도의 효과성은 제한적으로만 관찰되지만 노동시장의 인력불일치 문제로 인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 제도의 일몰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 제도 개선방안

□ (정책제안 1)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사중손실일 가능성이 크므로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요건으로 소득요건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 요건으로 총급여액 상한을 도입하고,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200만원인 세액감면액 한도에 점감구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감면액 한도를 설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는 정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총급여액 5,500만원까지는 세액감면액 한도를 현행 제도와 같이 200만원으로 유지함
  - 총급여액 5,500만~7,000만원 구간에서는 총급여액이 1원이 증가할 때마다 세액공제액 한도를 2/15원씩 감소시킴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인 취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표 VI-1>은 위 소득요건을 도입하였을 경우 취업자 유형 및 소득수준별 세제 혜택을 보여줌
  - 이는 국세청이 제공한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활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계산한 것으로 제도가 변하더라도 소득분포나 경제주체의 행태 등이 변화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결과임
- 다만, 위에서 제시한 소득요건은 하나의 예시로 실제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다양한 점감구간의 시작점과 점감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VI-1> 소득요건 도입에 대한 취업자 유형 및 소득수준별 세제혜택  
모의실험 결과**

(단위: 만원, %)

구분	순세액감면액 (만원)			세액감면율 (산출세액 대비 %)			실효세율 감소폭 (총급여 대비 %)			
	A	B	C	A	B	C	A	B	C	
전체	48.2	55.2	51.1	28.5	30.8	30.2	1.3	1.4	1.4	
청년	청년 전체	48.3	55.4	51.5	28.7	31.1	30.5	1.3	1.4	1.4
	1천만원 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2천만원 이하	2.2	2.2	2.2	4.9	4.9	4.9	0.1	0.1	0.1
	3천만원 이하	19.9	19.9	19.9	24.1	24.1	24.1	0.8	0.8	0.8
	4천만원 이하	62.2	66.8	66.8	39.1	41.2	41.2	1.8	1.9	1.9
	5천만원 이하	102.4	126.6	126.6	42.0	51.1	51.1	2.3	2.9	2.9
	6천만원 이하	118.0	153.1	144.6	33.6	43.2	41.2	2.2	2.8	2.7
	7천만원 이하	125.0	164.0	65.6	26.3	34.5	14.3	2.0	2.6	1.0
	8천만원 이하	135.1	177.8	0.0	21.0	27.6	0.0	1.8	2.4	0.0
	9천만원 이하	139.1	184.8	0.0	16.4	21.7	0.0	1.6	2.2	0.0
	1억원 이하	141.2	187.1	0.0	13.0	17.2	0.0	1.5	2.0	0.0
1억원 초과	145.1	193.0	0.0	8.1	10.8	0.0	1.1	1.5	0.0	
청년 외	청년 외 전체	45.7	51.9	44.1	24.3	25.9	24.8	1.2	1.3	1.2
	1천만원 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2천만원 이하	3.9	3.9	3.9	8.1	8.1	8.1	0.2	0.2	0.2
	3천만원 이하	20.6	20.6	20.6	23.5	23.5	23.5	0.8	0.8	0.8
	4천만원 이하	57.8	59.2	59.2	33.4	33.9	33.9	1.6	1.7	1.7
	5천만원 이하	97.2	114.8	114.8	37.1	42.9	42.9	2.2	2.6	2.6
	6천만원 이하	112.8	145.0	134.6	29.5	37.7	35.3	2.1	2.7	2.5
	7천만원 이하	119.2	154.2	60.5	23.3	30.0	12.3	1.9	2.4	1.0
	8천만원 이하	127.3	165.2	0.0	18.6	24.0	0.0	1.7	2.2	0.0
	9천만원 이하	135.0	177.6	0.0	14.5	19.0	0.0	1.6	2.1	0.0
	1억원 이하	133.6	175.6	0.0	11.8	15.6	0.0	1.4	1.9	0.0
1억원 초과	141.0	186.7	0.0	7.6	10.1	0.0	1.1	1.5	0.0	

주: 1.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  
 2. A는 세액감면액 한도 150만원(2021년 제도)  
 3. B는 세액감면액 한도 200만원(현행 제도)  
 4. C는 총급여액 5,500만원까지는 세액감면액 한도 200만원, 5,500만~7,000만원까지는 점감구간 (점감률 200/1,500), 7,000만원부터는 한도 0원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
2.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표본자료

- (정책제안 2) 타당성 분석에서 논의하였듯이 경력단절여성의 요건 중 동종 업종 재취업 요건 삭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시 동 제도의 수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경력단절 직전 근무했던 기업과 동일한 중분류에 속한 기업에 취업해야 함
  - 하지만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후 일정 기간 노동 시장에서 이탈해 있던 많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시 동종 업종이 아닌 경력 단절 이전보다 낮은 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타당성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노동시장 환경에 따른 비자발적인 선택으로 근로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이 스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제도현황을 살펴보면 동 제도의 신청자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이 가장 낮는데, 경력단절여성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동종 업종 재취업 요건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정책제안 3) 결혼, 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여성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남성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여성과 비교해 소수이지만 육아 및 가사의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남성이 2022년 기준 19만 9천명 존재하며, 성별을 이유로 정책대상에서 배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한편,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가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전환하여 남성도 육아와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 법과 제도에서 성역할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비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임
  
- 다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요건은 동 제도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을 지원하는 다른 조세특례들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의 개정은 타 제도에 대한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인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이를 준용하고 있음
  - 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요건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지원하는 조세특례들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요건을 개정할 경우 이는 동 제도뿐만 아니라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한 파급효과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보도자료 별첨, 2022. 12.
- \_\_\_\_\_,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2023. 2.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의 별첨자료, 2023. 1. 30.
- 권성준·강성훈·조희평,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4),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9.
- 기획재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 2018. 5. 17.
- 대한민국정부,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4. 9.
- \_\_\_\_\_,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5. 9.
- \_\_\_\_\_,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 9.
- \_\_\_\_\_,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7. 9.
- \_\_\_\_\_,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8. 9.
- \_\_\_\_\_,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9. 9.
- \_\_\_\_\_,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0. 9.
- \_\_\_\_\_,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1. 9.
- \_\_\_\_\_,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2. 9.
-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주요 결과』, 보도자료 별첨, 2023. 6. 1.
- 오종현·신상화·강성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I,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9, pp. 481~688.
- 최승문·강성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V),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9.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1~8차 조사자료 User's Guide』, version 1.72』, 2022a.
- \_\_\_\_\_, 『사업체패널 1~8차년도 조사자료 통합설문지』, version 1.72, 2022b.

Angrist, Joshua D., and Pischke, Jorn-steffen, *Mastering Metrics: The Path from Cause to Effect*,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2015.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2022.

### <통계자료 및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hmp/index.do>, 검색일자: 2023. 4. 5.

\_\_\_\_\_,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hmp/index.do>, 검색일자: 2023. 4. 19.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 “3-1-4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Ⅱ(종합소득, 과세표준),”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2&sttsMtaInfrId=20211203C012022C8815>, 검색일자: 2023. 3. 13.

\_\_\_\_\_, 「국세통계연보」, “3.1.4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Ⅱ(종합소득, 과세표준)[2016~],”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01N\\_31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01N_314&conn_path=I3), 검색일자: 2023. 3. 13.

\_\_\_\_\_, 「국세통계연보」, “3.2.9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신고 현황[2016~],”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01N\\_32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01N_329&conn_path=I3), 검색일자: 2023. 3. 13.

\_\_\_\_\_,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2014~],”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1N\\_A42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1N_A424&conn_path=I3), 검색일자: 2023. 3.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31532,20210309\)](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31532,20210309)), 검색일자: 2023. 5. 28.

\_\_\_\_\_,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조세특례제한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4. 6.

\_\_\_\_\_,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조세특례제한법%20시행령>, 검색일자: 2023. 4. 6.

\_\_\_\_\_,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5050,20131230\)](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5050,20131230)), 검색일자: 2023. 5. 28.

- \_\_\_\_\_,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8560,20171229\)](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8560,20171229)), 검색일자: 2023. 2. 1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2년 원시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index.do>, 검색일자: 2023. 2. 11.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conn_path=I2), 검색일자: 2023. 4. 5.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성/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45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45S&conn_path=I3), 검색일자: 2020. 6. 15.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 검색일자: 2023. 4. 5.
- \_\_\_\_\_, 「인구동향조사」,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path=I2), 검색일자: 2023. 6. 15.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8차~제24차년도 원시자료, <https://www.kli.re.kr/klips>, 검색일자: 2023. 6. 17.
- \_\_\_\_\_, 「사업체패널조사」, 제1차~제8차년도 원시자료, <https://www.kli.re.kr/wps>, 검색일자: 2023. 2. 21.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2.1. 소비자물가지수,”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8. 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 장애정도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3&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3&conn_path=I2), 검색일자: 2023. 7. 3.

# 부 록





## 부록 I: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규모: 2013년 이후

<부록 표 I -1>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

조세지출 연도	(단위: 억원,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조세지출 규모	신설	16	1,030	1,667	2,325	3,720	1,935	6,068	7,792	8,397	9,672	10,388
전년 대비 증가액	-	16	1,014	637	658	1,395	-1,785	4,133	1,724	605	1,275	716
전년 대비 증가율	-	-	6,337.50	61.84	39.47	60.00	-47.98	213.59	28.41	7.76	15.18	7.40

주: 2022년과 2023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2014~2022)의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I -2> 『조세지출예산서』의 타 조세지출과의 비교

연도	(단위: 억원,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A)	16	1,030	1,667	2,325	3,720	1,935	6,068	7,792	8,397	9,672	10,388
전체 조세지출(B)	338,350	343,383	359,017	374,436	396,769	439,533	495,700	529,357	570,248	635,776	693,155
개인지원 조세지출(C)	214,536	231,800	244,328	376,761	274,004	253,427	315,589	343,056	362,793	399,296	433,303
소득세 조세지출(D)	163,345	174,904	196,896	205,821	216,541	246,817	303,540	319,488	345,618	372,715	403,988
고용지원 조세지출(E)	505	1,503	2,154	3,619	1,742	5,218	16,185	24,385	30,609	39,771	43,025
전체 조세지출 대비(A/B)	0.0047	0.3000	0.4643	0.6209	0.9376	0.4402	1.2241	1.4720	1.4725	1.5213	1.4987
개인지원 조세지출 대비(A/C)	0.0075	0.4443	0.6823	0.6171	1.3576	0.7635	1.9228	2.2713	2.3145	2.4223	2.3974
소득세 조세지출 대비(A/D)	0.0098	0.5889	0.8466	1.1296	1.7179	0.7840	1.9991	2.4389	2.4296	2.5950	2.5714
고용지원 조세지출 대비(A/E)	3.1683	68.5296	77.3909	64.2443	213.5476	37.0832	37.4915	31.9541	27.4331	24.3192	24.1441

주: 1. 2022년과 2023년은 전망치

2. 개인은 근로소득자,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료: 대한민국정부(2014~2022)의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부록 II: 『국세통계연보』의 조세지출 규모

<부록 표 II -1>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인원(근로소득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b>구분</b>									
합계		16,629,769	17,263,158	17,668,285	17,925,345	18,501,089	19,074,871	19,410,638	19,907,727
총급여 신고인원 (A)	1천만원 이하	3,434,784	3,539,985	3,334,672	3,105,302	2,977,614	2,890,704	2,987,486	2,946,859
	1천만~2천만원 이하	4,008,614	4,046,838	4,023,118	3,809,319	3,541,073	2,983,208	2,803,100	2,800,055
	2천만~3천만원 이하	2,798,469	2,930,090	3,144,981	3,357,551	3,740,289	4,331,915	4,358,447	4,291,383
	3천만~4천만원 이하	1,873,935	1,928,195	2,049,625	2,194,360	2,382,689	2,611,774	2,722,609	2,837,552
	4천만~5천만원 이하	1,317,818	1,359,963	1,431,820	1,505,441	1,610,729	1,745,364	1,811,334	1,896,456
	5천만~6천만원 이하	971,995	988,334	1,015,129	1,058,520	1,133,975	1,220,521	1,268,958	1,334,588
	6천만~8천만원 이하	1,197,670	1,303,229	1,375,500	1,441,777	1,508,812	1,575,979	1,627,672	1,700,972
8천만~1억원 이하	500,078	570,400	640,114	733,938	804,069	863,500	914,568	976,717	
1억원 초과	526,406	596,124	653,326	719,137	801,839	851,906	916,464	1,123,145	
합계		304,401	380,282	393,299	397,311	782,234	943,665	979,875	1,028,554
동 세액감면 신고인원 (B)	1천만원 이하	16,966	23,466	22,186	18,381	22,722	27,424	29,875	28,057
	1천만~2천만원 이하	84,334	96,443	97,691	87,621	124,380	125,540	118,385	123,326
	2천만~3천만원 이하	130,638	154,006	159,662	164,402	292,695	353,199	355,416	337,320
	3천만~4천만원 이하	56,563	79,634	83,857	92,887	216,710	278,167	299,357	324,204
	4천만~5천만원 이하	12,577	21,536	23,222	25,763	84,867	109,316	119,131	137,299
	5천만~6천만원 이하	2,323	3,633	4,684	5,375	27,880	33,130	36,637	47,470
	6천만~8천만원 이하	772	1,167	1,483	2,143	10,386	13,015	15,974	22,669
	8천만~1억원 이하	130	239	295	458	1,648	2,499	3,166	4,890
1억원 초과	98	158	219	281	946	1,375	1,934	3,319	

(단위: 명, %)

〈부록 표 II -1〉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83	2.20	2.23	2.22	4.23	4.95	5.05	5.17
1천만원 이하	0.49	0.66	0.67	0.59	0.76	0.95	1.00	0.95
1천만~2천만원 이하	2.10	2.38	2.43	2.30	3.51	4.21	4.22	4.40
2천만~3천만원 이하	4.67	5.26	5.08	4.90	7.83	8.15	8.15	7.86
3천만~4천만원 이하	3.02	4.13	4.09	4.23	9.10	10.65	11.00	11.43
4천만~5천만원 이하	0.95	1.58	1.62	1.71	5.27	6.26	6.58	7.24
5천만~6천만원 이하	0.24	0.37	0.46	0.51	2.46	2.71	2.89	3.56
6천만~8천만원 이하	0.06	0.09	0.11	0.15	0.69	0.83	0.98	1.33
8천만~1억원 이하	0.03	0.04	0.05	0.06	0.20	0.29	0.35	0.50
1억원 초과	0.02	0.03	0.03	0.04	0.12	0.16	0.21	0.30

주: 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과세대상근로소득)[2014~]”,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IN\\_A42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IN_A424&conn_path=I3), 검색일자: 2023. 3. 1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II -2〉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근로소득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b>구분</b>		226,494	219,279	181,670	193,449	600,099	771,537	783,917	874,410
합계									
총 신고금액 (백만원)	1천만원 이하	689	908	999	837	1,255	1,696	1,860	1,799
	1천만~2천만원 이하	16,897	14,776	15,618	14,938	26,350	27,864	24,201	25,695
	2천만~3천만원 이하	82,765	68,581	58,806	65,403	163,150	210,392	199,045	196,316
	3천만~4천만원 이하	82,212	80,646	63,605	71,083	238,591	315,240	321,163	360,433
	4천만~5천만원 이하	30,068	35,653	27,952	27,984	112,874	146,370	157,358	181,907
	5천만~6천만원 이하	7,648	8,353	7,829	7,196	39,018	45,817	50,368	64,701
	6천만~8천만원 이하	3,319	3,926	3,679	3,651	14,873	18,460	22,454	31,561
	8천만~1억원 이하	960	1,389	1,199	1,091	2,482	3,635	4,593	7,090
	1억원 초과	1,937	5,047	1,984	1,268	1,508	2,064	2,875	4,908
합계		744	577	462	487	767	818	800	850
동 세액감면 신고인원 기준 평균 신고금액 (천원)	1천만원 이하	41	39	45	46	55	62	62	64
	1천만~2천만원 이하	200	153	160	170	212	222	204	208
	2천만~3천만원 이하	634	445	368	398	557	596	560	582
	3천만~4천만원 이하	1,453	1,013	758	765	1,101	1,133	1,073	1,112
	4천만~5천만원 이하	2,391	1,656	1,204	1,086	1,330	1,339	1,321	1,325
	5천만~6천만원 이하	3,292	2,299	1,671	1,339	1,399	1,383	1,375	1,363
	6천만~8천만원 이하	4,299	3,364	2,481	1,704	1,432	1,418	1,406	1,392
	8천만~1억원 이하	7,382	5,810	4,063	2,382	1,506	1,455	1,451	1,450
	1억원 초과	19,770	31,944	9,059	4,512	1,594	1,501	1,487	1,479

(단위: 백만원, 천원)

〈부록 표 II -2〉의 계속

(단위: 백만원,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4	13	10	11	32	40	40	44
총급여 신고인원 기준	0	0	0	0	0	1	1	1
1천만원 이하	4	4	4	4	7	9	9	9
2천만원~3천만원 이하	30	23	19	19	44	49	46	46
3천만원~4천만원 이하	44	42	31	32	100	121	118	127
4천만원~5천만원 이하	23	26	20	19	70	84	87	96
5천만원~6천만원 이하	8	8	8	7	34	38	40	48
6천만원~8천만원 이하	3	3	3	3	10	12	14	19
8천만원~1억원 이하	2	2	2	1	3	4	5	7
1억원 초과	4	8	3	2	2	2	3	4
평균 신고금액 (천원)								

주: 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과세대상근로소득)[2014~]”,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IN\\_A42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IN_A424&conn_path=I3), 검색일자: 2023. 3. 1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II -3〉 총급여액 및 산출세액 대비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 비중(근로소득자)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급여액 대비 비중	합계	0.0428	0.0390	0.0305	0.0305	0.0886	0.1075	0.1050	0.1089
	1천만원 이하	0.0042	0.0052	0.0061	0.0056	0.0087	0.0121	0.0129	0.0125
	1천만~2천만원 이하	0.0281	0.0243	0.0256	0.0256	0.0477	0.0616	0.0572	0.0610
	2천만~3천만원 이하	0.1201	0.0950	0.0759	0.0789	0.1771	0.1981	0.1850	0.1841
	3천만~4천만원 이하	0.1263	0.1204	0.0893	0.0933	0.2886	0.3481	0.3401	0.3661
	4천만~5천만원 이하	0.0510	0.0586	0.0437	0.0416	0.1567	0.1876	0.1943	0.2146
	5천만~6천만원 이하	0.0144	0.0154	0.0141	0.0124	0.0628	0.0686	0.0725	0.0885
	6천만~8천만원 이하	0.0040	0.0044	0.0039	0.0037	0.0142	0.0169	0.0199	0.0268
	8천만~1억원 이하	0.0022	0.0027	0.0021	0.0017	0.0035	0.0048	0.0057	0.0082
	1억원 초과	0.0024	0.0056	0.0020	0.0011	0.0012	0.0016	0.0020	0.0027
산출세액 대비 비중	합계	0.6135	0.5425	0.4161	0.4000	1.1390	1.3770	1.3344	1.2783
	1천만원 이하	0.7183	0.8156	0.9598	0.9210	1.4119	1.9862	2.1839	2.0844
	1천만~2천만원 이하	1.5909	1.3692	1.4103	1.3852	2.4925	3.2493	3.2035	3.3602
	2천만~3천만원 이하	4.5627	3.5690	2.8094	2.8915	6.4313	7.1794	7.1708	6.8152
	3천만~4천만원 이하	3.2768	3.0797	2.2520	2.3198	7.0958	8.5234	8.9467	9.1437
	4천만~5천만원 이하	1.0105	1.1493	0.8535	0.8066	3.0161	3.5996	3.8883	4.1371
	5천만~6천만원 이하	0.2319	0.2464	0.2257	0.1988	1.0062	1.0990	1.1893	1.4189
	6천만~8천만원 이하	0.0523	0.0566	0.0507	0.0483	0.1876	0.2239	0.2686	0.3562
	8천만~1억원 이하	0.0211	0.0268	0.0209	0.0167	0.0345	0.0474	0.0572	0.0819
	1억원 초과	0.0136	0.0314	0.0112	0.0061	0.0066	0.0085	0.0107	0.0143

주: 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과세대상근로소득)[2014-]”,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IN\\_A42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IN_A424&conn_path=I3), 검색일자: 2023. 3. 1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II -4〉 세액공제감면액 대비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 비중(근로소득자)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9659	1.8026	1.4184	1.4196	4.1729	5.1677	5.3750	5.5679
1천만원 이하	0.7186	0.8160	0.9601	0.9215	1.4130	1.9868	2.1843	2.0845
1천만~2천만원 이하	1.6986	1.4623	1.5137	1.4946	2.7239	3.5262	3.4647	3.6311
2천만~3천만원 이하	5.6001	4.4030	3.4962	3.6041	7.9894	8.9251	8.8684	8.4951
3천만~4천만원 이하	4.7263	4.4987	3.3698	3.5094	10.6173	12.8085	13.1838	13.7142
4천만~5천만원 이하	1.8440	2.1330	1.6129	1.5548	5.8459	7.2238	7.7828	8.4949
5천만~6천만원 이하	0.5220	0.5731	0.5303	0.4750	2.4405	2.8065	3.1461	3.7911
6천만~8천만원 이하	0.1623	0.1787	0.1606	0.1546	0.6188	0.7783	0.9897	1.3216
8천만~1억원 이하	0.1054	0.1337	0.1036	0.0834	0.1768	0.2510	0.3200	0.4601
1억원 초과	0.1666	0.3801	0.1373	0.0740	0.0888	0.1175	0.1603	0.2236
합계	91.7975	94.2445	96.9629	97.9151	99.3421	99.2470	99.1190	99.0721
1천만원 이하	96.5691	98.8462	99.0027	99.1706	99.3666	99.4721	99.8390	99.3923
1천만~2천만원 이하	98.4524	99.3144	99.4817	99.4872	99.6671	99.7030	99.7362	99.8058
2천만~3천만원 이하	98.4064	99.3274	99.1800	98.9410	99.6281	99.6759	99.6371	99.7454
3천만~4천만원 이하	98.7787	99.5341	99.5200	99.4808	99.8397	99.8394	99.8442	99.8648
4천만~5천만원 이하	97.2336	99.0644	99.2316	99.5411	99.8638	99.6765	99.6492	99.6134
5천만~6천만원 이하	90.3646	94.3715	95.3883	96.6295	99.4926	98.6840	98.4885	98.5124
6천만~8천만원 이하	74.1868	78.1492	82.1556	84.7887	94.8473	93.9058	93.1353	94.5676
8천만~1억원 이하	38.0809	53.2936	67.9101	77.5960	90.4849	89.5541	88.6166	90.9324
1억원 초과	12.7943	35.2104	41.0810	43.9972	50.7573	52.5860	57.7193	62.5701

주: 1. 귀속연도 기준

2. 총 세액공제감면액은 세액공제액과 세액감면액의 합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과세대상근로소득)[2014~]”,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IN\\_A42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IN_A424&conn_path=I3), 검색일자: 2023. 3. 1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II -5>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 및 인원(종합소득자)

(단위: 명, 백만원, 천원, %)

귀속연도	신고인원			신고금액		
	총수입금액 (A)	동 제도 (B)	비중 (B/A)	총 신고금액 (C, 백만원)	평균 신고금액(천원)	
					총 수입금액 신고인원 기준 (C/A)	동 제도 신고인원 기준 (C/B)
2016년	5,874,671	8,924	0.1519	8,968	2	1,005
2017년	6,393,891	13,521	0.2115	10,328	2	764
2018년	6,911,088	41,381	0.5988	34,899	5	843
2019년	7,469,635	57,890	0.7750	51,931	7	897
2020년	7,850,913	86,167	1.0975	110,083	14	1,278
2021년	9,339,463	141,184	1.5117	201,727	22	1,429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 “3-1-4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Ⅱ(종합소득, 과세표준),”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2&sttsMtaInfrId=20211203C012022C8815>, 검색일자: 2023. 3. 13.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4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Ⅱ(종합소득, 과세표준)[2016~],”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01N\\_31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01N_314&conn_path=I3), 검색일자: 2023. 3. 13.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2.9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신고 현황[2016~],”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01N\\_32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01N_329&conn_path=I3), 검색일자: 2023. 3. 13.

<부록 표 II -6> 주요 신고금액 대비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 비중(종합소득자)

(단위: %)

귀속연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	총 세액공제감면액	총 세액감면액
2016년	0.0051	0.0294	0.1830	0.7779
2017년	0.0052	0.0291	0.1733	0.8021
2018년	0.0163	0.0918	0.5442	2.7421
2019년	0.0222	0.1251	0.7242	3.9198
2020년	0.0442	0.2449	1.2955	6.3343
2021년	0.0674	0.3749	1.7346	10.6915

주: 총 세액공제감면액은 세액공제액과 세액감면액의 합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 “3-1-4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Ⅱ(종합소득, 과세표준),”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2&sttsMtaInfrId=20211203C012022C8815>, 검색일자: 2023. 3. 13.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4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Ⅱ(종합소득, 과세표준)[2016~],”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01N\\_31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01N_314&conn_path=I3), 검색일자: 2023. 3. 13.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2.9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신고 현황[2016~],”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01N\\_32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01N_329&conn_path=I3), 검색일자: 2023. 3. 13.

## 부록 Ⅲ: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 통계

〈부록 표 Ⅲ-1〉 총급여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고령자 근로소득자)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청 인원	전체	11,398	20,265	26,159	31,428	39,848
	1천만원 이하	405	627	843	977	1,173
	1천만~2천만원 이하	3,078	4,752	4,865	5,396	6,432
	2천만~3천만원 이하	3,825	7,144	10,111	12,155	14,401
	3천만~4천만원 이하	2,087	4,071	5,639	6,969	9,038
	4천만~5천만원 이하	1,047	2,008	2,565	3,150	4,679
	5천만~6천만원 이하	489	942	1,179	1,462	2,094
	6천만~7천만원 이하	213	347	449	641	968
	7천만~8천만원 이하	105	181	229	324	445
	8천만~9천만원 이하	71	75	111	123	243
	9천만~1억원 이하	29	37	54	98	128
1억원 초과	49	81	114	133	247	
전체 신청 인원 대비 비중	1천만원 이하	3.5533	3.0940	3.2226	3.1087	2.9437
	1천만~2천만원 이하	27.0047	23.4493	18.5978	17.1694	16.1413
	2천만~3천만원 이하	33.5585	35.2529	38.6521	38.6757	36.1398
	3천만~4천만원 이하	18.3102	20.0888	21.5566	22.1745	22.6812
	4천만~5천만원 이하	9.1858	9.9087	9.8054	10.0229	11.7421
	5천만~6천만원 이하	4.2902	4.6484	4.5071	4.6519	5.2550
	6천만~7천만원 이하	1.8687	1.7123	1.7164	2.0396	2.4292
	7천만~8천만원 이하	0.9212	0.8932	0.8754	1.0309	1.1167
	8천만~9천만원 이하	0.6229	0.3701	0.4243	0.3914	0.6098
	9천만~1억원 이하	0.2544	0.1826	0.2064	0.3118	0.3212
	1억원 초과	0.4299	0.3997	0.4358	0.4232	0.6199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고령자 근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III-2> 총급여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장애인 근로소득자)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청 인원	전체	1,650	2,529	2,588	2,580	2,584
	1천만원 이하	15	15	27	27	23
	1천만~2천만원 이하	246	300	275	253	252
	2천만~3천만원 이하	425	638	647	716	700
	3천만~4천만원 이하	389	566	579	585	624
	4천만~5천만원 이하	301	494	509	444	451
	5천만~6천만원 이하	146	285	314	302	258
	6천만~7천만원 이하	81	125	128	132	141
	7천만~8천만원 이하	22	68	58	60	57
	8천만~9천만원 이하	10	22	25	21	32
	9천만~1억원 이하	6	5	11	16	14
	1억원 초과	9	11	15	24	32
전체 신청 인원 대비 비중	1천만원 이하	0.9091	0.5931	1.0433	1.0465	0.8901
	1천만~2천만원 이하	14.9091	11.8624	10.6260	9.8062	9.7523
	2천만~3천만원 이하	25.7576	25.2274	25.0000	27.7519	27.0898
	3천만~4천만원 이하	23.5758	22.3804	22.3725	22.6744	24.1486
	4천만~5천만원 이하	18.2424	19.5334	19.6677	17.2093	17.4536
	5천만~6천만원 이하	8.8485	11.2693	12.1329	11.7054	9.9845
	6천만~7천만원 이하	4.9091	4.9427	4.9459	5.1163	5.4567
	7천만~8천만원 이하	1.3333	2.6888	2.2411	2.3256	2.2059
	8천만~9천만원 이하	0.6061	0.8699	0.9660	0.8140	1.2384
	9천만~1억원 이하	0.3636	0.1977	0.4250	0.6202	0.5418
1억원 초과	0.5455	0.4350	0.5796	0.9302	1.2384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 에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Ⅲ-3> 총급여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경력단절여성 근로소득자)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청 인원	전체	39	166	268	644	1,070
	1천만원 이하	1	7	10	32	27
	1천만~2천만원 이하	12	51	48	123	202
	2천만~3천만원 이하	16	62	116	317	490
	3천만~4천만원 이하	6	30	58	116	225
	4천만~5천만원 이하	3	12	22	30	80
	5천만~6천만원 이하	1	3	9	18	25
	6천만~7천만원 이하	0	1	5	5	5
	7천만~8천만원 이하	0	0	0	2	12
	8천만~9천만원 이하	0	0	0	0	2
	9천만~1억원 이하	0	0	0	1	1
	1억원 초과	0	0	0	0	1
전체 신청 인원 대비 비중	1천만원 이하	2.5641	4.2169	3.7313	4.9689	2.5234
	1천만~2천만원 이하	30.7692	30.7229	17.9104	19.0994	18.8785
	2천만~3천만원 이하	41.0256	37.3494	43.2836	49.2236	45.7944
	3천만~4천만원 이하	15.3846	18.0723	21.6418	18.0124	21.0280
	4천만~5천만원 이하	7.6923	7.2289	8.2090	4.6584	7.4766
	5천만~6천만원 이하	2.5641	1.8072	3.3582	2.7950	2.3364
	6천만~7천만원 이하	0.0000	0.6024	1.8657	0.7764	0.4673
	7천만~8천만원 이하	0.0000	0.0000	0.0000	0.3106	1.1215
	8천만~9천만원 이하	0.0000	0.0000	0.0000	0.0000	0.1869
	9천만~1억원 이하	0.0000	0.0000	0.0000	0.1553	0.0935
	1억원 초과	0.0000	0.0000	0.0000	0.0000	0.0935

주: 소득 귀속연도 기준

자료: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인원 에 대한 국세청 제공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부록 IV: 중소기업 인력난 개선 효과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비교

□ <부록 IV>에서는 2018년 제도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개선 효과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1. 제조업

<부록 표 IV-1> 2018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제조업)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중소기업	1.026 (0.697)		2.360 (2.266)	
2019년	0.204 (0.244)	0.141 (0.411)	-0.369 (0.417)	-0.130 (0.270)
중소기업 × 2019년	-0.483 (0.381)	-0.576 (0.449)	-0.342 (0.984)	-2.596** (1.162)
당기순이익(로그)	0.055 (0.128)	0.201* (0.108)	0.522 (0.332)	0.027 (0.164)
매출액(로그)	0.321 (0.295)	-1.799*** (0.623)	2.241 (1.705)	1.257 (1.381)
자산총액(로그)	-0.422 (0.267)	-0.519 (0.797)	-2.799 (2.084)	-2.590* (1.401)
총근로자수(로그)	-0.402* (0.215)	-1.233* (0.720)	0.131 (0.260)	-0.633 (0.862)
상수항	3.591 (2.568)	29.338*** (7.129)	3.118 (9.176)	21.427 (19.550)
표본수	1,352	1,352	226	226
$R^2$	0.0230	0.0479	0.1560	0.1606

주: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IV-2> 2018년 제도 개정이 고용형태별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제조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등)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전체 표본		고정효과		전체 표본		고정효과		전체 표본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중소기업	0.913 (0.817)		2.439 (2.282)		-1.303 (1.390)		0.178 (0.831)		-0.793 (1.854)							
2019년	0.260 (0.248)	0.185 (0.424)	-0.393 (0.426)	-0.131 (0.286)	-0.739 (0.971)	-1.016 (0.832)	0.429 (0.559)	0.817 (1.465)	-1.100 (1.169)	0.429 (0.559)	0.817 (1.465)	-1.100 (1.169)	-1.347 (0.863)			
중소기업 × 2019년	-0.416 (0.423)	-0.579 (0.464)	-0.350 (1.000)	-2.587** (1.226)	0.495 (1.249)	0.174 (1.036)	-2.930 (2.314)	-3.590** (1.704)	1.884 (1.391)	-2.930 (2.314)	-3.590** (1.704)	1.884 (1.391)	1.216 (1.116)			
당기순이익(로그)	0.116 (0.151)	0.238** (0.114)	0.525 (0.332)	0.025 (0.170)	-0.277 (0.283)	-0.948** (0.407)	-0.409 (0.435)	-3.637*** (0.747)	-0.270 (0.450)	-0.409 (0.435)	-3.637*** (0.747)	-0.270 (0.450)	0.185 (0.450)			
매출액(로그)	0.364 (0.304)	-1.833*** (0.642)	2.298 (1.709)	1.252 (1.483)	-0.763 (0.551)	1.018 (2.134)	-0.292 (0.463)	1.121 (4.580)	-1.132 (0.853)	-0.292 (0.463)	1.121 (4.580)	-1.132 (0.853)	4.224 (3.084)			
자산총액(로그)	-0.562* (0.310)	-0.509 (0.820)	-2.778 (2.086)	-2.972** (1.472)	0.665 (0.804)	1.913 (2.065)	0.014 (0.376)	4.940* (2.616)	1.198 (1.267)	0.014 (0.376)	4.940* (2.616)	1.198 (1.267)	-3.483 (3.704)			
총근로자수(로그)	-0.439* (0.231)	-1.283* (0.740)	0.122 (0.265)	-0.457 (0.894)	0.180 (0.357)	-1.156 (3.526)	-0.263 (0.313)	2.531 (6.440)	0.584 (0.481)	-0.263 (0.313)	2.531 (6.440)	0.584 (0.481)	-5.662 (4.032)			
상수항	4.425 (3.258)	29.577*** (7.319)	2.171 (9.828)	25.571 (20.349)	4.130 (3.704)	-17.87 (23.458)	9.057 (7.265)	-48.774 (44.397)	-0.076 (4.011)	9.057 (7.265)	-48.774 (44.397)	-0.076 (4.011)	17.692 (33.614)			
표본수	1,345	1,345	225	225	350	350	113	113	274	113	113	274	274			
R <sup>2</sup>	0.0226	0.0473	0.1507	0.1593	0.0185	0.0804	0.1744	0.6425	0.0314	0.1744	0.6425	0.0314	0.0583			

주: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IV-3> 2018년 제도 개정이 지원자 미달 여부에 미친 영향(제조업)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프로빗	통합선형	고정효과	프로빗
중소기업	-0.085 (0.078)		-0.245 (0.245)	0.509* (0.290)		1.591* (0.836)
2019년	-0.026 (0.050)	-0.045 (0.048)	-0.093 (0.176)	0.007 (0.081)	-0.028 (0.049)	0.051 (0.316)
중소기업 × 2019년	0.037 (0.058)	0.051 (0.053)	0.124 (0.198)	-0.211 (0.397)	-0.148 (0.213)	-0.616 (1.046)
당기순이익(로그)	-0.031** (0.014)	-0.013 (0.013)	-0.089** (0.039)	0.007 (0.028)	-0.012 (0.030)	0.036 (0.119)
매출액(로그)	-0.018 (0.034)	0.017 (0.073)	-0.052 (0.102)	0.055 (0.088)	0.022 (0.253)	0.236 (0.365)
자산총액(로그)	0.014 (0.033)	-0.016 (0.094)	0.039 (0.097)	-0.122 (0.112)	0.165 (0.256)	-0.509 (0.471)
총근로자수(로그)	-0.039 (0.028)	0.044 (0.085)	-0.124 (0.088)	-0.038 (0.039)	-0.128 (0.158)	-0.156 (0.155)
상수항	0.767*** (0.253)	0.187 (0.840)	0.874 (0.763)	1.155 (1.474)	-1.441 (3.577)	2.952 (6.006)
표본수	1,352	1,352	1,352	226	226	226
결정계수( $R^2$ )	0.0269	0.0038	0.0229	0.0445	0.0256	0.0416

주: 1.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프로빗 모형의 결정계수는 유사결정계수(pseudo- $R^2$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2. 비제조업

<부록 표 IV-4> 2018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비제조업)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중소기업	-0.338 (0.776)		-0.325 (1.814)	
2019년	0.006 (0.572)	-0.051 (0.347)	-1.132 (1.244)	-2.006** (0.967)
중소기업 × 2019년	0.206 (0.631)	0.223 (0.392)	0.915 (2.394)	2.826 (3.348)
당기순이익(로그)	-0.208 (0.155)	0.204 (0.131)	-0.617 (0.556)	-0.525 (0.556)
매출액(로그)	-0.033 (0.222)	0.155 (0.558)	0.700 (0.850)	-0.808 (2.500)
자산총액(로그)	0.207 (0.144)	-0.554 (0.774)	-1.139 (1.112)	5.908 (6.809)
총근로자수(로그)	-0.372* (0.209)	-1.511*** (0.559)	-0.596 (0.736)	3.634* (1.920)
상수항	2.882 (1.805)	10.460* (5.956)	17.212 (15.999)	-73.698 (73.211)
표본수	1,315	1,315	134	134
$R^2$	0.0116	0.0187	0.0601	0.2169

주: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IV-5〉 2018년 제도 개정이 고용형태별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비제조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등)			파트타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전체 표본		고정 효과	기간제(계약직 등)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전체 표본	
	통합 선형	고정 효과	통합 선형	고정 효과	통합 선형	고정 효과	통합 선형	고정 효과	통합 선형	고정 효과	통합 선형	고정 효과	통합 선형	고정 효과	
중소기업	0.080 (0.690)	-0.545 (1.872)	-0.409 (1.687)	3.883 (3.711)	-0.235 (0.717)	1.461 (1.507)	4.474 (3.854)	-9.267* (5.264)							
2019년	0.046 (0.596)	-0.056 (0.405)	1.865 (1.734)	0.995** (0.456)	-0.206 (0.198)	3.282 (2.277)	0.806 (0.682)	-0.281 (0.903)							
중소기업 & 2019년	0.096 (0.653)	2.111 (2.225)	-1.741 (1.709)	-0.588 (0.555)	0.318 (0.510)	-3.293 (2.316)	-5.929 (3.732)	-4.996*** (1.734)							
당기순이익 (로그)	-0.158 (0.146)	-0.089 (0.243)	-0.087 (0.279)	0.334* (0.182)	-0.296 (0.298)	0.335 (0.233)	-0.021 (0.146)	0.111 (0.296)							
매출액 (로그)	-0.097 (0.230)	-0.037 (0.310)	0.542 (0.640)	0.977 (0.824)	0.025 (0.099)	0.097 (0.827)	-0.787 (0.867)	-0.250 (1.355)							
자산총액 (로그)	0.152 (0.149)	-1.369 (1.093)	-0.171 (0.368)	-1.717 (1.115)	0.159 (0.230)	-0.087 (0.463)	2.621 (1.845)	-0.198 (6.884)							
총근로자수 (로그)	-0.152 (0.149)	0.194 (0.248)	-0.899 (0.720)	2.128* (1.251)	0.152 (0.175)	-0.490 (0.622)	3.308* (1.852)	0.680 (1.575)							
상수항	2.495 (1.774)	9.496 (15.466)	2.028 (4.092)	-3.510 (9.494)	-0.022 (1.199)	-0.707 (4.012)	-23.748 (14.570)	2.562 (78.417)							
표본수	1,304	134	569	569	86	433	72	116							
R <sup>2</sup>	0.0074	0.0081	0.0715	0.2756	0.0486	0.0604	0.1749	0.6026							

주: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IV-6> 2018년 제도 개정이 지원자 미달 여부에 미친 영향(비제조업)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프로빗	통합선형	고정효과	프로빗
중소기업	0.021 (0.070)		0.124 (0.251)	0.028 (0.205)		0.105 (0.723)
2019년	-0.017 (0.032)	-0.018 (0.031)	-0.059 (0.133)	0.088* (0.051)	0.014 (0.025)	0.462* (0.264)
중소기업 × 2019년	0.032 (0.043)	0.039 (0.035)	0.102 (0.157)	-0.289* (0.159)	-0.021 (0.085)	-1.449*** (0.495)
당기순이익(로그)	-0.019 (0.012)	-0.020* (0.012)	-0.063 (0.039)	-0.019 (0.023)	0.003 (0.014)	-0.113 (0.094)
매출액(로그)	-0.027 (0.024)	-0.033 (0.050)	-0.073 (0.075)	-0.035 (0.057)	0.004 (0.063)	-0.173 (0.251)
자산총액(로그)	0.021 (0.018)	-0.086 (0.069)	0.064 (0.059)	-0.106 (0.114)	-0.056 (0.173)	-0.586 (0.448)
총근로자수(로그)	-0.028* (0.016)	-0.069 (0.050)	-0.098* (0.057)	-0.005 (0.038)	0.002 (0.049)	-0.010 (0.181)
상수항	0.557*** (0.205)	1.885*** (0.534)	0.190 (0.674)	2.097 (1.297)	0.760 (1.855)	9.340 (5.822)
표본수	1,315	1,315	1,315	134	134	134
결정계수( $R^2$ )	0.0339	0.0280	0.0309	0.0786	0.0117	0.1090

주: 1.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프로빗 모형의 결정계수는 유사결정계수(pseudo- $R^2$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3. 소결

□ 전체 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일부 분석에서 2018년 제도 개정으로 인해 2017년 대비 2019년 중소기업의 인력난 또는 지원자 미달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표본을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전체 고용형태를 포함한 고정효과 분석에서도 제도의 효과가 확인됨

- 고용형태별 분석에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분석 중 일부에서 제도 개정으로 인해 공석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관찰됨

○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표본을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전체 고용형태를 포함한 통합선형 분석과 프로빗 분석에서 지원자 미달 확률

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견됨

- 고용형태별 분석에서는 기간제(계약직 등)에 대한 분석 중 일부에서 제도 개정으로 인해 공석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관찰됨

## 부록 V: 과거 제도 변화로 인한 인력난 개선 효과 분석

□ <부록 V>에서는 본문에서 분석한 2018년 제도 개정 외 3건의 제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함

### 1. 2012년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 본 제도는 2012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므로 2011년과 2013년을 비교하여 본 제도의 도입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본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3년 동안 소득세 10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였음
  - 다음 표는 제도 시행이 기업의 빈 일자리(공석)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임
    - 종속변수는 작년 전체 근로자수 대비 빈 일자리(공석) 수의 비율(%)임
  - 전체 표본을 이용한 고정효과 분석에서 제도 시행으로 인해 공석 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발견됨
    - 다만, 통합선형 분석과 표본을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인 기업으로 한정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부록 표 V-1> 2012년 제도 도입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중소기업	0.149 (0.629)		-1.343* (0.699)	
2013년	0.978 (0.743)	0.874** (0.394)	0.445 (0.359)	0.240 (0.220)
중소기업 × 2013년	-1.276 (0.838)	-0.944** (0.471)	-0.237 (0.459)	-0.538 (0.649)
당기순이익(로그)	0.246* (0.134)	0.514*** (0.142)	0.062 (0.056)	-0.237 (0.155)
매출액(로그)	-0.660** (0.334)	-0.359 (0.439)	-0.431* (0.255)	-0.354 (0.245)

<부록 표 V-1>의 계속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자산총액(로그)	0.223 (0.196)	0.525 (0.575)	-0.023 (0.310)	1.259 (1.235)
총근로자수(로그)	-0.283 (0.191)	2.530*** (0.680)	0.100 (0.070)	1.964** (0.867)
상수항	5.074** (2.335)	-15.113** (6.081)	4.880 (4.229)	-19.314 (14.460)
표본수	1,504	1,504	237	237
$R^2$	0.0284	0.0465	0.0732	0.1296

주: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2. 2014년 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 2014년에는 제도를 개정하여 정책대상자는 확대되었지만 감면율은 인하되었음
  - 정책대상자 확대는 청년에서 청년, 고령자,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음
  - 감면율은 100%에서 50%로 축소되었음
    -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혼합될 가능성이 있음
  - 2013년과 2015년 중소기업과 나머지 기업의 공석 비율 변화를 분석하여 이러한 제도 변화의 순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 다만 6차년도(2015년)부터 빈 일자리(공석)의 수를 묻는 문항이 변경되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 5차년도까지는 작년 말 기준이나, 6차년도부터는 최근 한 달간의 공석 수로 차이가 있음
  
- <부록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제도 시행의 효과(중소기업×2015년의 계수)는 미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오히려 공석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감면율 축소를 인한 부정적인 효과일 수 있음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2015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빈 일자리(공석)의 수를 묻는 문항이 변경되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록 표 V-2> 2014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중소기업	-1.098 (0.822)		-2.252* (1.318)	
2015년	-1.131 (0.745)	-1.083** (0.472)	-0.520 (0.439)	-0.180 (0.353)
중소기업 × 2015년	0.964 (0.830)	1.038* (0.541)	1.496* (0.860)	0.672 (1.649)
당기순이익(로그)	0.351* (0.189)	0.020 (0.168)	-0.004 (0.060)	0.013 (0.251)
매출액(로그)	-0.524 (0.476)	-3.765*** (0.792)	-0.601** (0.295)	1.581 (1.100)
자산총액(로그)	0.025 (0.255)	1.177 (0.944)	0.257 (0.359)	-5.475*** (2.013)
총근로자수(로그)	-0.535* (0.302)	0.685 (0.828)	0.069 (0.088)	-1.603 (1.425)
상수항	7.280* (4.075)	25.492*** (9.371)	4.768 (5.645)	58.901*** (19.285)
표본수	1,021	1,021	157	157
$R^2$	0.0375	0.0681	0.1131	0.2202

주: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3. 2016~2017년 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 2016년부터는 감면율이 인상되었지만 감면액에 한도가 도입됨
  - 2016년부터 감면율이 50%에서 70%로 인상되었고, 2017년부터 정책대상자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었음
  - 다만 이 기간 동안 감면액에 150만원의 한도가 설정되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될 가능성이 있음
  - 2015년과 2017년 중소기업과 나머지 기업의 공석 비율과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 수 1배수 미만(미달) 여부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러한 제도 변화의 순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2015년을 대상으로 한 6차년도 조사부터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 수 변수가 추가되어 지원자 수 미달 여부를 추가로 분석할 수 있음

□ <부록 표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 개정이 중소기업의 공식 비율에 미치는 영향(중소기업 × 2017년의 계수)은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부록 표 V-3> 2016-2017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통합선형	고정효과
중소기업	0.289 (0.307)		-0.015 (1.371)	
2017년	0.741* (0.417)	0.390 (0.281)	1.508** (0.726)	0.561*** (0.189)
중소기업 × 2017년	0.064 (0.456)	0.099 (0.309)	-1.194 (1.397)	0.297 (1.313)
당기순이익(로그)	-0.058 (0.065)	0.150* (0.085)	-0.272 (0.345)	0.383*** (0.135)
매출액(로그)	-0.151 (0.178)	-0.922*** (0.333)	0.018 (0.566)	0.723 (0.943)
자산총액(로그)	0.237 (0.169)	1.755*** (0.430)	-1.871 (1.144)	0.298 (0.980)
총근로자수(로그)	-0.247** (0.111)	-0.413 (0.261)	-0.520 (0.566)	-0.073 (0.572)
상수항	1.237 (0.988)	-6.384* (3.723)	29.458* (17.409)	-15.133 (13.650)
표본수	2,813	2,813	366	366
$R^2$	0.0206	0.0419	0.0812	0.1253

주: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 미달 여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종속변수는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 수가 1배수 미만이면 1, 1배수 이상이면 0을 갖는 변수임

□ <부록 표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제도 개정이 중소기업의 지원자 미달 여부에 미치는 영향(중소기업 × 2017년의 계수)은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부록 표 V-4> 2016~2017년 제도 개정이 지원자 미달 여부에 미친 영향

구분	전체 표본			자산총액 2천억~8천억원		
	통합선형	고정효과	프로빗	통합선형	고정효과	프로빗
중소기업	-0.008 (0.043)		0.155 (0.197)	0.086 (0.173)		0.356 (0.707)
2017년	0.106*** (0.030)	0.067** (0.031)	0.569*** (0.159)	0.035 (0.039)	0.016 (0.021)	0.272 (0.248)
중소기업 × 2017년	-0.020 (0.037)	0.012 (0.034)	-0.285 (0.173)	-0.009 (0.240)	0.006 (0.145)	-0.226 (0.778)
당기순이익(로그)	-0.022** (0.009)	-0.012 (0.009)	-0.076*** (0.030)	-0.030 (0.019)	0.026* (0.015)	-0.162* (0.086)
매출액(로그)	-0.008 (0.017)	-0.033 (0.037)	-0.021 (0.063)	-0.020 (0.030)	0.056 (0.104)	-0.151 (0.202)
자산총액(로그)	-0.004 (0.014)	0.098** (0.048)	-0.020 (0.052)	-0.083 (0.058)	0.143 (0.109)	-0.513 (0.350)
총근로자수(로그)	-0.031*** (0.012)	0.009 (0.029)	-0.121*** (0.045)	-0.034 (0.025)	-0.364*** (0.063)	-0.205 (0.149)
상수항	0.571*** (0.137)	-0.420 (0.412)	0.325 (0.497)	1.843** (0.902)	-0.954 (1.512)	9.415* (4.919)
표본수	2,813	2,813	2,813	366	366	366
결정계수( $R^2$ )	0.0396	0.0369	0.0411	0.0721	0.2218	0.1090

주: 1. (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프로빗 모형의 결정계수는 유사결정계수(pseudo- $R^2$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